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 간 사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중에서도 재판절차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이 택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론 관련 판결의 분석은 분쟁 당사자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언론에 관련된 판결 경향과 법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2017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 판결 183건입니다. 수년간 그래왔듯 작년에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손해배상을 병합 청구하지 않은 보도계재 청구는 전체 사건의 10% 미만이었습니다. 단독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관심도가 높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액 분석은 물론 유형별 원고의 승소율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위원회 조정을 거친 후 소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을 비교·분석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해당 사건들의 위원회 조정액 평균값 및 중앙값이 예년과 달리 법원 인용액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율은 낮은 반면 인용액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각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언론사 간 분쟁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어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보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이 드러난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은 보도로 인해 가족의 생사 파악이 불가능하게 됐으니 언론사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모로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 보도에는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수록된 통계와 판결문이 언론 분쟁 및 해결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 3
2. 자료수집 방법 / 3
3. 분석 대상 / 4
4. 분석 내용 / 5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 6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건수 / 9
2. 상소율 / 10
3. 청구별 소송건수 / 1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 12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 13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 14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 15
8. 직위별 피고 분류 / 16

제3장 소송 결과

1. 심급별 결과 / 18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 19
3. 청구별 결과 / 20
4. 침해유형별 결과 / 21
5. 원고유형별 결과 / 22
6. 매체유형별 결과 / 23
7. 보도유형별 결과 / 25
8. 소송기간 / 26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 27
2. 청구액 / 28
3. 인용액 / 29
4. 인용액 분포 / 30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1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32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3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 34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 35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6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 37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8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39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 40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 43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 44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 44

표 목차

〈표 1〉 코딩 항목	6
〈표 2- 1〉 심급별 건수	9
〈표 2- 2〉 상소율	10
〈표 2- 3〉 청구별 건수	11
〈표 2- 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11
〈표 2- 5〉 침해유형별 건수	12
〈표 2- 6〉 원고유형별 건수	13
〈표 2- 7〉 매체유형별 건수	14
〈표 2- 8〉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15
〈표 2- 9〉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15
〈표 2-10〉 직위별 피고 구성	16
〈표 2-11〉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17
〈표 3- 1〉 심급별 결과	18
〈표 3-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19
〈표 3- 3〉 청구별 결과	20
〈표 3- 4〉 침해유형별 결과	21
〈표 3- 5〉 원고유형별 결과	22
〈표 3- 6〉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23
〈표 3- 7〉 일간신문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 8〉 방송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 9〉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10〉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25
〈표 3-11〉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25
〈표 3-12〉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26
〈표 3-13〉 보도계재청구 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26

〈표 4-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28
〈표 4- 2〉 손해배상 청구액	28
〈표 4- 3〉 손해배상 인용액	29
〈표 4- 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30
〈표 4-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1
〈표 4-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32
〈표 4- 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32
〈표 4- 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3
〈표 4-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34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35
〈표 5-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36
〈표 5-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37
〈표 5-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38
〈표 5-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39
〈표 5- 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40
〈표 5- 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41
〈표 5- 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41
〈표 5- 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42
〈표 5- 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42
〈표 6- 1〉 조정경유 비율	43
〈표 6-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44
〈표 6- 3〉 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45
〈표 6- 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45
〈표 6- 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45
〈표 6- 6〉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전체 목록	46
분석 판결 목록(민사 183건)	53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1. 국회의원에 대해 '강경파'로 표현한 것은 평가 내지 의견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A vs 주식회사 채널에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4가합5726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34579 판결 63
2.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 보도에서 사용한 '차이잉원 과거 발언이 단독 인터뷰로 둔갑'이란 표현은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며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연합뉴스 vs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070907 판결(확정) 73
3. 언론사가 형사사건 신고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암시에 의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A vs 주식회사 문화일보 외 2명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34562 판결(확정) 80
4.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언론보도의 불법성에 대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A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497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3581 판결(확정) 91
5. 압수·수색으로 수술 환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하면서 다른 환자를 인터뷰하여 방송하고, 다른 병원의 수술실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것은 정당한 언론활동이 아닌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 할 것이다
A vs 주식회사 매일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52463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34171(확정) 117

6. 한류스타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쟁은 공적 사안에 해당하고, 그 남편으로서 방송 출연 전적이 있는 자는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A vs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가합5680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78807 판결(확정) 130
7. 칼럼에서 사용된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은 이념 차이에 따른 의견 표명일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A vs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10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506507 판결 144
8. 기사 53건을 삭제·수정하기로 하면서 이행강제를 위한 지연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후 52건에 대해서는 삭제 등을 하고도 1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적당히 감액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A vs 주식회사 시민일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260855 판결(확정) 156
9. 상표권 무단 사용에 관한 보도가 언론사의 사익과도 관련된 경우, 공익을 이유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vs 주식회사 뉴스타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1414 판결 160
10. 개인의 형사 구속 전력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방송사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A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100511 판결(확정) 168
11. 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했다면 언론사로서의 주의의무가 감경되지 않는다
A vs 주식회사 매일방송 외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240943 판결(확정) 177
12. 기사제목에 단정적 표현이 아닌 의문문을 사용한 경우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A 외 1명 vs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48271 판결 187

13. 전 국회의원의 자원외교 활동에 대한 보도는 공익성이 있고 언론사가 취재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3개월간 볼리비아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력해 상당성이 인정된다
A vs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합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81513 판결(확정) 199

14. 본문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 보도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수 있다
사단법인 A vs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5명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10761 판결(확정) 211

15.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편집부에서 임의로 수정·편집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사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A vs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외 1명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1. 8. 선고 2017가단52295 판결 223

16.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장기복용 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라도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식품의 유통에 관한 보도는 공익성과 신속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A의 관리인 C 외 1명 vs 한국방송공사 외 4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163 판결 227

사생활 침해 사례

17. 사생활 공개가 당사자 및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공익성이 있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A vs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5072685 판결 242
18. 지방변호사회 감사 후보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 vs 주식회사 채널에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5가단5023195 판결 246
19. 경찰의 언론브리핑과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맥락상 큰 차이가 없는 패널의 발언은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 vs 대한민국 외 2명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24. 선고 2016가단71550 판결 255

성명권 침해 사례

20. 교회 장로들의 실명과 징계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 보도한 것은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
A 외 14명 vs 국민일보 주식회사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250681 판결 262

초상권 침해 사례

21.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선 것은 초상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
A 외 1명 vs 한국방송공사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88859 판결(확정) 267

제2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1. ‘주택 앞에 담장을 설치해 주택이 감옥이 됐다’는 표현은 거주자의 의사를 압축하여 표현한 수사적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주식회사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59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2011320 판결(확정) 275

2. 지자체장이 사익을 위해 공청회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청회 절차 등의 진행주체인 지자체에게도 반론보도의 이익이 있다
 수원시 vs 주식회사 수원일보사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카합10353 판결(확정) 292

3. 의혹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A vs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9604, 2017나2029642, 2017나2029659, 2017나2029673, 2017나2029680, 2017나2029611, 2017나2029628, 2017나2029635, 2017나2029666(병합) 판결 297

4. 마을회와 주민이 주택 철거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주장이나 의견이 주로 방영되고 마을회의 입장은 충분히 다루지지 않았다면 마을회에 정당한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다
 A 마을회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합2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2020492 판결(확정) 310

5. 피고는 보도내용 중 허위 부분이 지엽말단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허위 부분을 근거로 들어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vs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합13705 판결 320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1.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법원의 정당한 석명권 행사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A vs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547119 판결 329
2. 범죄 혐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도했다면 추후보도할 이유가 없다
A vs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3537 판결(확정) 339
3. 원고가 중복인사임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근거 없이 보도한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A vs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529708 판결 345
4. 원고와 피고 언론사 간에 발생한 사적 분쟁을 피고가 보도한 것은 공익성이 부정된다
A vs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80918 판결 359
5. 국방부의 의료 수준과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 보도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국방부 vs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514 판결 364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 관련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데이터는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기타 인격권(초상권·성명권·사생활 등) 침해 소송의 판결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을 수치화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언론분쟁 관련 연구 기초자료로서의 쓰임새 외에도 제도 개선의 근거 또는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통해 검색¹⁾하여 수집했다.

판결 검색 시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 ⑥보도&음성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 ⑨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검색어로 사용했다. 분석대상은 민사판결이며, 판결 선고가 아닌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가. 2017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183건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방송사닷컴 등)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183건이 수집되었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어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된 모든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선고일을 기준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소심 없이 1심만 존재하거나 1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²⁾도 포함되어 있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294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 사건 이더라도 피고가 다수 매체인 경우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다. 비록 소송 건으로는 한 건이지만 통계분석의 목적상 매체 수에 따라 여러 건으로 분할한 결과 분석대상 총 건수는 294건이었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523건

대부분의 분석 대상 판결들은 하나의 청구가 아닌,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기사삭제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가 병합된 형태를 보였다. 이에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총 건수 294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의 청구권별 총 건수는 523건이다.

2) 2017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8년 현재 상소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하거나 2017년 이전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의미한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에는 2017년도 언론 관련 판결의 소송 제기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소송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분석 등을 담았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 제기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결과,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결과, 침해유형별 결과, 원고유형별 결과, 매체유형별 결과, 보도유형별 결과, 소송기간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분석 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접수일자 및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피고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 분류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체분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구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4. 손해배상
	17-2. 반론보도	17-5. 기사삭제
	17-3. 추후보도	17-6. 보도금지
원·상소심 결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4. 환송후심
	18-2. 2심	18-5. 재상고심
	18-3. 3심	
기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 결정액
손해배상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정보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위치
	33. 보도시기	36. 보도제목
	34. 보도지면(프로그램)	37. 보도본문 길이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했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했다.
-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³⁾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공인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했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했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다면 2개의 매체로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했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언론사 소속이 아닌 패널리나 보도에 관여하지 않은 외주 제작사 직원 등은 언론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3)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5) 방송 분류

- ①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를 포함했다.
- ② 고발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했다.
예) 「PD수첩」, 「제보자들」, 「먹거리 X파일」 등
-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했다.
- ④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했다.
예) 「모닝와이드」, 「리얼스토리 눈」 등

6) 청구별 처리결과

-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 사건을 포함했다.
(원고 일부승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
-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상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심의 취지와 같다면 ‘승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승변복’ 등으로 코딩했다.

8)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했다.
- ② 매체별로 별도 법인이 있거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기재했다.
예) 조선일보 - 조선닷컴 연대하여 2,000만 원 → 조선일보 : 2,000만 원 / 조선닷컴 : 2,000만 원
- ③ 피고가 단일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분류상 2개로 나누어진 경우는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반액으로 나누어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했다.
예) (주)경향신문사에 2,000만 원 청구한 경우, 경향신문 : 1,000만 원 / 경향닷컴 : 1,000만 원
- ④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했다.
- ⑤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상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했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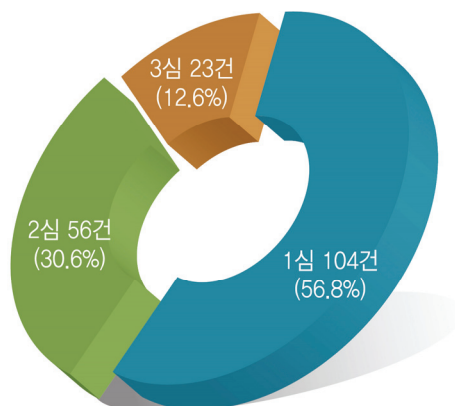
2017년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56.8%, 2심 30.6%, 3심 12.6%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04건(56.8%), 2심(환송 후 심리 포함)이 56건(30.6%), 3심이 23건(12.6%)이다.

〈표 2-1〉 심급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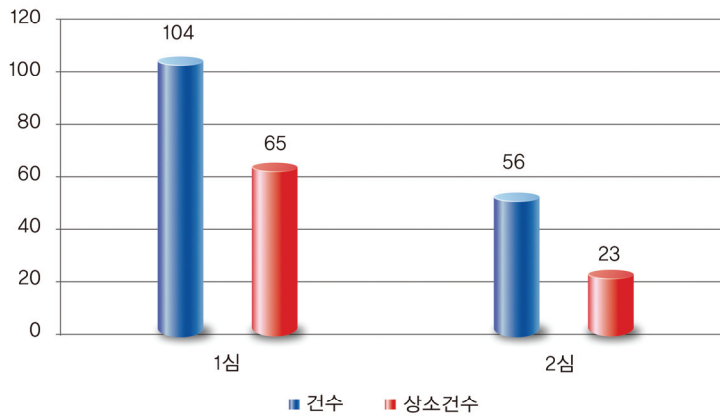


2. 상소율

항소율 62.5%, 상고율 41.1%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2심 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104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65건으로 항소율은 62.5%로 나타났다. 2심 판결 56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23건으로 상고율은 41.1%였다.

〈표 2-2〉 상소율



3.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누는 후 각 매체별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분석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한 경우가 115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87건(29.6%)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표 2-3〉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 정	15	5.1
정정/반론	2	0.7
정정/반론/손배	23	7.8
정정/손배	115	39.1
정정/기사삭제	3	1.0
정정/손배/기사삭제	20	6.8
반 론	7	2.4
반론/손배	5	1.7
추후/손배/기사삭제	1	0.3
손 배	87	29.6
손배/기사삭제	16	5.4
합 계	294	100.0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청구가 267건(51.1%)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정정보도청구 178건(34.0%), 기사삭제청구 40건(7.6%), 반론보도청구 37건(7.1%), 추후보도 1건(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78	34.0
반론보도	37	7.1
추후보도	1	0.2
손해배상	267	51.1
기사삭제	40	7.6
합 계	523	100.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151건(82.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예 및 신용훼손과 명예훼손 및 모욕이 각 6건(3.3%)씩 있었고 그 외는 미미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2-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 예	151	82.5
명예/신용	6	3.3
명예/모욕	6	3.3
명예/모욕/초상	1	0.5
명예/초상	2	1.1
명예/초상/사생활	2	1.1
명예/초상/음성	2	1.1
명예/음성	2	1.1
명예/성명	2	1.1
명예/사생활	4	2.2
저 작 권	2	1.1
사 생 활	1	0.5
초상/사생활	2	1.1
합 계	183	100.0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원고유형은 일반인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16건(63.4%), 단체가 청구한 사건은 67건(36.6%)이었다. 전체 원고유형 가운데 일반인이 77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적 인물 31건(16.9%), 언론사 17건(9.3%), 기업 14건(7.7%), 일반단체 13건(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2-6〉 원고유형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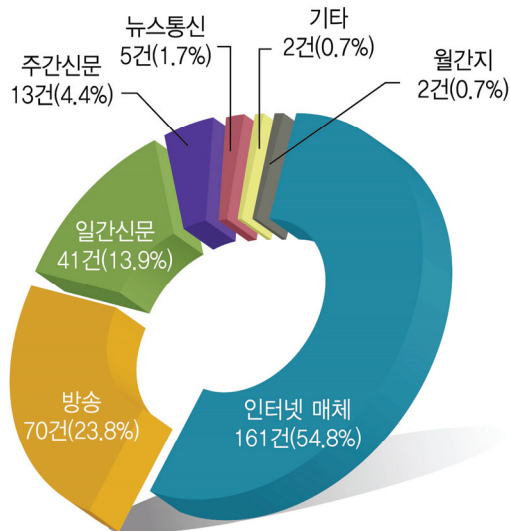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고위 공직자	8	4.4
	공적 인물	31	16.9
	일반인	77	42.1
	소 계	116	63.4
단체	언론사	17	9.3
	국가기관	3	1.6
	지자체	2	1.1
	기업	14	7.7
	공공단체	4	2.2
	종교단체	12	6.6
	교육기관	2	1.1
	일반단체	13	7.1
	소 계	67	36.6
합 계		183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장 많아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유형별 건수(총 294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매체가 161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70건(23.8%), 일간신문 41건(13.9%), 주간신문 13건(4.4%), 뉴스통신 5건(1.7%), 기타 2건(0.7%), 월간지 2건(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매체유형별 건수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161건)의 경우, 방송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언론사닷컴이 99건(61.5%), 인터넷신문 62건(38.5%)으로 파악됐고, 방송(70건)은 종합편성채널 등 케이블방송 36건(51.4%), 지상파방송 34건(48.6%)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41건)은 중앙종합일간지 27건(65.9%), 지역종합일간지 9건(22.0%), 경제일간지 4건(9.8%), 스포츠일간지 1건(2.4%)의 순으로 집계됐다.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가장 많이 문제 된 보도유형은 뉴스(방송)와 스트레이트 기사 (방송 외 매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문제가 된 보도유형을 살펴봤다. 방송 매체(70건)에서는 뉴스가 52건(7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교양 9건(12.9%), 고발 8건(11.4%), 토론 1건(1.4%)이 뒤를 이었다.

〈표 2-8〉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뉴스	52	74.3
교양	9	12.9
고발	8	11.4
토론	1	1.4
합계	70	100.0

방송을 제외한 매체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15건(9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2-9〉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215	96.0
만평	2	0.9
사설	3	1.3
칼럼	4	1.8
합계	224	100.0

8. 직위별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로 분류한 294건에 대한 피고들을 직위별로 분석한 결과,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6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사건이 70건(2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0〉 직위별 피고 구성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167	56.8
언론사/대표	1	0.3
언론사/대표/국장/부장/담당	3	1.0
언론사/대표/국장/담당/비언론	2	0.7
언론사/대표/담당	4	1.4
언론사/대표/담당/비언론	3	1.0
언론사/국장	3	1.0
언론사/국장/담당	8	2.7
언론사/국장/비언론	2	0.7
언론사/부장	2	0.7
언론사/부장/담당	4	1.4
언론사/담당	70	23.8
언론사/기타/비언론	1	0.3
언론사/비언론	3	1.0
대 표	4	1.4
대표/담당	6	2.0
국 장	3	1.0
담 당	7	2.4
비 언 론	1	0.3
합 계	294	100.0

직위별 피고 분류를 다시 각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273건 (61.2%), 담당 기자(또는 PD) 107건(24.0%), 대표이사 23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언론사 다음으로 담당자에 대한 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273	61.2
대표이사	23	5.2
국장	21	4.7
부장	9	2.0
담당 기자(또는 담당 PD)	107	24.0
기타	1	0.2
비언론	12	2.7
합계	446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침해유형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 소송기간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원고 승소율 50% 웃돌아

2017년도 전체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52.5%로 집계되어, 전년도와 달리 원고가 절반이 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급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 승소율 55.8%, 2심(환송후심 포함) 53.6%, 3심 34.8%로 1심 승소율이 가장 높고 3심 승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심급별 결과

심 급	원고승	원고패	계
1 심	58 (55.8)	46 (44.2)	104 (100.0)
2 심	30 (53.6)	26 (46.4)	56 (100.0)
3 심	8 (34.8)	15 (65.2)	23 (100.0)
합 계	96 (52.5)	87 (47.5)	183 (10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 82.1%

분석 대상 판결 183건 중 2심 55건(환송후심 1건 제외)과 3심 23건을 합산한 78건을 대상으로 원심 판결 유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일부 인용 포함)으로 승패소를 분류한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82.1%(64건)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1.8%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2.6%로 집계되어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 결과가 반복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3-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구 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반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반복	원고패소판결 반복
2 심	55 (100.0)	25 (45.4)	20 (36.4)	5 (9.1)	5 (9.1)
3 심	23 (100.0)	8 (34.8)	11 (47.8)	4 (17.4)	0 (0.0)
합 계	78 (100.0)	33 (42.3)	31 (39.7)	9 (11.5)	5 (6.4)
		64 (82.1)		14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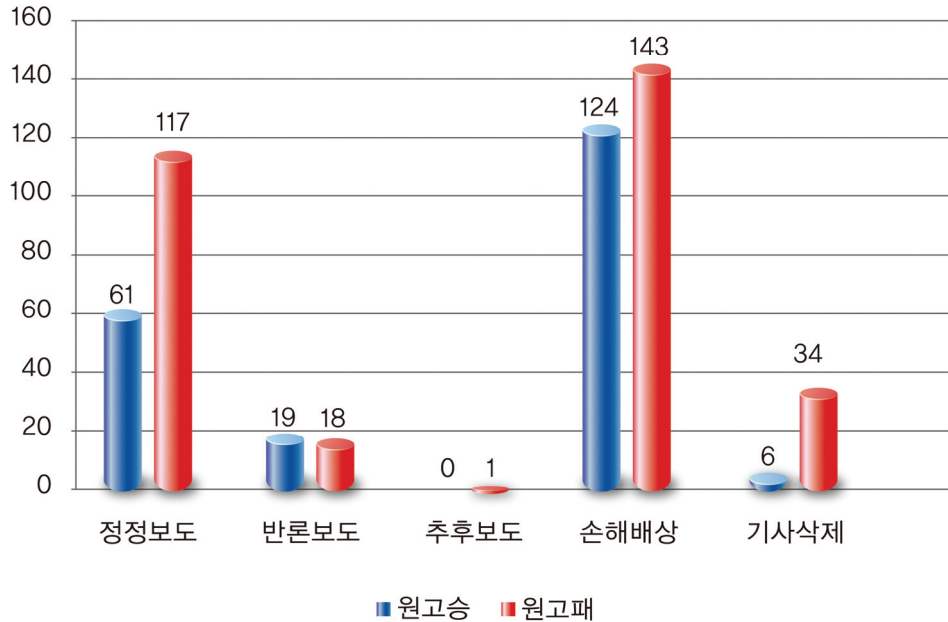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 사건이 51.4%로 가장 높아

183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청구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았다. 재분류된 523건 중 반론보도청구 사건(37건)의 원고 승소율이 51.4%(19건)로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청구(267건)는 46.4%(124건), 정정보도청구(178건)는 34.3%(61건), 기사삭제청구(40건)는 15.0%(6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 건에 불과한 추후보도청구 사건은 기각됐다.

〈표 3-3〉 청구별 결과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9.0%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49.0%로 집계됐다. 명예·초상·음성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성명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 다양한 침해유형의 원고 승소율은 100%로 나타났지만 해당 건수가 소수(2건 이하)에 불과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

〈표 3-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 예	74 (49.0)	77 (51.0)	151 (100.0)
명예/신용	2 (33.3)	4 (66.7)	6 (100.0)
명예/모욕	4 (66.7)	2 (33.3)	6 (100.0)
명예/모욕/초상	1 (100.0)	0 (0.0)	1 (100.0)
명예/초상	2 (100.0)	0 (0.0)	2 (100.0)
명예/초상/사생활	1 (50.0)	1 (50.0)	2 (100.0)
명예/초상/음성	2 (100.0)	0 (0.0)	2 (100.0)
명예/음성	1 (50.0)	1 (50.0)	2 (100.0)
명예/성명	2 (100.0)	0 (0.0)	2 (100.0)
명예/사생활	3 (75.0)	1 (25.0)	4 (100.0)
저 작 권	2 (100.0)	0 (0.0)	2 (100.0)
사 생 활	1 (100.0)	0 (0.0)	1 (100.0)
초상/사생활	1 (50.0)	1 (50.0)	2 (100.0)
합 계	96 (52.5)	87 (47.5)	183 (100.0)

※ ()안의 숫자는 %

5. 원고유형별 결과

일반인의 승소율이 59.7%로 가장 높아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일반인 59.7%, 공적 인물 51.6%, 고위공직자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공공단체의 승소율이 100%에 달했으나 해당 건수가 각각 2건, 4건에 불과하고,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은 35.3%에 그쳤다.

〈표 3-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개 인	고위 공직자	1 (12.5)	7 (87.5)	8 (100.0)
	공적 인물	16 (51.6)	15 (48.4)	31 (100.0)
	일 반 인	46 (59.7)	31 (40.3)	77 (100.0)
	소 계	63 (54.3)	53 (45.7)	116 (100.0)
단 체	언 론 사	6 (35.3)	11 (64.7)	17 (100.0)
	국가기관	1 (33.3)	2 (66.7)	3 (100.0)
	지 자 체	2 (100.0)	0 (0.0)	2 (100.0)
	기 업	6 (42.9)	8 (57.1)	14 (100.0)
	공공단체	4 (100.0)	0 (0.0)	4 (100.0)
	종교단체	7 (58.3)	5 (41.7)	12 (100.0)
	교육기관	0 (0.0)	2 (100.0)	2 (100.0)
	일반단체	7 (53.8)	6 (46.2)	13 (100.0)
소 계	33 (49.3)	34 (50.7)	67 (100.0)	
합 계		96 (52.5)	87 (47.5)	1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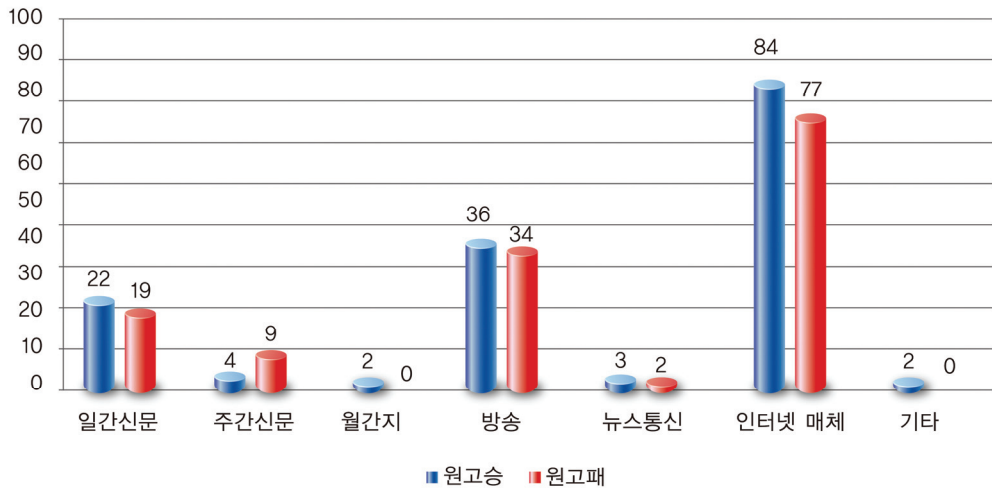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결과

인터넷 매체 상대 사건의 원고 승소율 52.2%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294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 관련 소송(161건)의 원고 승소율은 52.2%(84건)로 나타났다. 사건수는 많지 않지만 월간지(2건)와 기타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방송사 노보, 2건)의 승소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주간신문(13건)을 상대로 한 사건의 승소율이 3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신문(41건)을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 48.1%(13건), 지역종합일간지 77.8%(7건), 경제일간지 50.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원고 승소율은 41.2%(14건), 케이블방송은 61.1%(22건)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인터넷신문 46.8%(29건), 언론사닷컴 55.6%(55건)로 각 조사됐다.

〈표 3-7〉 일간신문 유형별 소송 결과

일간신문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13 (48.1)	14 (51.9)	27 (100.0)
지역종합	7 (77.8)	2 (22.2)	9 (100.0)
경제일간	2 (50.0)	2 (50.0)	4 (100.0)
스 포 츠	0 (0.0)	1 (100.0)	1 (100.0)
합 계	22 (53.7)	19 (46.3)	41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8〉 방송 유형별 소송 결과

방송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방송	14 (41.2)	20 (58.8)	34 (100.0)
케 이 블	22 (61.1)	14 (38.9)	36 (100.0)
합 계	36 (51.4)	34 (48.6)	70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9〉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 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29 (46.8)	33 (53.2)	62 (100.0)
언론사닷컴	55 (55.6)	44 (44.4)	99 (100.0)
합 계	84 (52.2)	77 (47.8)	161 (10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와 뉴스(방송) 상대 원고 승소율 50.0% 이상

매체별로 분류된 294건을 방송 외 매체 224건, 방송 매체 70건으로 다시 나눈 후, 각 매체에 따른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 외 매체의 경우,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스트레이트 기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매체 중에는 교양 프로그램의 원고 승소율이 66.7%로 가장 높았고, 언론소송이 가장 많은 뉴스에 대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50.0%로 집계됐다.

〈표 3-10〉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116 (54.0)	99 (46.0)	215 (100.0)
만 평	0 (0.0)	2 (100.0)	2 (100.0)
사 설	0 (0.0)	3 (100.0)	3 (100.0)
칼 럼	1 (25.0)	3 (75.0)	4 (100.0)
합 계	117 (52.2)	107 (47.8)	224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11〉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 스	26 (50.0)	26 (50.0)	52 (100.0)
교 양	6 (66.7)	3 (33.3)	9 (100.0)
고 발	4 (50.0)	4 (50.0)	8 (100.0)
토 론	0 (0.0)	1 (100.0)	1 (100.0)
합 계	36 (51.4)	34 (48.6)	70 (100.0)

※ ()안의 숫자는 %

8. 소송기간

3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1심 보도게재청구 사건은 2건

언론소송에서는 소송 진행의 신속함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9조에서는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소송 개시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즉 소송기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⁴⁾

그 결과, 1심과 2심 사건 상당수가 6개월을 초과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 심	2 (1.9)	14 (13.5)	56 (53.8)	28 (26.9)	4 (3.8)	104 (100.0)
2 심	0 (0.0)	15 (26.8)	37 (66.1)	4 (7.1)	0 (0.0)	56 (100.0)
3 심	11 (47.8)	9 (39.1)	1 (4.3)	1 (4.3)	1 (4.3)	23 (100.0)
합 계	13 (7.1)	38 (20.8)	94 (51.4)	33 (18.0)	5 (2.7)	183 (100.0)

※ ()안의 숫자는 %

특히, 법률에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1심 보도게재청구 사건에서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선고한 사건이 55건(85.9%)으로 대다수였다.

〈표 3-13〉 보도게재청구 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 심	2 (3.1)	7 (10.9)	40 (62.5)	15 (23.4)	0 (0.0)	64 (100.0)
2 심	0 (0.0)	9 (23.7)	25 (65.8)	4 (10.5)	0 (0.0)	38 (100.0)
3 심	10 (55.6)	6 (33.3)	0 (0.0)	1 (5.6)	1 (5.6)	18 (100.0)
합 계	12 (10.0)	22 (18.3)	65 (54.2)	20 (16.7)	1 (0.8)	120 (100.0)

※ ()안의 숫자는 %

4) 이 분석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일환으로 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사건도 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합산한 건수는 523건이다. 523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267건)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 청구액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분석 시에는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 평균값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청구액 및 인용액의 중앙값⁵⁾과 최빈액⁶⁾을 함께 조사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했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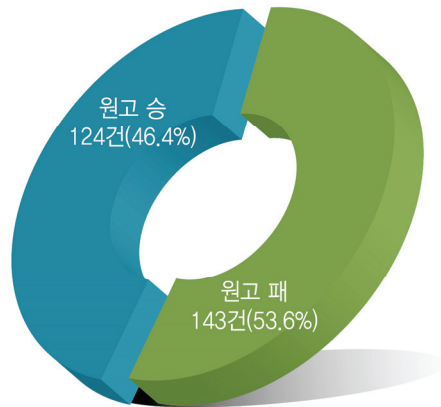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 46.4%

분석 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267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24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46.4%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언론소송(183건)에서의 원고 승소율(52.5%)보다는 낮은 수치다.

5)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두 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6)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표 4-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1억 2,880만 원, 중앙값 6천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건 비중 18.7%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빈액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2,880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6천만 원, 최빈액은 1억 원이었다.

한편, 전체 손해배상청구 267건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은 50건(18.7%)으로 최근 3년간 가장 적었고, 최고 청구액은 30억 원, 최저액은 150만 원이었다.

〈표 4-2〉 손해배상 청구액

건수	청구액(원)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267		128,802,996	60,000,000	100,000,000	1,500,000	3,0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853만 원, 인용 최고액 1억 5,741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267건)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24건(46.4%)이다. 이들 사건의 평균 인용액은 약 853만 원, 중앙값은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1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1억 5,741만 원으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었다.⁷⁾

한편,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 중 2심 판결은 37건, 3심 판결은 10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47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법원이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했는지를 살펴보았다.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가 23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반복한 경우 포함) 13건, 감액한 경우 1건으로 나타났다. 3심의 경우, 대법원은 10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건수	인용액(원)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24		8,533,548	4,000,000	10,000,000	300,000	157,4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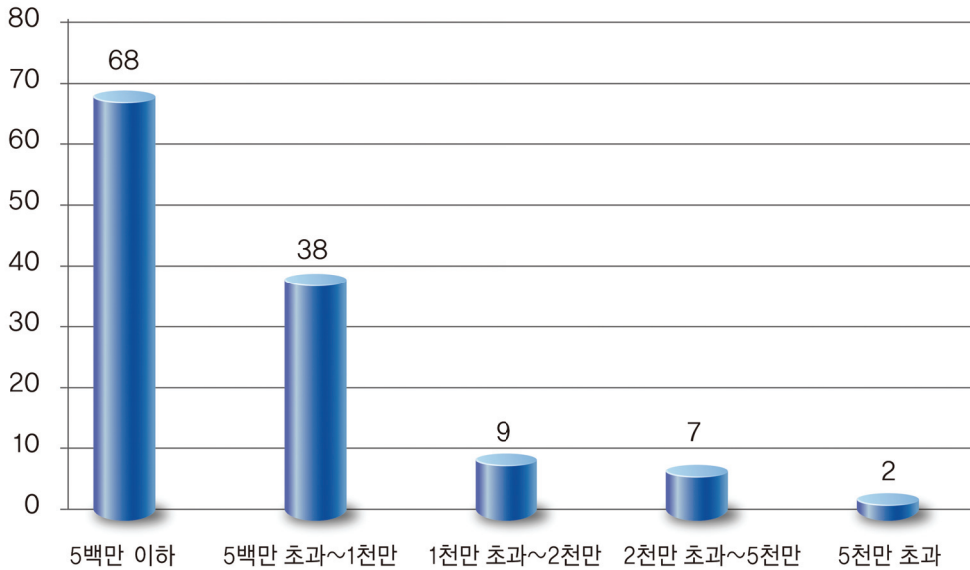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68840 판결

4. 인용액 분포

절반 넘는 사건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 원 이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124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68건(54.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38건(30.6%),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9건(7.3%),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7건(5.6%), 5천만 원 초과가 2건(1.6%)으로 나타났다.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 41.9%

손해배상청구 사건 267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했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1.9%, 인용액 중앙값은 3백만 원이었다.

한편 명예훼손과 함께 초상권 또는 성명권 침해가 문제 된 사건의 승소율은 100%로 명예훼손만 다른 사건에 비해 승소율이 높았다.

〈표 4-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명 예	217	91	41.9	7,417,743	3,000,000
명예/신용	8	3	37.5	20,000,000	20,000,000
명예/모욕	7	5	71.4	8,000,000	10,000,000
명예/모욕/초상	1	1	100.0	5,000,000	5,000,000
명예/초상	4	4	100.0	3,300,000	3,333,333
명예/초상/사생활	7	2	28.6	2,500,000	2,500,000
명예/초상/음성	4	4	100.0	4,000,000	4,000,000
명예/성명	2	2	100.0	30,000,000	30,000,000
명예/음성	2	1	50.0	750,000	750,000
명예/사생활	6	4	66.7	1,500,000	1,500,000
저 작 권	5	5	100.0	27,900,000	27,300,000
사 생 활	1	1	100.0	30,000,000	30,000,000
초상/사생활	3	1	33.3	7,000,000	7,000,000
합 계	267	124	46.4	8,533,548	4,0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언론사는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대비 인용액 높게 나타나

원고유형별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공공단체(83.3%), 일반인(52.1%), 공적 인물(51.9%) 등의 순이었다.

원고가 언론사인 사건의 승소율은 높지 않았지만(35.0%)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되어 인용액 중앙값은 1,960만 원으로 조사됐다.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 인	고위 공직자	14	2	14.3	1,500,000	1,500,000
	공적 인물	52	27	51.9	4,592,593	2,500,000
	일 반 인	117	61	52.1	6,886,066	3,000,000
단 체	언 론 사	20	7	35.0	21,785,714	19,600,000
	국가기관	0	0	0.0	-	-
	지 자 체	0	0	0.0	-	-
	기 업	15	7	46.7	34,915,714	20,000,000
	공공단체	6	5	83.3	7,200,000	8,000,000
	종교단체	21	8	38.1	4,025,000	4,000,000
	교육기관	4	0	0.0	-	-
	일반단체	18	7	38.9	6,571,429	10,000,000
합 계	267	124	46.4	8,533,548	4,000,000	

〈표 4-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치인	6	3	50.0	1,333,333	1,500,000
전문인	14	12	85.7	5,500,000	4,000,000
언론인	7	0	0.0	-	-
연예인	1	1	100.0	15,000,000	15,000,000
기 타	24	11	45.8	3,545,555	2,500,000
합 계	52	27	51.9	4,592,593	2,500,000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방송의 인용액 평균값이 3년간 가장 높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은 월간지와 기타 매체가 100%를 기록했지만 사건 수가 극소수여서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신문(44.4%)과 언론사닷컴(50.5%) 등 인터넷 매체의 원고 승소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고, 1건에 불과한 스포츠지를 제외하면 주간신문의 원고 승소율(30.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인용액 평균값은 방송이 약 1,267만 원으로 2015·2016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다.

〈표 4-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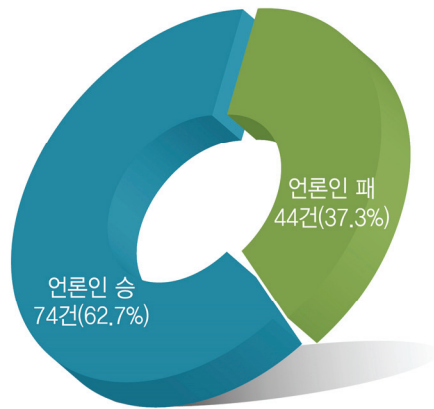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일 간	중앙종합		25	11	44.0	12,590,909	10,000,000
	지역종합		9	5	55.6	4,900,000	2,000,000
	경제일간		4	2	50.0	10,000,000	10,000,000
	스 포 츠		1	0	0.0	-	-
	소 계		39	18	46.2	10,166,667	8,750,000
방 송	지상파방송		27	9	33.3	19,022,222	8,000,000
	케 이 블		35	17	48.6	9,311,765	5,000,000
	소 계		62	26	41.9	12,673,077	5,000,000
주간신문			13	4	30.8	3,825,000	2,500,000
월 간 지			2	2	100.0	11,666,667	11,666,667
뉴스통신			5	3	60.0	3,333,333	2,000,000
인터넷	인터넷신문		54	24	44.4	12,255,417	5,000,000
	언론사닷컴		91	46	50.5	4,361,232	3,000,000
	소 계		145	70	48.3	7,057,524	3,266,667
기 타			1	1	100.0	3,000,000	3,000,000
합 계			267	124	46.4	8,533,548	4,000,000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언론인 승소율은 62.7%

손해배상청구 267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18건(44.2%)이었다. 이 중 피고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74건(62.7%)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승소율 53.6% 보다 높은 수치다.

〈표 4-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 승소 원인의 상당수는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

손해배상청구 267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43건의 침해유형별 기각 사유를 살펴보았다. 명예훼손의 경우⁸⁾, 보도의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가 41건(2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사유를 포함하여 기각된 사례가 22건(15.4%)이었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포함된 경우가 8건(5.6%)이었다.

동의를 이유로 기각된 초상권 침해 사건은, 원고가 검찰청에 출석하는 공적 인물과 자발적으로 동행하면서 얼굴을 가리거나 취재진에게 촬영을 거부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추단된다고 본 사례였다.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명예훼손	불 특 정	1	0.7
	불특정/상당성	3	2.1
	사실적시 없음	18	12.6
	사실적시 없음/공익성/상당성	2	1.4
	사실적시 없음/진실성	1	0.7
	사실적시 없음/상당성	1	0.7
	평가저하 아님	4	2.8
	평가저하 아님/진실성	4	2.8
	공 익 성	2	1.4
	공익성/진실성	25	17.5
	공익성/진실성/상당성	24	16.8
	공익성/상당성	41	28.7
	진 실 성	10	7.0
	초상권	불특정/공익/상당성	5
동 의		2	1.4
합 계		143	100.0

8) 명예를 포함하여 복수의 인격권 침해를 호소한 경우 주된 침해유형인 '명예훼손'에 분류하여 집계했다.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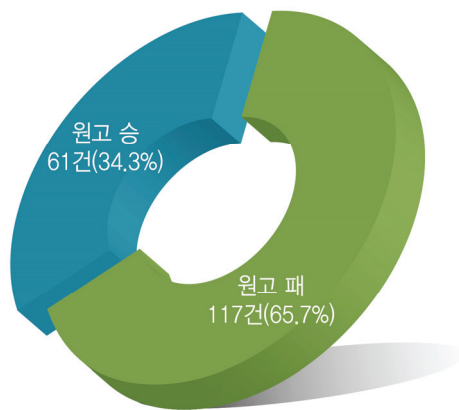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34.3%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523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78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61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4.3%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반론보도, 손해배상 또는 기사삭제 등과 병합하여 청구했다.

〈표 5-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한 사건(117건)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1건을 제외한 116건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68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적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보도가 진실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건이 24건(20.7%)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된 경우가 13건(11.2%)을 차지하여, 주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문제되는 표현에 대해 사실적 주장이 부정되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 5-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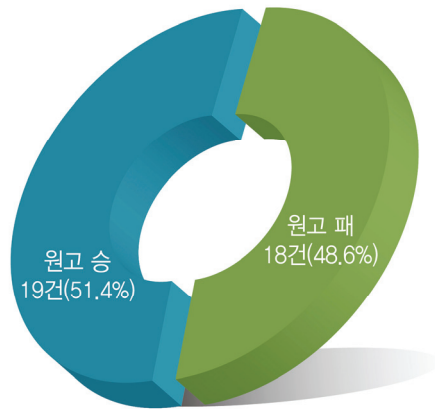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개별연관 부정/진실성	4	3.4
사실주장 아님	13	11.2
사실주장 아님/진실성	24	20.7
사실주장 아님/진실성/지엽말단	1	0.9
사실주장 아님/상당성	1	0.9
지엽말단	2	1.7
지엽말단/진실성	2	1.7
진 실 성	68	58.6
기 타	1	0.9
합 계	116	1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51.4%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37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은 19건, 원고 승소율은 51.4%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7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과 병합하여 청구했다.

〈표 5-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거나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대한 반론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사건 37건 중 기각된 사건은 18건이었다.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님과 동시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안에 해당하여 기각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5-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개별연관부정	2	11.1
사실주장 아님	2	11.1
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	6	33.3
지엽말단/기 반론행사	2	11.1
원보도와 무관/사실에 반함/지엽말단	1	5.6
사실에 반함	3	16.7
기 타	2	11.1
합 계	18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7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8건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게재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별로 분류한 기준으로 집계한 보도 게재 건수는 총 82건이다.

이를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9건, 주간신문 2건, 방송 15건, 인터넷 매체 42건, 기타 1건⁹⁾ 등이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은 정정보도가 60건, 반론보도가 22건이었다.

〈표 5-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	계
일간신문	14	5	-	19
주간신문	1	1	-	2
월간지	1	-	-	1
방송	10	5	-	15
뉴스통신	2	-	-	2
인터넷 매체	31	11	-	42
기타	1	-	-	1
합계	60	22	0	82

한편,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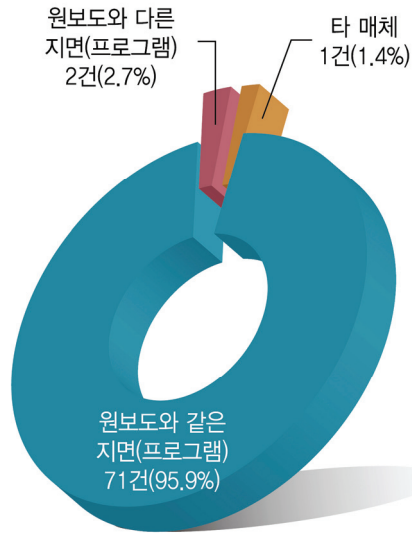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위치

대부분 원보도와 동일한 위치에 보도하도록 판결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것으로 조사됐다(71건, 95.9%).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2건(2.7%)에 불과했고, 타 매체 게재를 명한 1건은 피고의 언론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9)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내통신망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6나2071745)

〈표 5-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매체유형 중 '기타' 1건을 제외한 73건의 매체별 보도위치를 조사한 결과,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4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7건, 뉴스통신 및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게시되도록 한 사례가 30건으로 나타났다.

〈표 5-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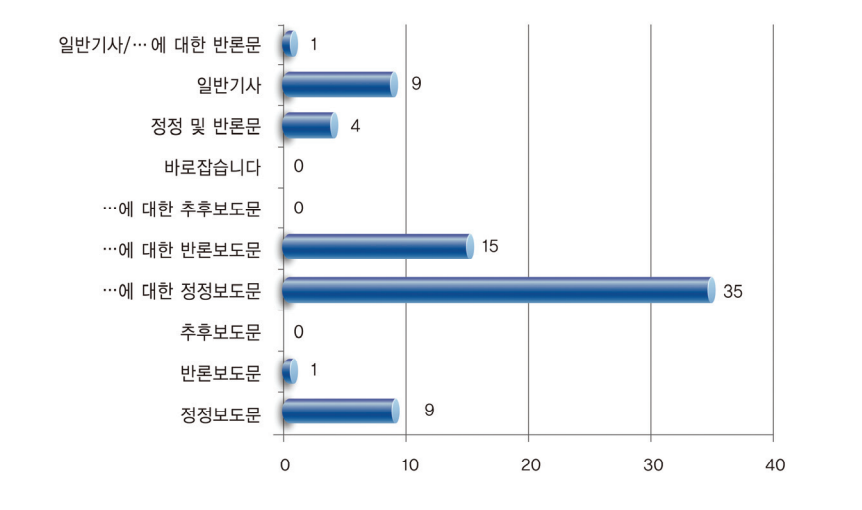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4	22.2
	1면 외	14	77.8
	합 계	18	100.0
방 송	첫머리	7	50.0
	후 반	0	-
	명시하지 않음	7	50.0
	합 계	14	100.0
인터넷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30	73.2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없음	11	26.8
	합 계	41	10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대체적으로 원보도의 핵심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제목 형식 취해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했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50건(67.6%)으로 집계되어 전년도(67.9%)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5-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이하가 19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400자 초과 500자 이하 18건(24.3%), 300자 초과 400자 이하 17건(23.0%), 700자 초과 11건(14.9%), 500자 초과 600자 이하 9건(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건수	비율(%)
300자 이하	19	25.7
301~400자	17	23.0
401~500자	18	24.3
501~600자	9	12.2
601~700자	0	0.0
700자 초과	11	14.9
합 계	74	100.0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전체 언론분쟁 사건 중 법원에서 처리되는 비율 8.8%

2017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294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523건 중에서 기사삭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반론·추후·손배 네 가지 청구권 관련 사건(총 483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8.8%의 사건만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조정경유 비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전체 언론분쟁 건수 (A+B)	3,789 (100.0)	3,523 (100.0)	3,540 (100.0)	10,852 (100.0)
조정 건수 (A)	3,319 (87.6)	3,170 (90.0)	3,230 (91.2)	9,719 (89.6)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판결 건수 (B)	470 (12.4)	353 (10.0)	310 (8.8)	1,133 (10.4)
조정을 거친 판결 건수 (C)	104 (2.7)	165 (4.7)	173 (4.9)	442 (4.1)
법원 판결 건수 (B+C)	574 (15.1)	518 (14.7)	483 (13.6)	1,575 (14.5)

※ ()안의 숫자는 %

- * 건수 산정 : 정정·반론·추후·손배 청구권별 산정 (기사삭제, 게재금지 등 제외)
- * 2015년 조정신청 건수의 경우, 총 5,227건 중 대량 사건 제외
- * 전체 언론분쟁 건수 : 판결 수집 건수를 전수조사로 전제한 경우임
- * 법원 판결 건수는 기사삭제, 게재금지 청구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위원회 평균 조정액 약 136만 원, 법원 평균 인용액 약 853만 원

2017년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136만 원, 중앙값은 1백만 원이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853만 원, 중앙값은 4백만 원이었다¹⁰⁾. 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전년도(약 223만 원)보다 감소했는데, 법원 평균 인용액 또한 전년도(약 3,843만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표 6-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83	1,369,737	1,000,000	100,000	10,000,000
인용액	124	8,533,548	4,000,000	300,000	157,410,000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3.2%

2017년 언론 관련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173건¹¹⁾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를 원고 승소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57건으로 이 사건들에 있어서의 원고 승소율은 63.2%(36건)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84.0%(21건)로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 55.6%(10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립결정(109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승소율은 38.5%(42건)에 그쳤다.

10)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11)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비롯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나 조정성립, 취하 등 위원회 조정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 6-3〉 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판결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18	10	8
	피신청인 이의신청		25	21	4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14	5	9
조정불성립결정			109	42	67
취 하			5	2	3
기 각			2	0	2
합 계			173	80	93

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에 이의신청한 사건 법원에서도 모두 인용

위원회가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 하도록 했지만 분쟁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자동 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위원회를 거쳐 자동 소 제기된 4건은 모두 법원에서 인용되었는데, 법원에서 위원회 조정액보다 낮은 금액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과 최고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4	10,250,000	5,000,000	1,000,000	30,000,000
인용액	4	8,250,000	6,000,000	1,000,000	20,000,000

〈표 6-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구분	사건번호	원고	피고	조정액	인용액
1	2016가합7376	A	주식회사 체널에이	5,000,000	5,000,000
2	2016가합2888,2895	A	주식회사 와이티엔	5,000,000	7,000,000
3	2016가합3537	A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1,000,000	1,000,000
4	2016가합1414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스타운	30,000,000	20,000,000

〈표 6-6〉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전체 목록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1	2016서울조정 381·382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신청인이 교통 단속과 관 련해 경찰과 실랑이 중 쓰 러진 것이 '쇼'였다는 보 도는 사실과 다르다.	기각	기각 (서울남법 2016가합 105344)	-	-	-
2	2016서울조정 906 (정정)	A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신청인 건설사와 장애인 부부 사이의 토지분쟁과 관련해 왜곡 보도해 피해 를 입었다.	취하	기각 (서울남법 2016가합 105986)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11320)	-	-
3	2016서울조정 624·625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채널에이	목사인 신청인이 북한에 포섭되어 지하조직 구축 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정정 -조정성립 작권결정 -500만 원	인용 5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7376)	-	-	-
4	2015서울조정 2998·2999 3002·3003 3008·3009 3010·3011 3018·3019 (각 정정·손배)	A 외 2명	주식회사 조선일보 외 4명	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 밖에서 가져와 마치 매장에서 구 매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 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 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5가단 5307473)	-	-	-
5	2015서울조정 2823·2824 2825·2826 (각 정정·손배)	A	B (불교닷컴)	학교법인 ○○대학교가 전 이사장이 집무실 등에 설치한 CCTV 저장장치 를 강제로 가져갔다는 보 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5가단 5166870)	-	-	-
6	2015서울조정 3189 (정정)	주식회사 문화방송	A (미디어스)	신청인 언론사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 비자금 관련 보도를 하면서 수사 대상을 아권으로 넓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 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36372)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04820)	기각 (대법 2016다 257237)	-
7	2015서울조정 2340·2341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KBS 내부에 이원구 국무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를 막는 세력이 있다는 보도 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반론 서울남법 (2015가합 3175)	기각 (서울고법 2015나 2074228)	기각 (대법 2016다 270551)	-
8	2014서울조정 913 (손배)	A	주식회사 이엠디	신청인이 자신을 재림예 수라 주장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부천지원 2014가합 9860)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서울고법 2015나 2060748)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대법 2016다 269810)	-
9	2016서울조정 1109 (반론)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신청인 마을 이장과 주민 들이 도로 확장공사를 위 해 한 노인의 주택을 무단 철거했다는 보도는 사실 과 다르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2901)	인용-반론 (서울고법 2017나 2020492)	-	-
10	2015서울조정 2332, 2333 2334·2335 2336·2337 (각 정정, 각 정정·반론)	주식회사 문화방송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MBC가 경영진이나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사원에 게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 는 등 인사평가에 객관성 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1789)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12104)	기각 (대법 2016다 273932)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11	2015서울조정 1857 (손배)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서울변회 감사 후보로 출 마한 신청인이 노인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둘 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 르다.	취하간주	기각 (서울중법 2015가합 5023195)	계류 (서울중법 2017나 24549)	-	-
12	2016서울조정 371·372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교회 목사인 신청인이 성 매매를 일삼았다는 보도 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522288)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23309)	-	-
13	2016서울조정 1798 (반론)	A	프레스이안 협동조합	신청인이故 백남기 씨 농 성장의 흡연장에 대자보 를 붙여 반말로 청소년의 흡연을 문제 삼으며 강압 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보 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3256)	-	-	-
14	2016서울조정 1215·1216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중증장애인시설을 운영 중인 신청인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횡령 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서법 2016가합 38290)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25688)	-	-
15	2015제주조정 26·27 28·29 (각 정정·손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외 1명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 원회 위원장이 제주도해 양수산연구원 감사 관련 기자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 르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800만 원 (제주지법 2015가합 1648, 1655)	인용-정정 800만 원 (광주고법- 제주 2016나 10546, 10553)	인용-정정 800만 원 (대법 2017다 227929)	-
16	2016서울조정 607·608, 609 (각 정정·손배, 정정)	A	주식회사 중앙일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인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성공보수를 미리 떼 의혹 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정정 2,0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523885)	인용-정정 2,000만 원 (서울고법- 2017나 2026476)	-	-
17	2016서울조정 13·14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신청인 교회가 대전지역 에서 개최한 호 잔치가 포 교를 위한 것이라는 보도 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정정·반론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합 105160)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고법 2016나 2070933)	인용-정정 500만 원 (대법 2017다 229567)	-
18	2015서울조정 4050 (반론)	A	주식회사 와이티엔	(국군 복지시설 사장) 신 청인이 화식 자리에서 동 성 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인용-반론 (서울서법 2016가합 30081)	조정성립 (서울고법 2017나 2027653)	-	-
19	2016서울조정 1171·1172 1173·1174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와이티엔	제자 학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신청인이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이유가 심 신미약이라는 등의 보도 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정정 500만 원	인용-정정 700만 원 (서울서법 2016가합 2888, 2895)	-	-	-
20	2014서울조정 7209 (손배)	A	주식회사 조선방송	한국○○회가 유병인 전 회장 및 구원파와 관련있 다고 보도하며, 회장인 신 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5가합 570228)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서울고법 2016나 2063836)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21	2016서울조정 470·478 (각 정정)	재단법인 A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아리랑TV의 외주제작사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6가합 6526 등)	인용-정정 (서울고법 2017나 2029604 등)	계류 (대법 2017다 281114)	-
22	2015서울조정 4053·4054, 4148, 4207·4208 (각 정정·손배, 정정)	A	재단법인 씨비에스	주식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이 1심 재판부로부터 재판일정 관련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합 101724)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79664)	-	-
23	2016서울조정 1480·1481 (추후·손배)	A	주식회사 일요서울 신문사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고 보도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직권결정 -100만 원	인용 1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3537)	-	-	-
24	2016경기조정 86·87 (반론·손배)	A	주식회사 씨엔엔 21방송	신청인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의 집행 절차 및 용역자 선정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반론 (행정지원 2016가합 10348)	-	-	-
25	2016경기조정 47·48 49·50 (각 정정·손배)	A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식회사	호텔 경영자인 신청인이 호텔 편의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여직원들을 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성남지원 2016가합 206846)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36510)	-	-
26	2016서울조정 616 (정정)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가해자인 신청인이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532506)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88750)	기각 (대법 2017다 245477)	-
27	2016서울조정 369·370 371·372 (각 정정·손배)	A	B 외 1명 (뉴스앤 조이)	교회 목사인 신청인이 성매매를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32483)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65757)	기각 (대법 2017다 245415)	-
28	2016서울조정 644, 707, 708 (각 정정)	A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신청인이 보수단체인 여베이연합에 한일위안부 합의안 체결을 지지하는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34168)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75723)	-	-
29	2015서울조정 4076·4077 (정정·손배)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주식회사 천지일보	신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보도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가 오보를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정정	인용-정정 1천만 원 (서울서법 2016가합 32131)	인용-정정 1천만 원 (서울고법 2017나 2000214)	-	-
30	2016서울조정 1232·1233, 1234 (정정·손배, 정정)	A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교육부 공무원인 신청인이 신분제 공고화를 주장했다는 등 발언취지를 왜곡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32662 등)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36916 등)	계류 (대법 2017다 282704)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31	2016서울조정 639·640 (정정·손배)	A	B (뉴스앤 조이)	목사인 신청인이 여신도 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 었으며, 자녀교육비 등을 이유로 일부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38276)	-	-	-
32	2014서울조정 11279 (손배)	A	주식회사 시민일보	신청인이 한국○○회를 방 어막의 역할로 이용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 3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단 260855)	-	-	-
33	2016서울조정 952·953 (정정·손배)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스타운	신청인 회사가 특정 업체 상호를 무단으로 불법 사용 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 추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 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보 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정정 3,000만 원	인용-정정 2,000만 원 (서울북법 2016가합 1414)	취하 (서울고법 2017나 2042898)	-	-
34	2016서울조정 367·368 (반론·손배)	A	주식회사 법보신문사	언론사 편집장인 신청인 이 언론을 탄압하고 사주 의 편에 서는 등 정의를 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는 보 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반론 서울중법 (2016가합 5578)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70438)	기각 (대법 2017다 251144)	-
35	2016서울조정 942·943 (추후·손배)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이 장물알선 혐의 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 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직권결정 -추후	인용-추후 (서울서법 2016가합 2338)	인용-추후 (서울고법 2016나 2084529)	-	-
36	2016서울조정 595·596 (추후·손배)	A	주식회사 동아닷컴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 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 았다.	직권결정 -추후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9020)	-	-	-
37	2016서울조정 1534·1535· 1536 (정정·반론· 손배)	A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철거상가의 공동토지소 유주인 신청인이 토지매 입을 제안받았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35081)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48377)	기각 (대법 2018다 211907)	-
38	2016서울조정 1338, 1339 (각 정정)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신청인이 병든 아내와 딸 을 두고 가출하고 아내 사 망후 유산을 차지하기 위 해 딸의 친권을 주장한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100만 원 (서울서법 2016가합 37419)	조정성립 (서울고법 2017나 2051922)	-	-
39	2016서울조정 856 (정정)	A	B (예정뉴스)	신청인의 정관 개정 승인 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신청인이 총회 산하기관 으로 총회의 재산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동법 2016가합 106078)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48032)	기각 (대법 2018다 200167)	-
40	2016서울조정 1948 (정정)	A	주식회사 문화방송	막내아들인 신청인이 부 모님 집을 두고 큰형님과 상속다툼을 벌인다는 보 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700만 원 (동부지법 2017가합 100511)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41	2015서울조정 3069·3070· 3071 (정정·반론· 손배)	A	재단법인 씨비에스	신청인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보도는 사실 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반론 8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4123)	인용 정정반론 800만 원 (서울고법 2016나 2088743)	인용 정정반론 800만 원 (대법 2017다 259476)	-
42	2015경기조정 218·219 220·221 (각 추후·손배)	A	주식회사 경인일보	신청인이 횡령혐의로 수 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 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형 의 처분을 받았다.	직권결정 -추후	인용-추후 (수원지법 2016가합 373,380)	기각 (서울고법 2017나 8458, 8465)	-	-
43	2014서울조정 8619, 8620, 8996, 8997 (각 손배)	A 외 1명	한국방송공사	전양자씨의 검찰 출두 건 을 보도하면서 동의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 2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합 101939)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88859)	-	-
44	2016서울조정 2064 (정정)	A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피 소당한 신청인에 대한 검 찰의 불기소처분이 최순 실 씨 영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574746)	-	-	-
45	2015서울조정 4090·4091 (정정·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신청인 회사가 고인의 타인 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정정 4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합 100578)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48271)	기각 (대법 2017다 261325)	-
46	2015제주조정 32·33, 34 (정정·손배, 정정)	사단법인 A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신청인 협회가 공표한 20 14년도 제주지역 일간지 발행부수가 허위라는 보 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제주지법 2016가합 10601)	계류 (광주고법 2017나 10789)	-	-
47	2016서울조정 1297·1298, 1299·1300 1301·1302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명	신청인 기관이 액체엔진 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형발사체의 시험발 사를 의도적으로 연기한 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반론 1,0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563739)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59209)	-	-
48	2016서울조정 2136, 2137 (각 정정)	A	주식회사 문화방송	고 유병연씨가 휴대폰 30 0대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7가합 32954)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61301)	-	-
49	2014서울조정 1021 (정정)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이 님을 비위생적 으로 해동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 를 입었다.	직권결정 -정정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5640)	인용-정정 5,0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009002, 2009019)	기각(파기) (대법 2015다 256374, 256381)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53027)
50	2016경남조정 141, 143 (각 손배)	A	주식회사 남해시대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평소 정규수업과목 대신 파행수업을 진행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반론	인용 30만 원 (진주지원 2017가합 59)	조정성립 (부산고법 2017나 23076)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51	2016서울조정 1334 (손배)	A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박물관장인 신청인이 일 방적으로 장애인의 박물관 관 입장을 제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반론 (서울서법 2017가합 31234)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65044)	-	-
52	2016서울조정 2237·2238 2239·2240 (각 정정·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외 1명	신청인 회사가 핵폐기물 처리설비사업을 떠난 것이 청와대의 영향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7가합 101387)	-	-	-
53	2016서울조정 1378, 1379 (각 정정)	A	주식회사 조선방송	투신 자살한 아파트 경비 원이 관리소장인 신청인 의 폭언에 시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취하 (서울중법 2016가합 572214)	-	-	-
54	2016서울조정 487~495 (각 정정)	A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아리랑TV 외주제작사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신청인이 노골적으로 특 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 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작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1,5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6618 등)	인용-정정 1,500만 원 (서울고법 2017나 2000108 등)	계류 대법 2017다 282100)	-
55	2015서울조정 3526 (정정)	한국방송공사	전국연론 노동조합 KBS본부	KBS가 이사장의 개인용 무 해외출장에 공금을 집행 했고, 이사장의 압력을 받고 이사장 출연 프로그램에 제작비를 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작권결정 -정정·반론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6709)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고법 2016나 2071745)	인용-정정 300만 원 (대법 2017다 287266)	-
56	2017서울조정 269 (손배)	A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신청인이 광우교통문화 연수원장 재직시 부당인사 사 직원감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 전횡을 일삼 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불성립	기각 (광주지법 2017가소 519542)	-	-	-
57	2016서울조정 1930·1931 1932·1933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한국경제 신문 외 1명	전 인사혁신처장인 신청 인이 박근혜 정부 실패는 청와대 특정인사들의 인 사전횡 탓이라고 인터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7가합 506689)	-	-	-
58	2016서울조정 1228·1229 1290·1291 (각 정정·손배)	A	B (뉴스앤 조이)	신청인이 조직을 사유화 하고 독선과 전횡을 일삼 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 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556687)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75577)	-	-
59	2017서울조정 117, 118 (각 정정)	국방부	한국방송공사	군의 의료조치가 미흡하 고 진단이 늦어져 군인 형 제가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고통받 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정정·반론	기각 (서울남법 2017가합 514)	계류 (서울고법 2018나 2001405)	-	-
60	2017서울조정 317·318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여교사인 신청인이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하고 시부모로부터 돈을 뺏었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7가합 537)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74826)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61	2017서울조정 244 (손배)	A 외 1명	주식회사 중앙일보	맞선 아르바이트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 1,0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단 5160883)	-	-	-
62	2017서울조정 277 (정정)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탐사 저널리즘 센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통신사업자의 부당경품 제공사실을 알고도 과징 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7가합 13705)	계류 (서울고법 2018나 2006066)	-	-

* 진하게 표시된 사건은 2017년도에 선고된 것임

분석 판결 목록(민사 183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7-01-11	2016가합54711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한국일보사 외 1명	인용
2	2017-01-12	2016가합105344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3	2017-01-12	2015가단5072685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문화일보	인용
4	2017-01-13	2015가단5359238	서울중법	1심	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1명	기각
5	2017-01-13	2016나2034579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6	2017-01-18	2016가합1779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5명	기각
7	2017-01-18	2016다255828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8	2017-01-19	2016가합105986	서울남법	1심	정정	(주)에스비에스	기각
9	2017-01-19	2016가합106040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현축	기각
10	2017-01-19	2015가합22622	청주지법	1심	정정/손배	(주)중부매일신문 외 1명	인용
11	2017-01-25	2016가합32858	서울서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와이티엔 외 1명	기각
12	2017-01-26	2016나2018997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3명	인용
13	2017-02-03	2016가합737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14	2017-02-03	2015가단530747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일보 외 5명	기각
15	2017-02-07	2015가단5166870	서울중법	1심	손배	이○○ 외 1명	기각
16	2017-02-08	2016가단507090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2명	기각
17	2017-02-08	2016나204068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18	2017-02-08	2015가합11406	진주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주)일간뉴스경남 외 1명	인용
19	2017-02-08	2016나203456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문화일보 외 2명	인용
20	2017-02-08	2016나205988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조선방송 외 1명	인용
21	2017-02-09	2016다233033	대법	3심	손배	(주)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파기)
22	2017-02-10	2016다257237	대법	3심	정정/손배	안○○ 외 1명	기각
23	2017-02-10	2016카합10353	수원지법	1심	반론	(주)수원일보사	인용
24	2017-02-15	2016가단4970	서울남법	1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인용
25	2017-02-23	2016다270551	대법	3심	정정/반론	(주)미디어오늘	기각
26	2017-03-09	2016다269810	대법	3심	손배/기사삭제	(주)이엠디 외 1명	인용
27	2017-03-15	2016가합2901	서울서법	1심	반론	(주)문화방송	기각
28	2017-03-16	2016다273932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주)	기각
29	2017-03-21	2016가단50408	춘천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충북일보 외 1명	기각

번호	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30	2017-03-22	2016가합3628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31	2017-03-24	2016나202043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32	2017-03-30	2016가합104884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재)씨비에스 외 2명	기각
33	2017-03-30	2016가합54243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인용
34	2017-04-07	2015가단5023195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35	2017-04-07	2016가합52228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기각
36	2017-04-07	2016나202777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중앙일보플러스(주) 외 1명	기각
37	2017-04-14	2016나2030010	서울고법	2심	손배	대한민국 외 2명	인용
38	2017-04-14	2016나206728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39	2017-04-19	2016가합3256	서울서법	1심	반론	프레시안 협동조합	기각
40	2017-04-19	2016가합38290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오마이뉴스	인용
41	2017-04-21	2016가단5118335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이투데이	인용
42	2017-04-26	2016나10546, 2016나10553(병합)	광주고법 (제주)	2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43	2017-04-27	2016가합3301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2명	기각
44	2017-04-27	2017다209785	대법	3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45	2017-04-28	2016가합52388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중앙일보 외 2명	인용
46	2017-04-28	2016나2078104	서울고법	2심	정정	한국방송공사	기각
47	2017-04-28	2016나203699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뉴스1 외 2명	인용
48	2017-04-28	2016나207093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인용
49	2017-04-28	2016가합53060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아시아경제	기각
50	2017-05-10	2016가합30081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와이티엔 외 1명	인용
51	2017-05-10	2016가합2888, 2016가합2895(병합)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와이티엔 외 1명	인용
52	2017-05-11	2017가소2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와이티엔	기각
53	2017-05-12	2016가단524634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매일방송	인용
54	2017-05-18	2016가합1472, 2016가합1489(병합)	창원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영남매일신문사	인용
55	2017-05-19	2016나204936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5명	기각
56	2017-05-19	2016나206383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조선방송	인용
57	2017-05-19	2016나202478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오마이뉴스	기각
58	2017-05-19	2016가합568840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로컬세계미디어 외 2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59	2017-05-24	2016가합6526, 2016가합6540, 2016가합6564, 2016가합6595, 2016가합6533, 2016가합6557, 2016가합6571, 2016가합6588, 2016가합6601(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	(주)경향신문사	인용
60	2017-05-26	2016나207966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재)씨비에스 외 2명	기각
61	2017-06-02	2016가합3537	서울동법	1심	추후/손배/기사삭제	(주)일요서울신문사	인용
62	2017-06-02	2016가합529708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권○○	인용
63	2017-06-08	2016가합100875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인용
64	2017-06-08	2016가합10348	평택지원	1심	반론/손배	(주)씨엔엔21방송	인용
65	2017-06-09	2016가합206846	성남지원	1심	정정/손배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기각
66	2017-06-15	2016가단250681	서울남법	1심	손배	(주)국민일보 외 1명	인용
67	2017-06-15	2017나2010655	서울고법	환송후심	손배	(주)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68	2017-06-15	2017다218154	대법	3심	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69	2017-06-16	2016가합580918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인용
70	2017-06-16	2016나2088750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71	2017-06-16	2016나206575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e뉴조(뉴스앤조이)	기각
72	2017-06-16	2016나207572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기각
73	2017-06-16	2016나2078807	서울고법	2심	손배	김○○	기각
74	2017-06-16	2017나200021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천지일보	인용
75	2017-06-21	2016가합32662, 2016가합32679, 2016가합32686(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경향신문사	기각
76	2017-06-21	2016가합38276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뉴스앤조이 외 2명	기각
77	2017-06-22	2015가단50888	목포지원	1심	손배	류○○	인용
78	2017-06-23	2016가단5147678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매경닷컴 외 7명	인용
79	2017-06-28	2016가합50650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10명	인용
80	2017-06-28	2016가합53000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동아일보사 외 3명	인용
81	2017-07-04	2016가단5230488	서울중법	1심	손배	정○○ 외 1명	기각
82	2017-07-07	2016가단260855	서울남법	1심	손배	(주)시민일보	인용
83	2017-07-07	2015가단11907	제주지법	1심	손배	양○○	인용
84	2017-07-11	2017다224074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85	2017-07-11	2017다227929	대법	3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번호	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86	2017-07-13	2016가합1414	서울북법	1심	정정/손배	(주)뉴스타운	인용
87	2017-07-13	2016가단5221071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디지털데일리	인용
88	2017-07-14	2016나2083250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수원일보사 외 1명	기각
89	2017-07-14	2016나2070438	서울고법	2심	반론/손배	(주)법보신문사	기각
90	2017-07-21	2016나2071301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뉴스파인더 외 2명	인용
91	2017-07-21	2016가합2734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92	2017-07-21	2016나2084529	서울고법	2심	손배	한겨레신문(주)	기각
93	2017-07-21	2017가단503637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더팩트 외 2명	인용
94	2017-07-27	2017다229567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인용
95	2017-08-09	2016가합9020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동아닷컴	인용
96	2017-08-10	2016가합2247	서울남법	1심	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인용
97	2017-08-10	2016가합10984	통영지원	1심	정정/손배	(주)한남일보 외 14명	인용
98	2017-08-11	2016가합3508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기각
99	2017-08-16	2016가합37419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100	2017-08-17	2016가합106078	서울동법	1심	정정	유○○	기각
101	2017-08-17	2017가합100511	동부지원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인용
102	2017-08-17	2016가단240943	서울남법	1심	손배	(주)매일방송 외 2명	인용
103	2017-08-18	2017다231072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104	2017-08-18	2016나208874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외 3명	인용
105	2017-08-18	2015나2074211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106	2017-08-18	2017나966	서울고법	2심	손배	(주)헤럴드	인용
107	2017-08-18	2017나8458, 2017나8465(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경인일보	기각
108	2017-08-18	2017나202057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재)씨비에스 외 2명	기각
109	2017-08-18	2016나2088859	서울고법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110	2017-08-18	2016나207173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사삭제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111	2017-08-18	2016가합57474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동아일보사 외 3명	기각
112	2017-08-23	2016가합537921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연합뉴스 외 5명	기각
113	2017-08-24	2016가단71550	순천지원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2명	인용
114	2017-08-25	2016가합81440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경인일보 외 1명	기각
115	2017-08-25	2016나204827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116	2017-08-30	2017가합30644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프레시안협동조합 외 3명	기각
117	2017-09-07	2016가합10601	제주지법	1심	정정/손배	(주)제주신문사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18	2017-09-08	2016가합563739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1명	인용
119	2017-09-08	2016가합17052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아시아경제	인용
120	2017-09-15	2016나208151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주)	기각
121	2017-09-15	2017나201105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한국일보사 외 1명	인용
122	2017-09-20	2017가합32954	서울서법	1심	정정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123	2017-09-20	2017가합30422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외 4명	기각
124	2017-09-21	2015다256374, 2015다256381(병합)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파기)
125	2017-09-21	2017가합59	진주지원	1심	손배	(주)남해시대	인용
126	2017-09-21	2017가합66	진주지원	1심	손배	(주)남해시대	인용
127	2017-09-22	2017나201076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5명	인용
128	2017-09-26	2017가단5095484	서울중법	1심	손배	정○○	인용
129	2017-09-26	2016가단258271	서울서법	1심	손배	(주)코리아데일리	인용
130	2017-09-28	2017다251144	대법	3심	반론/손배	(주)법보신문사	기각
131	2017-10-11	2017가합31234	서울서법	1심	반론/손배	(주)제이티비시	인용
132	2017-10-12	2017가합1371	서울남법	1심	반론	한국방송공사	기각
133	2017-10-12	2017가합10138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134	2017-10-13	2017가합219	김천지원	1심	정정/손배	(주)뉴스코리아네트워크 외 2명	인용
135	2017-10-24	2015가단521945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3명	기각
136	2017-10-24	2017나29452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와이티엔	인용
137	2017-10-26	2015다56413	대법	3심	정정/손배	전주문화방송(주)	기각 (파기)
138	2017-10-27	2017가합500346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서울경제신문 외 1명	인용
139	2017-10-27	2016가합572214	서울중법	1심	정정	(주)조선방송	취하
140	2017-10-27	2017나2000108, 2017나2000122, 2017나2000139, 2017나2000146, 2017나2000153, 2017나2000177, 2017나2000160, 2017나2000115, 2017나2000184(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경향신문사	인용
141	2017-10-27	2017나2036916, 2017나2036930, 2017나2036923(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경향신문사	기각

번호	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42	2017-10-27	2017나2029604, 2017나2029642, 2017나2029659, 2017나2029673, 2017나2029680, 2017나2029611, 2017나2029628, 2017나2029635, 2017나2029666(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	(주)경향신문사	인용
143	2017-10-31	2017다245415	대법	3심	정정/손배	e뉴조(뉴스앤조이)	기각
144	2017-11-01	2017나8110	서울중법	2심	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1명	기각
145	2017-11-01	2017가합3171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46	2017-11-02	2016가단5219733	서울중법	1심	손배	뉴데일리경제(주)	인용
147	2017-11-03	2016나207174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외 3명	인용
148	2017-11-03	2017나2020492	서울고법	2심	반론	(주)문화방송	인용
149	2017-11-03	2017나202330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기각
150	2017-11-03	2016가합546642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경기일보 외 4명	인용
151	2017-11-08	2016가합571730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3명	기각
152	2017-11-08	2017가단52295	서산지원	1심	손배	(주)충청투데이 외 1명	인용
153	2017-11-09	2017나53581	서울남법	2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인용
154	2017-11-09	2017다245477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155	2017-11-10	2017나2011320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주)에스비에스	기각
156	2017-11-14	2015가단5359221	서울중법	1심	손배	최○○ 외 2명	기각
157	2017-11-23	2016가합50435	서산지원	1심	손배	(주)서산시대 외 1명	인용
158	2017-11-23	2017다259469	대법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재)씨비에스 외 2명	기각
159	2017-11-23	2017다255269	대법	3심	손배	(주)뉴스파인더 외 1명	인용
160	2017-11-23	2017다259476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외 3명	인용
161	2017-11-23	2017다264171	대법	3심	정정/기사삭제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162	2017-11-24	2017나2035289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인용
163	2017-11-24	2017나57125	서울남법	2심	손배	(주)국민일보 외 1명	인용
164	2017-11-28	2017가소519542	광주지법	1심	손배	(주)한국일보 외 1명	기각
165	2017-11-29	2017가합50668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한국경제신문 외 1명	기각
166	2017-11-29	2016가합55668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강○○ 외 1명	기각
167	2017-11-29	2017가합503833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방송 외 1명	인용
168	2017-12-07	2017다261325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169	2017-12-07	2017가합514	서울남법	1심	정정/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70	2017-12-13	2017가합53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3명	기각
171	2017-12-13	2017가단516088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중앙일보 외 1명	인용
172	2017-12-14	2017나458136	광주지법	2심	손배	류○○	인용
173	2017-12-15	2017가합544940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머니투데이	기각
174	2017-12-15	2017나2048032	서울고법	2심	정정	유○○	기각
175	2017-12-15	2017나202568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오마이뉴스	기각
176	2017-12-15	2017나202647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중앙일보 외 2명	인용
177	2017-12-15	2017카합10294	수원지법	1심	반론	(주)수원일보사	인용
178	2017-12-20	2017가합13705	서울중법	1심	정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인용
179	2017-12-21	2017다260599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기사삭제	국민일보(주) 외 1명	인용
180	2017-12-21	2017가합163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4명	기각
181	2017-12-22	2017나2045613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7명	인용
182	2017-12-22	2017가단5079932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인용
183	2017-12-22	2017나34171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매일방송	인용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1. 명예훼손 사례
2. 사생활 침해 사례
3. 성명권 침해 사례
4. 초상권 침해 사례

제2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제1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4가합5726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34579 판결

국회의원에 대해 ‘강경파’로 표현한 것은 평가 내지 의견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채널에이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8월 12일자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C가 새누리당과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진행자와 피고 B가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이때 대담자 B는 ‘강경파 의원’인 원고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장 문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외쳤으며, 원고를 포함한 당내 강경파 여성의원 12명이 재협상을 요구해 여성의원 2명 중 1명꼴로 여성 원내대표인 C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발언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국회의원으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위 부분 보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라는 공적사안에 관한 것이며 ‘강경파 의원’이란 표현은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를 민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대법원 2017다209785).

한편, 원고는 소 제기애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된 바 있다(2014서울조정1500·2014서울조정1501).

[판결요지]

- ‘강경파 의원’으로 규정짓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강경파’란 어떤 사안에 대한 태도가 굳세어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한다. 설령 그 평가가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의원총회에서 “유가족 뜻에 반대되는 세월호 특별법 안돼!”라고 외쳤다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기존의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 국회의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2심에서의 추가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은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인 원고도 민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7261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채널에이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더불어민주당(변경 전 명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인 '채널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B는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서 정치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채널에이의 방송보도

- 1) 피고 채널에이는 2014. 8. 12. 방송된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대담자 피고 B가 '세월호 특별법 파기, 정국 파행 해결방법은?'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C가 새누리당과 타결한 합의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내 의원 상당수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위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형식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1 방송'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대담자 피고 B는 위 프로그램에서 아래와 같은 각 발언을 하였다(이하 각 발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보도'라 한다).
 - 가) "(새정치민주연합) D, E, A, F 의원 등은요. 주말 내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 서명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 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총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일요일 저녁에 강경파 의원 44명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바로 이 44명 가운데 여성의원이 12명이나 됩니다.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 130명인데요. 여성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런데 이 25명 중에 12명이 이 서명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원의 경우에는 두 명 중에 한 명 꼴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C 의원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2) 한편, 위 프로그램의 여성 진행자는 1)항과 같은 피고 B의 발언에 이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행자 발언'이라 한다).
- 3) 피고 채널에이는 2014. 9. 10. 방송된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 1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대담자 피고 B 및 G, H가 '세월호법 정국, 냉온탕 오가는 C 대표'라는 주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C 의원이 새누리당과 타결한 합의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내 의원 상당수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위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위 합의안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분위기 등에 관하여 대담을 나누는 형식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2 방송'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대담자 피고 B는 아래와 같은 각 발언을 하였다(이하 각 발언을 통칭

하여 ‘이 사건 제2 보도’라 한다).

- 가)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장 입구에서부터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뜻에 반대되는 세월호 특별법 안돼!」”
- 나) “예를 들어서, A 의원 같은 분이 여성인데, 의총장 바로 문 앞에서 이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부터가 굉장히 위축이 되기 시작하죠.”
- 다) “그리고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 뭐, 육두문자도 쓰고 이러면서 중도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의총장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데요. 한 초선의원의 발언입니다. 「지X한다. 지금 의총 할 땐가. 내가 다 뒤집어 놓겠다.」 뭐 이런 발언이 서슴지 않고 터져 나오는 거죠.”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 등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 B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14년 형제43185호),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J는 2015. 1. 29. 피고 B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제2050호) 서울고등검찰청은 2015. 3. 16.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초재1588)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모1868) 대법원은 2015. 12. 29. 위 재항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추인여부를 결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C 의원에게 반기를 든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인 이 사건 제1 보도를 하였고, 원고를 ‘강경파’로 규정지을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추인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장 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동료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강경파’로 분류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면서 허위사실인 이 사건 제2 보도를 하였다. 또한 피고 채널에이 소속 여성 진행자는 피고 B의 이 사건 제1 보도에 이어 이 사건 진행자 발언을 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여성의원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 내지 발언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발언자인 피고 B와 위 각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한 피고 채널에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 3)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 4)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나. 이 사건 제1, 2 보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보도

가)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보도가 있기 전인 2014. 8. 10. 원고와 견해를 같이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3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2014. 8. 7.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진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피해자 유족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이하 ‘이 사건 성명’이라 한다)을 발표한 점, ②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은 총 130명인데 그 중 여성의원은 25명이고, 이 사건 성명을 발표한 44명의 국회의원 중 12인이 여성의원이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B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총 여성의원 25인 중 절반에 가까운 12인이 이 사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C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보도가 포함된 이 사건 제1 방송의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대립에 관한 것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원고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4인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위 합의안에 반대하고 재협상을 촉구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D, E, A, F 의원 등이 주말 내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발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보도한 이 사건 제1 방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 또한 기존의 협상안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인 원고가 그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뜻을 같이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 그 사실이 보도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의원총회에 앞서 동료의원들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화를 건 사실조차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제1 보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라는 공적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당 내지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당시 국민들의 중대 관심 사안이었던 점, 위 적시된 내용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보도 내용 또한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분 보도는 공익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여성의원의 경우에는 두 명 중에 한 명 꼴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C 의원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C 의원이 합의한 사항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의 수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반기를 들었다”는 표현은 “반대하였다”는 의미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거나 평가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대표자가 상대 정당과 사이에 한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거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원고가 소속 정당 내지 대표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제2 보도

가) 먼저 원고를 ‘강경파’ 의원으로 규정하여, 강경파 의원인 원고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장 문 앞에서 유가족 뜻에 반대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외쳤다는 발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보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라는 공적사안에 대한 것이고, 원고가 위 의원총회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하는 이 사건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우선 ‘강경파’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태도가 굳세어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평가가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의원총회장에서 “유가족 뜻에 반대되는 세월호 특별법 안 돼!”라고 외쳤다는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기존의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부분 보도가 허위사실의 적시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점, 위 부분 보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라는 공적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당 내지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당시 국민들의 중대 관심 사안이었던 점, 위 적시된 내용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보도 내용 또한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볼 때, 위 부분 보도는 공익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강경파 의원으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한 뒤에 연이어 “강경파 의원들이 육두문자를 써서 중도파 의원들이 의총장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강경파 조선의원이 「지X한다. 지금 의총 할 땐가. 내가 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말했다.”는 발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의 실명을 거론한 뒤에 강경파 의원들의 행동을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성명을 발표한 의원의 수가 44인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의 조선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뒤이은 보도에 등장하는 “강경파 의원들”, “강경파 조선의원”이 원고를 특정하여 지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위 보도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원고의 실명 거론 후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한 “한 강경파 조선의원”의 발언이라고만 보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욕설을 한 강경파 조선의원이 원고와는 다른 의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보도 중 위 ‘강경파 의원의 욕설’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진행자 발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방송 중 이 사건 제1 보도에 이어 이 사건 진행자 발언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다.”라는 표현은 위 진행자의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것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C 의원이 새누리당과 타결한 합의안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같은 여성의원들이 재협상을 촉구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진행자 발언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발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왜곡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6나203457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채널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4가합57261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¹²⁾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나. 이 사건 제1, 2 보도에 관한 판단” 이전에 아래의 “나.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고, 그 이하의 “나.항 및 다.항”을 “다.항 및 라.항”으로 각 고쳐 쓴다.
- 다.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국회의원인 원고는 기본권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12) 제1심에서는 ‘연 20%’로 청구하였다가 항소취지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는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일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보호의 대상이 되는 명예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원고와 같은 국회의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인 원고도 민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 “재협상을 요구하는...”부터 제20행 “보일 뿐만 아니라,”까지를 “원고가 이 사건 성명을 발표한 44명의 국회의원 중 12인의 여성의원의 한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방송의 본질적인 내용인 ‘원고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재협상을 촉구하였다’는 내용을 다소 과장하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고”로 고쳐 쓴다.
- 마.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0행 “가능성이 높은 점” 다음에 “③ ‘강경파 조선의원’, ‘지×한다. 지금 의총할 땐가. 내가 다 뒤집어 놓겠다’라는 내용을 자막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얼굴을 화면에 비추지 아니한 이상,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추단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070907 판결(확정)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 보도에서 사용한 ‘차이잉원 과거 발언이 단독 인터뷰로 둔갑’이란 표현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며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

- 원고 : 주식회사 연합뉴스
- 피고 :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2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1월 21일자 인터넷 <미디어오늘>에 게재한 「차이잉원 과거 발언이 단독 인터뷰로 둔갑」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진당 신문부 주임이 차이잉원의 과거 발언을 정리해 원고의 질의서에 답변한 것을 두고 원고가 서면인터뷰를 진행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차이잉원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양자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특파원이 차이잉원과 민진당 소속 주임에 질의서를 보내 그가 보낸 답변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 기사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독자로서는 원고가 차이잉원과 당선 이후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이잉원 과거 발언이 단독 인터뷰로 둔갑”이란 표현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

판결문

사	건	2016가단507090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연합뉴스
피	고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 A 3. B
변	론	2016. 12. 21.
판	결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업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간신문 '미디어오늘'과 인터넷신문 '인터넷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을 발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A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이다.

나. 원고의 보도 및 그 경위

1) 2016. 1. 16. 실시된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대만의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이라 한다)의 주석이던 차이잉원(Tsai Ing wen)이 당선되었다. 한편, 원고의 홍콩특파원은 위 선거 전인

2016. 1. 14. 이메일로 민진당 신문부 소속 주임인 C에게 ‘연합뉴스의 차이 박사와의 인터뷰 질의(interview inquiry with Dr. Tsai of Yonhapnews)’라는 제목으로 서면질의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차이잉원이 당선되자 위 특파원은 2016. 1. 17. C에게 위 질의에 답변을 재촉하였고, 이에 C는 그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 2) 이후 원고는 위 답변을 바탕으로 2016. 1. 19.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차이잉원 “한국대만 여성지도자 탄생, 시대적 의의”」와 「[단독]〈인터뷰〉 차이잉원 “시간 날 땐 한류드라마 시청...김치 맛있어”」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기사(이하 ‘원고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원고 기사의 본문에는 ‘차이 당선인은 총통선거 승리 후 한국 매체 중 처음으로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뷰는 차이 당선인의 일정상 서면으로 진행됐다.’, ‘서면인터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3)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민진당은 민진당의 홈페이지와 민진당 출입 외신기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차이잉원이 원고와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이하 ‘1차 성명’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1차 성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연합뉴스는 19일 [단독]〈인터뷰〉 차이잉원 “시간 날 땐 한류드라마 시청 ... 김치 맛있어”라는 제하의 차이 주석기 기자의 7개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차이 당선인과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이라 밝히며 “총통 당선 후 한국 언론매체 중 처음으로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라고 기술했다. 이에 민진당은, 보도 내용은 차이 주석의 기존 발언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상 차이 주석은 당선 후 인터뷰를 가지지 않았다. 잘못된 인용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해 설명하는 바이다.

- 4) 그러나 민진당은 민진당 홈페이지에서 1차 성명을 삭제하고, 2016. 1. 21. 위 외신기자 단체 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글(이하 ‘2차 성명’이라 한다)을 올렸다.

어제(1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단독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확인 조사한 결과 연합뉴스 기자의 차이 주석 인터뷰 질의에 응해 차이 주석과 연관된 답화 내용을 서면 정리 방식으로 답했는데 양측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국내외 매체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설명합니다.

다. 피고 회사의 보도

- 1) 이후 피고 회사는 2016. 1. 21. 09:00경 ‘인터넷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제목을 「차이잉원 과거 발언이 단독 인터뷰로 둔갑», 부제목을 「민진당 “과거 발언 중 질문과 연관된 부분 정리”...연합뉴스 “신문부 주임 통해 서면 인터뷰”」로 하여 피고 A가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2) 또한, 피고 회사는 2016. 1. 27. 주간신문에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기사와 거의 같은 제목과 부제목으로 피고 A가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지면기사’라 하고, 이 기사와

- 위 인터넷 기사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3) 이 사건 각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차이잉원 과거 발언이 단독 인터뷰로 둔갑

민진당 “과거 발언 중 질문과 연관된 부분 정리”… 연합뉴스 “민진당 신문부 주임 통해 서면 인터뷰”(이하 ‘제목 부분’이라 한다)

연합뉴스가 19일 단독을 달고 내보낸 차이잉원 인터뷰 기사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이하 ‘①부분’이라 한다). 차기 총통으로 당선된 차이잉원 주석이 이끄는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이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성명을 삭제하고, 21일 다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이하 ‘②부분’이라 한다).

민진당에 따르면, 연합뉴스의 차이 주석 인터뷰는 그의 과거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독자들은 차이 주석이 당선 직후 실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이하 ‘③부분’이라 한다).

민진당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어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에 대해 “민진당은 차이 주석의 과거 발언(답화) 가운데, 연합뉴스가 제출한 사전 질문과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연합뉴스에) 보낸 것”이라며 “연합뉴스와 민진당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 내외신들의 오인을 피하기 위해 다시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하 ‘④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 B는 이 사건 각 기사에 다음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차이잉원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미디어오늘은 피고 A, B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목 부분에서 「차이잉원 과거 발언이 단독 인터뷰로 둔갑」이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실제 서면 인터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서 ‘둔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적시하였고,
- ③부분에서 「한국 독자들은 차이 주석이 당선 직후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 언론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서술하여, 원고가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이 사건 원고 기사들을 작성하였다고 적시하였으며,

- ④부분에서 「민진당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어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에 대해 “민진당은 차이 주석의 과거 발언(담화) 가운데, 연합뉴스가 제출한 사전 질문과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연합뉴스)에 보낸 것”이라며」라고만 서술하여, 의도적으로 2차 성명 내용 중 핵심인 ‘연합뉴스 기자의 차이 주석 인터뷰 질의에 응해’라는 표현을 누락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차이영원의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인터뷰 기사들을 작성했다는 암시를 주었다.

3. 판 단

가. 전제 법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나. 사실 적시 여부

-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 2) 이 사건 각 기사는 ‘단독으로 보도된 원고 기사는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와 그 당선 이후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신문부의 주임이 차이잉원의 당선 전 과거 발언을 정리하여 보낸 답변을 근거로 원고 기사가 작성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민진당은 차이잉원 당선자가 원고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공식 성명을 내었다가 차이잉원 당선자의 과거 발언 가운데 사전 질문과 연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보도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기사 중 본문 중 일부 표현, 예를 들면 ③부분 ‘한국 독자들은 차이 주석이 당선 직후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에서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을 따로 떼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특파원은 차이잉원과 직접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민진당 소속 주임에 질의서를 보내 그가 보낸 답변을 토대로 원고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답변은 차이잉원의 과거 발언을 편집한 내용인 점, ② 실제 민진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형식의 질의답변을 두고 차이잉원 당선자와 인터뷰를 새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차이잉원이 총통 당선 이후 새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직자가 차이잉원의 과거 발언을 정리하여 보낸 것이라고 해명을 한 점, ③ 원고 기사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기사를 본 독자로서는 실제로 차이잉원 당선자와 당선 이후 서면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목 부분의 “차이잉원 과거 발언이 단독 인터뷰로 둔갑”이라는 표현은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차이잉원은 당선 이후에 원고 측과 실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진당 신문부 주임이 차이잉원의 과거 발언을 정리하여 원고의 질의서에 답변하였다)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어떠한 암시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차이잉원 측과 서면인터뷰조차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

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에게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은 아니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원고의 기사 생략

〈별지〉 대상기사 생략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34562 판결(확정)

언론사가 형사사건 신고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암시에 의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문화일보 외 2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4년 2월 24일자 <동아일보>, 같은 해 2월 26일자 <세계일보>, 같은 해 2014년 3월 14일자 <문화일보>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원고의 간첩 혐의에 관해 각자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동아일보에 한해서만 이 사건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게재를 명했으며 1,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088). 이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각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각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을 인용한 경우 언론사 면책에 대한 판단
피고 동아일보는 제1심 형사판결로 원고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칭한 최초 신고자 B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보도했다. 원고의 형사사건은 국가안보에 관한 공적인 영역에 속하나 소위 인용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언론중재법 등이 정하는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도의 진위 여부에 관한 적절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6나2034562 정정보도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문화일보 2. 주식회사 세계일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4가합54808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 주식회사 세계일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사건 판결 후 최초 발행하는 문화일보의 종합A1면에 별지3-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활자는 별지2-2 기재 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굵기, 크기로, 본문 활자는 위 대상기사와 동일한 굵기, 크기의 활자체로 게재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이 사건 판결 후 최초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종합A1면에 별지3-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활자는 별지2-3 기재 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굵기, 크기로, 본문 활자는 위 대상기사와 동일한 굵기, 크기의 활자체로 게재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이 사건 판결 후 최초 발행하는 세계일보의 종합A1면에 별지3-4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활자는 별지2-4 기재 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굵기, 크기로, 본문 활자는 위 대상기사와 동일한 굵기, 크기의 활자체로 게재하라.
2. 피고들이 위 제1항의 게재기간 안에 위 제1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한 판결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 주식회사 세계일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중 위 피고들 부분(단 “25,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문화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문화일보는 피고 문화일보의 제1·2대상기사¹³⁾(이하 본 항에서는 ‘제1·2대상기사’라고만 한다)에서 ① ‘원고는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18명 및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26명의 탈북자 신원정보가 담긴 명단을 별도 파일로 관리하였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를 하였고,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여 ② 원고가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까지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2) 적시된 사실 및 그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①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문화일보는 제1대상기사에서 그 제목, 1단락 1~2행, 2단락 3~4행과 같은 기술에

13) 2014. 3. 14.자 문화일보 1면에 게재된 제1대상기사는 같은 신문 3면에 게재된 제2대상기사의 요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의하여, 제2대상기사에서 그 제목, 2단락 2행, 4~6행과 같은 기술에 의하여 ① 부분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2)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학교 통일한마당 회원 명부, ☆☆☆ 명단, 2009 UN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 고문, 여성, 아동 증언내용 표, ○○○○ 장학금 신청서 사본, ○○○○ 장학금 신청자 명단, 2012. 2. ○○○○ 준정회원 명단, 통일미래를 준비하며 잘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 명단, 북한이탈주민(수급자) 상담 카드, 대한민국교육개발원 추천 명단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상당수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만 제1심 및 항소심 형사판결 모두 위 정보가 기재된 명단 등의 소지만으로 원고가 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할 목적으로 탐자수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간첩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상당수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된 여러 문건 등을 소지 내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제1·2대상기사는 ‘원고가 탈북자의 신원정보를 별도 파일로 보관’하였다거나 ‘별도 관리’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된 여러 문건 등을 소지 내지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설령 이를 별도로 파일로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특별히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은 사소한 오류 내지 다소간의 과장 및 수사적 표현이 개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당해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②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② 부분과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상당수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된 여러 문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제1대상기사는 공안당국 관계자의 ‘원고가 탈북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언급(3단락)을, 제2대상기사는 ‘검찰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탈북자 단체에 접근했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했다’(2단락 7~8행)는 문구와 공안당국 관계자의 ‘원고가 위 정보를 별도로 분류해 장기간 보유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3단락 3~4행)는 언급을 게재하였으나, 위 부분은 모두 원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이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러한 내용이 더하여진다고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수집하였고 나아가 실제로 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하였다는 사실까지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제2대상기사는 ‘원고가 1심 재판에서 간첩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받았다’(1단락 3행)는 제1심 형사판결의 내용과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탈북자 정보와 관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속해 있던 모임의 회원 명단일 뿐이고 남한과 북한 사람 이름이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3단락 4~6행)는 원고 측의 반박이나 해명도 같이 언급하였는바, 제1·2대상기사가 원고가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문화일보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제1·2대상기사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원고의 간첩 혐의에 관한 것으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탈북자 신원정보가 담긴 명단을 별도 파일로 관리하였다'는 부분은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동아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동아일보는 피고 동아일보의 제1대상기사에서 ④ 원고가 '간첩'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암시에 의하여 적시하였는바, 위 사실 적시는 모두 허위로서 이러한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¹⁴⁾

2) 제1대상기사(④ 부분)의 적시된 사실 및 그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동아일보는 제1대상기사에서 원고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암시에 의하여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제1대상기사는 원고 형사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B씨에게 그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할 지면을 제공한 것일 뿐 피고 동아일보가 A씨가 언급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 동아일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씨의 언급에는 '간첩 노릇'(1단락 1행), '간첩행위'(3단락 1행 및 2행15)) 등 '간첩'이라는 용어나 '보위부'(7단락 1행, 8단락 1행, 2행), '탈북자 위장'(5단락 2행, 7단락 2행, 3행)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단락 사이에 소제목으로 「위조 논란, '간첩행위' 사건 본질 흐려」, 「A씨 아버지 '아들이 보위부 활동 중」이 추가되어 있으며, 마지막 단락에서 '북한에서 들은 대로 제보했고 국가정보원이 정확히 체포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냐'라는 B씨의 발언으로 마무리하는 등 제1대상기사는 원고가 간첩이라고 거의 확실하는 내용의 B씨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가 B씨에게 아들이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아들처럼 탈북자로 위장해'¹⁶⁾ 남한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다'(7단락 1~2행), '원고의 여동생도 오빠가 탈북

14) 제1심에서 제1대상기사에서 ① (B씨의 언급과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용하여) '원고는 QQ메신저로 여동생 C를 통하여 탈북자 명단을 북한 보위부에 전달하였다', ② '수사과정에서 탈북자 명단이 전달된 시점에 여동생과 메신저로 화상통화를 한 사진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제2대상기사에서 ③ '원고가 이름을 자주 바꾸고 위조 신분증으로 신분세탁을 하여 중국과 북한을 오갔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제1·2대상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여 ④ 원고가 '간첩'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암시에 의하여 적시하였는바, 위 사실 적시는 모두 허위로서 이러한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의 청구 중 ④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배척되었는데 피고 동아일보만이 ④ 부분 패소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15) 3단락 2행에는 괄호와 함께 '(간첩행위)'라고 표기되어 있어 피고 동아일보 측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로 위장해 서울의 큰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다'(7단락 3행)는 B씨의 언급과 함께 '원고의 아버지가 보위부 사람들을 몰래 만났다고 공안당국에서 진술했다'(8단락 2~3행)는 문구를 더하여, 마치 원고의 가족들도 원고가 탈북자를 위장한 북한 보위부 소속임을 인정했다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 또한, '보위부 소속 지도원이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신분증을 위조한 뒤 남한으로 보내 원고가 위기를 모면했다'(8단락 1~2행), '원고의 아버지가 보위부 사람들을 몰래 만났고 정체 모를 돈봉치를 수시로 마련해 사용한 정황도 검찰과 공안당국에서 진술했다'(8단락 2~3행)는 B씨의 발언 역시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북한 보위부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원고의 활동이 나쁜 짓이고 대한민국에 해가된다'는 B씨의 의견을 인용하면서도 '북한에서 원고를 직접 듣고 보았다'(6단락 1행)는 B씨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어 원고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이 목격된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라) 한편 일반 독자로서는 40대 탈북 여성으로 원고 가족과 동거하였고 원고 형사사건의 최초 신고자로 소개된 B씨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와 아울러 원고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경험·지득한 듯한 B씨의 발언이 가지는 객관적 인상에 경도되기 쉽다고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간접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④ 부분의 사실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제1대상기사 중 ④ 부분과 같이 원고가 간첩이라는 취지의 사실이 암시에 의하여 적시되었고 위 사실이 허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허위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제1대상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동아일보에 대하여 제1대상기사의 위 허위 사실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대상기사 중 ④ 부분의 허위 내용과 아울러 제1대상기사의 분량,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3-3의 정정보도문을 별지1-2의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제1대상기사가 게재된 면수와 동일한 동아일보 A12면에 게재하도록 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동아일보는 제1대상기사에서 ④ 부분과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16) 마찬가지로 괄호와 함께 "(위장해)"라고 표기되어 있어 피고 동아일보 측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되도록 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동아일보는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동아일보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동아일보는, 원고 형사사건은 중대한 공적 사안으로서 증거위조 사건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최초 신고자인 B씨의 주장을 보도한 것이고 국정원 관계자 등을 두루 취재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신뢰성의 검증을 마쳤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형사사건은 국가안보에 관한 공적인 영역에 속하고 다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위 인용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언론중재법 등이 정하는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도의 진위 여부에 관한 적절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는 점, 제1심 형사판결로 간첩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로 원고를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칭하거나 간첩행위(간첩 노릇)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B씨의 발언 등을 그대로 보도한 점, B씨의 발언의 내용 자체도 제1심 및 항소심 형사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등 허위이거나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 점, 제1심 형사판결은 B씨로 보이는 증인 김○○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형사판결은 위 증인의 증언으로 원고가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위 증인은 ‘보위부 일’을 원고의 아버지가 관여한 대북 송금사업을 북한 보위부가 뒷돈을 받고 묵인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던 점, 설사 제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간첩임을 입증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원고가 간첩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진실규명을 촉구하거나 관련 의혹이 제기된다는 수준의 보도를 뛰어넘어 전적으로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이 배척된 B씨의 발언에만 의존하여 단정적인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 동아일보가 B씨의 언급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조사하였거나 적어도 위 언급을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동아일보가 B씨의 언급에 관한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을다 제2, 3호증을 보더라도 B씨나 B씨의 발언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다 제2호증은 원고 형사사건의 개요, 수사 착수배경, C씨의 진술의 신빙성, 증거위조 사건의 사실관계, 특정

언론사의 방송 관련 반박자료에 관한 것이고, 을다 제3호증은 원고의 신분세탁에 관한 것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B씨의 발언은 물론 원고가 간첩이라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동아일보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보듯 제1심 형사판결로 간첩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로 원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B씨의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고 나아가 원고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제1대상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비롯하여 제1대상기사의 내용, 표현 방식, 제1대상기사에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되, 한편 제1대상기사에 사실을 직접 기술하지는 않고 인용보도의 방식으로 보도한 점, 당시 원고 형사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고 간첩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무죄 판결 선고 및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비판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원고의 명예 회복이 다소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을다4호증)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 세계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세계일보는 피고 세계일보의 제1·2대상기사(이하 본 항에서는 ‘제1·2대상기사’라고만 한다) 중 제1대상기사에서 ① ‘원고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200명의 신상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공작원이다’, ② ‘원고는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근무하며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제2대상기사에서 ③ ‘원고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름과 생일, 국적 등을 바꿔 사용했다’, ④ ‘원고는 최소 4개국 공문서를 위조 또는 도용했다’, ⑤ ‘원고를 간첩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2) 제1대상기사(①, 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적시된 사실 및 그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대상기사는 그 내용이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비롯하여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 사실, 원고가 간첩 공소사실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등의 기소 사실, 수사결과에 관한 수사기관의 발표 자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세계일보가 언론사 자신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원고가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거나 간첩활동을 하였

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나아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 자체는, 앞서 보듯 원고가 2013. 1. 10.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체포·구속되고 2013. 2. 26.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며 그 무렵 수사기관의 발표 등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제2대상기사(③, ④, 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적시된 사실 및 그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③, ④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세계일보는 제2대상기사 중 첫 번째 소제목에서 “A씨의 4개 이름…어떤 게 진짜일까”라고, 9단락 3~4행에서 “원고의 확인된 이름은 현재 모두 4개다”라고, 10단락 1~2행에서 “원고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써 ‘신분 세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생일도 반복한 전력이 있다”라고 각각 기술함으로써, ③ 부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단락 1~2행에서 “그간의 상황을 종합할 때 원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소 4개국 공문서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기술하였는바, 이로써 ④ 부분과 같이 단정적으로 4개국 공문서를 위조 또는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보면, 제2대상기사에서 원고는 본명이 D인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이지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 당시 밝혔던 탈북자가 아니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국에서는 E라는 이름까지 사용하였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정황을 나열한 다음 그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④ 부분 내용과 같이 의심된다는 의견 내지 위 내용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부분 기술에 의하여 단정적으로 ④ 부분과 같이 4개국 공문서를 위조 또는 도용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보건대, 제2대상기사가 나열한 사실관계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사용한 다수의 이름, 원고의 국적 상황, 출생일 반복, 원고가 사용·제시한 여러 공문서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일부에 ‘신분 세탁’이라는 수사적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제1심 및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단에 비추어 ③ 부분의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상황을 종합할 때 4개국 공문서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실 또한, 위와 같은 의심의 전제가 된 앞서 본 정황 사실, 즉 원고가 4가지 이름을 사용한 점, 원고는 중국 국적의 화교인 점, 출생일이 반복된 점(주민등록번호의 정정과 관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이 위조된 점, 원고

가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원고가 영국에서 난민신청한 점 등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한편 이 부분은 위 정황 사실을 압축하여 강조하거나 다소 수사적인 과장을 더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바, 제2대상기사가 전달하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⑤ 부분에 관한 판단

제2대상기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사실과 아울러 전체적인 취지에서 ⑤ 부분과 같이 원고를 간첩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적시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하였는지 본다.

올다 제2, 3호증, 올라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대상기사는 중간 부분에서 “간첩 의심 않는게 오히려 더 이상”이라는 소제목을 제시하였는데, 위 소제목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를 의심치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16단락 2행)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언급을 압축한 것으로 이는 위 관계자의 원고 형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제2대상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원고의 이름, 국적, 출생일 반복, 신분증 위조 등에 관한 의혹이나 이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의심을 가졌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 형사사건의 실체를 다시 살펴보자는 의견이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려는 취지인 점, 나아가 제2대상기사는 피고 세계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들이 제1심 형사판결에 의한 무죄 선고 등 원고 형사사건의 재판 경과와 아울러 다양한 쟁점에 관한 여러 내용의 보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제2대상기사 자체로도 제1심 형사판결로 간첩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증거위조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원고의 이른바 ‘신분세탁’ 측면에서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시각이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2대상기사는 위 소제목을 포함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신분세탁’의 측면에서 의심할 만한 기초가 존재한다는 정황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실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서 원고가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4) 피고 세계일보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제1·2대상기사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원고의 간첩 혐의에 관한 것으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름과 생일, 국적 등을 바꿔 사용했다’, ‘원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소 4개국 공문서를 위조 또는 도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즉 혐의사실)’은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아일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문화일보, 세계일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동아일보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2~2-4〉 대상기사 생략

〈별지3-2~3-4〉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497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3581 판결(확정)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언론보도의 불법성에 대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사실관계]

피고는 2008년 9월 16일자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에서 「찐빵 파는 소녀」라는 부제 하에 '강원도 △△의 한 휴게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감금한 채 찐빵을 팔게 했으며, 피고 제작진이 휴게소 주인을 고발해 구속시키고 소녀를 완치시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했다. 이에 사설탐정인 원고 A는 휴게소 주인 쪽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조사했고 이후 이 사건 방송이 악의적으로 조작됐다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피고 제작진은 '원고가 일체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탐정을 자칭하면서 방송의 조작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시청자게시판에 게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게시글의 허위사실 적시 및 악의적 의도 등을 인정해 7,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중 원고를 폄하하는 사실적시나 표현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4,000만 원으로 재산정했다. 이후 양자의 상고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피고의 게시글 게재 행위가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에 대해 순수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원고를 치켜세우면서 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피고 스스로 원고의 조사 활동을 '불법탐정' '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방하며 원고의 품성과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게시글 자체의 진위 여부에 앞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여부가 선결적으로 먼저 밝혀져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피해자인 휴게소 부부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6가단4970	위자료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 25.
			2017.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I. 사건의 진행경과

아래 사실은 따로 적시하는 각 거시증거 외에, 갑 4호증과 다툼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일명 '찐빵소녀 사건'의 시작

- 부부인 B, C는 강원 △△군 △면 △△△리 44번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칭한다)를 운영하였다.
- B 부부는 2004. 5. 8.경부터 이 사건 휴게소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D를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고용한 후, D로 하여금 위 휴게소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 허드렛일과 잔심부름을 시켰다.

- 위 국도 건너편에 D의 이모할머니인 F의 집이 있고, D의 친할머니인 G와 아버지 H가 거주하는 집은 위 휴게소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다. D는 집에서 이 사건 휴게소로 출퇴근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인 2007. 5.경부터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보았다.
- 그러던 중, B는 2007. 8. 하순경 이 사건 휴게소 화장실에서 찜빵 등을 훔쳐 먹고 있던 D를 발견하자, 화가 나 D에게 찬물을 뿌렸다. D는 위 절도 사건으로 B 부부에게 600만 원(3년 동안 하루에 5,000원씩 훔친 것으로 계산)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G, F, H는 이 사건 휴게소로 찾아왔고 D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 후에도, D의 찜빵절도 사건은 계속 일어나 적발 때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급기야 B는 G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D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부탁하였다.
- D는 2008. 3.경(또는 2008. 4.경) 새벽에 이 사건 휴게소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날이 밝은 뒤 집으로 찾아온 C와 함께 위 휴게소로 되돌아왔다.

2. D에 관한 경찰 신고와 처리내역

그동안 D에 관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여러 건 신고·접수된 사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 4. 27. 신고 -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D)이 얼굴에 상처를 크게 입는 등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휴게소에 출동하여 D를 B 부부와 분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D는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말하는 등 폭행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D의 할머니 G도 “B 부부의 학대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D에 대한 조사는 종결되었다.
- 2008. 6. 1. 신고 - “지적장애인이 찜빵을 팔고 있는데 앵벌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보호자인 G가 이미 알고 있는 사안으로서 ‘특이사항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 2008. 6. 22. 신고 - “이 사건 휴게소에서 상한 찜빵을 판매하고 있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신고(이하 ‘관광객 사건’이라 칭한다)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찜빵이 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고자가 민사문제로 처리하겠다고 답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3. 이 사건 방송의 취재 계기

- 피고는 2005. 11. 1.부터 2011. 4. 15.까지 매주 1회 ‘긴급출동 SOS 24’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칭한다)을 제작·방영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I, J, K, L, M, N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피고 소속 PD들(이하 ‘피고 제작진’이라 칭한다)이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보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결책 제시 및 사후 관리’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보도·고발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은, 피고가 제보를 받아 프로그램 소재를 확보한 후 초벌 조사와 취재를 통하여 제보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심층 취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솔루션 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진행한 다음 이를 방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피고 제작진은 아래와 같은 4건의 제보를 바탕으로 'D'를 취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일 시	제보자	제 보 내 용
2008. 1. 2.	권 ○	2008. 1. 1. 이 사건 휴게소에서 밥을 먹던 중 찐빵 파는 20대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는 휴게소 주인의 눈치를 보는 듯 했고, 정신은 정상인 듯 하지만 얼굴에 맞아서 생긴 것 같은 멍이 들어 있음
2008. 5. 3.	최○표	이 사건 휴게소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20대 여자가 있는데, 눈에 멍이 있고 얼굴이나 몸에 늘 상처가 있으며 누구에게 맞는 것 같음
2008. 6. 22.	신연○	이 사건 휴게소에 찐빵 파는 10대 소녀가 있는데, 행동이나 말이 이상하고 얼굴이 멍투성이임
2008. 6. 25.	김○욱	이 사건 휴게소에 찐빵과 감자를 파는 여자가 있는데, 얼굴의 반 이상이 멍이 들어있음

○ 이에 따라, 피고 제작진은 2008. 6. 25.부터 2008. 7. 1.까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다음, 아래와 같이 D와 휴게소를 몰래 촬영하였다.

- 2008. 6. 25. :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D에게 얼굴에 난 상처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눈은 왜 그래요?”라는 질문에 D는 “눈이요, 넘어져 눈가가 다쳤는데, 피가 눈알로 들어가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 그런 거예요”라고 말하였고, “여기 멍든 건?”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에 술 취한 손님들이 오셔서 찐빵이 쉬었다고 시비 걸고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 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
- 2008. 6. 26.부터 2008. 7. 1.까지 :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휴게소 길 건너편에 취재차량을 주차하고 원거리에서 휴게소 1층 내부를 몰래 촬영하였고, 2008. 7. 1. 취재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B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Z1, Z2로부터 신분제시를 요구받자, 피고 제작진은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는 한편, “B 부부에게 파출소에 가서 촬영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말하면서 순찰차량을 따라 □□파출소로 향하던 중 서울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4. 장애우권익단체의 관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 팀장과 피고 제작진인 K는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D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B 부부에게 발각되었다. K는 B 부부로부터 “그동안 이 사건 휴게소 바깥에서 몰래 촬영한 사람이 아니냐”고 추궁받자 이를 부인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 후, ○와 K는 B 부부 및 D의 동의를 받아 B 부부와 인터뷰를 갖고 D와도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를 촬영하였다.

○ 당시 B 부부와 D가 O, K에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B 부부

- ▶ 관광객 사건: D는 관광객 사건 당시 누군가로부터 맞았다.
- ▶ D의 몸에 난 상처: D의 눈이 충혈된 것은 D로부터 ‘넘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들었고, 목에 난 상처는 D가 자해를 한 것이며, 나머지 상처는 찢빵을 팔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
- ▶ D가 생활하는 공간: B 부부는 K, O를 이 사건 휴게소 2층으로 안내하면서 “D는 휴게소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은 휴게소 1층을 사용하며, 화장실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D의 옷은 1층에 둔다.”라고 설명하였다.

■ D

- ▶ 멍이나 상처는 B 부부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목 부분의 흉터’는 자해로 생긴 상처이고 ‘눈 상처’는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며,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관광객 사건 당시 자신이 판 찢빵이 쉬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다. B 부부가 얼굴 멍 때문에 약을 사다준 사실도 있고,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다.

○ K는 2008. 7. 3. B 부부와 D 모르게 D의 옷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 녹음기로 B 부부와 D 사이의 대화를 녹음까지 하였다.

○ O는 같은 날 피고 제작진에게 “2008. 7. 3. D를 면담한 결과 D가 B 부부의 폭행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D가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피고 제작진의 취재 내용

2008. 7. 3.부터 2008. 7. 14.까지 피고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따로 주어의 표시가 없는 부분은 모두 피고 제작진의 행위이다).

- 2008. 7. 3. - D의 할머니 G를 전화통화로 취재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장애인인권단체라고 소개하였다.
- 2008. 7. 4. - □□피출소를 방문하여 관광객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Z1과 관광객 사건에 관하여 인터뷰를 가졌다. Z1은 D에 대하여 설명하던 중 “이 사건 휴게소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냐?”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폭행이 있었다면 사건 처리를 했을 것인데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2008. 7. 7. - 고등학교 3년간 D의 담임선생님이었던 P를 전화통화로 취재하고 같은 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 취재하였으며, 교감선생님을 통하여 D의 생활기록부까지 열람하였다. 당시 P가 ‘여선생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2008. 7. 8. - I를 포함한 피고 제작진과 변호사 Q, 사회복지사 R,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아나운서 S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B 부부를 취재하고 D와 면담하면서, B 부부와 D를 촬영하였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촬영 당시 B 부부와 D가 취재 및 촬영을 거절하면서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촬영하였다.
 - ▶ B 부부와 D는 피고 제작진으로부터 'D의 몸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거듭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2008. 7. 3. O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O에게 확인해 보라."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계속 대답을 중용하였다. 이에, 동석했던 경찰관이 피고 제작진에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인터뷰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촬영과 취재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 ▶ 당시 B 부부와 D는 피고 제작진에게 'D의 몸과 얼굴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상처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으나, 피고 제작진은 B 부부와 D에게 부위별 상처의 발생원인이 아닌 전체 상처의 발생원인이 'D의 자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만에 집중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며 "D가 자해를 하는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거듭 질문하였다.
 - ▶ 나아가, 피고 제작진은 B 부부에게 "B 부부와 D는 관광객 사건 당시 '누군가 D를 때렸다'고 말하였으나, 피고 제작진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폭행 사건은 없었다'고 한다. B 부부는 2008. 7. 3. O에게 'D의 얼굴에 난 상처가 관광객 사건 당시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였다. 이에, C는 "자신이 O에게 말한 내용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당시 D가 맞은 것은 사실이며, 이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경미한 폭행이고 D의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고, 옆에 있던 D는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 전부가 관광객에게 맞아서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 2008. 7. 9. - 범피심리학 교수인 T로부터 D의 몸에 난 상처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
- 2008. 7. 10. - △△경찰서 강력팀은 2008. 7. 8.자 동행수사와 관련하여 "D가 지적장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B 부부가 D의 퇴직을 중용하였으나 D가 거부하였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2008. 7. 14. - 피고 제작진은 △△경찰서 강력팀을 방문하여 "D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고,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취재과정에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6. D의 정신병원 입원과과정

- O는 B로부터 "D를 전문기관에 데려가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2008. 7. 15. B와 함께 D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던 중, D는 피고 제작진인 L을 보자 L에게 "나는 도움을 원치 않는다. 나는 맞은 것도 아니고 장애도 없다. 왜 장애인이라고 하냐."고 따지면서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고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거절하였다.

○ 피고 제작진은 2008. 7. 29. D를 정신병원인 국립××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먼저, 피고 제작진은 국립××병원을 섭외한 후, 2008. 7. 29. D의 언니 U와 형부 V를 찾아가 U와 V에게 D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 주면서 “B 부부와 D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B 부부가 D에게 답변 연습을 시키고 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D는 B 부부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며, 범죄심리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니 ‘D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생각한 바로는 D를 B 부부로부터 격리시키면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 같다. 피고 제작진이 병원을 섭외해 놓았으니 입원 동의를 해달라.”고 말하여 U의 동의를 받았고, 따로 D의 할머니 G와 아버지 H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 ▶ 그 후, 피고 제작진은 U, V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과 129구급대원에게 “U가 동의하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D를 B 부부로부터 데려와 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B 부부나 D에게는 방송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D가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입원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129구급대원은 “피고 제작진이 요구하는 사항은 90년대식처럼 그냥 잡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납치식이다.”라고 말하였다.
- ▶ 결국 D는 2008. 7. 29. 위 129구급대원에 의하여 국립××병원에 입원하였다. D가 입원한 이후에는 U와 V만이 면회가 가능하였고, G와 H는 면회할 수 없었다. 한편, 위 병원에서는 D를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진단하였을 뿐, 정신장애인으로 진단하지는 않았다.

○ 피고 제작진은 D의 정신병원 입원 직후인 2008. 8. 4. S 아나운서의 주재로 Q 변호사, R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로서 국립××병원 의사인 W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솔루션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7. D의 진술변복과 수사개시

○ D는 국립××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자신은 학대당하지 않았고 얼굴의 멍은 손님이 폭행하여 생긴 것이며, 다른 상처는 찢빵이 잘 팔리지 않아 자해하여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2008. 8. 21.경 국립××병원 의사 W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B 부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이후 위 편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 피고 제작진은 2008. 9. 3. ××정신병원에서 D의 변경된 진술내용에 대하여 취재하였다.

○ 피고 제작진은 2008. 9. 7. D를 정신병원에서 외출시킨 다음, U, V와 함께 ‘남이섬에서 D가 U, V와 닭갈비를 먹는 장면’, ‘D가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화장하는 장면’ 등 이후 방송에서 방영될 장면을 촬영하였다.

○ 피고 제작진은 2008. 9. 8. 경찰에 D와 B 부부를 계속 취재하여 2008. 9. 16.과 2008. 9. 23.에 1, 2부 방송을 내보낼 예정임을 밝혔다.

○ D는 2008. 9. 9. 강원지방경찰청에 “① B가 2007. 4.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방용 칼이나 손가락

등으로 자신의 가슴과 머리를 찌르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② C가 2007. 10.경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③ B 부부가 2007. 8. 중순경 자신을 협박하여 600만 원짜리 변제각서를 작성받는 등 공책 한 권 가량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B가 주방에 있는 식칼로 자신의 목과 오른쪽 가슴, 위 팔을 1회씩 찔렀다.”는 D의 진술에 따라, 2008. 9. 11. 이 사건 휴게소를 압수수색하여 팔 부분이 훼손된 재킷과 식칼을 압수하였고, 피고 제작진은 이 과정을 촬영하였다.

8. 이 사건 방송의 진행

- 이 사건 1부 방송: 피고는 2008. 9. 16. “찐빵 파는 소녀 1부(이하 ‘1부 방송’이라 칭한다)”라는 부제로 약 30분 동안 ‘D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B 부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어 구제조치를 취하였다. D의 몸에 난 상처는 B 부부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하였다.
- 1부 방송 이후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 ▶ 2008. 9. 17. - 경찰에서 B 부부는 피의자신문을, 그들의 딸인 B1은 D와 피의자대질신문을 각 받았고, 피고 제작진은 위 조사과정도 촬영하였다.
- ▶ 2008. 9. 24. -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B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린 적이 있다.”는 D의 진술에 따라 혈흔을 채취하기 위해 위 휴게소를 현장 검증하였고, D와 피고 제작진도 위 현장에 입회하였으며, 피고 제작진은 위 검증 장면을 촬영하였다.
- ▶ 2008. 9. 25. C가, 2008. 9. 29. B가 경찰에서 D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 이 사건 2부 방송: 피고는 2008. 9. 30. 1부 방송을 30초 분량으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하는 예고방송을 내보낸 후, “찐빵 파는 소녀 2부(이하 ‘2부 방송’이라 칭한다)”라는 부제로 약 40분 동안 ‘B 부부가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병원입원 후 D의 진술 변경, 경찰의 수사과정’을 담은 방송을 진행하였다.
- 2부 방송 이후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 ▶ B의 구속: B는 2008. 10. 7. ‘D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피고 제작진은 B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 ▶ 국과수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칭한다)는 2008. 10. 9. 강원지방경찰청에 2008. 9. 11.자 압수물(재킷, 식칼)에 관하여 “① 재킷의 훼손된 부위가 식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상이나 일반적인 칼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칼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논단하기 어렵고, ② D의 우측 위팔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위팔 훼손된 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 시점에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③ D의 목 아래 부분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가슴부분의 훼손된 부위와는 위치가 서로 상이하고, ④ 재킷과 식칼의 혈흔반응은 음성”이라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 이 사건 3부 방송: 피고는 2008. 10. 14. 1, 2부 방송을 30초 분량으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하는 예고방송을 내보낸 후, “찐빵 파는 소녀 3부(이하 ‘3부 방송’이라 칭하고, 1, 2, 3부 방송 및 위 각 예고방송을 합하여 모두 ‘이 사건 방송’이라 칭한다)”라는 부제로 약 15분 동안 ‘B의 구속과정, B의 구속 이후 D의 자유로워진 모습’ 등을 담은 방송을 진행하였다.
-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보도내용은 “강원도 △△의 한 국도휴게소에서 다소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4년간 감금한 채 임금도 주지 않고 막일을 시키며 찐빵을 팔게 한 뒤, 찐빵을 못 팔면 칼과 흉기로 소녀의 가슴, 팔 등 온몸을 찢러 상해를 입혔다. 휴게소 여주인은 찐빵소녀의 온몸을 칼로 찌른 것도 모자라, 외부 사람들이 찐빵소녀에게 몸에 있는 상처를 물으면 ‘자해했다’라고 대답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찐빵소녀의 온몸에 있는 상처를 TV화면을 통해 내보냈다. 얼마나 악독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찐빵소녀는 주인집 부부에게 세뇌되어 방송제작진의 취재 초기에는 ‘자해했다’라고 말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후에야 ‘주인 아줌마가 칼로 찢렸다’며 가슴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 제작진은 휴게소 주인을 고발하여 구속시키고, 소녀를 완치시켜 평온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원고의 개입과 사건 조사

- 원고는 2006년경부터 자신의 이름이 상호에 포함된 ‘형사문제연구소’라는 사설 사무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갑 5-2, 을 2].
- 피고는 2008. 10. 4.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를 ‘탐정’으로 소개하면서 “목포에서 술에 취한 친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원고가 사건조사를 의뢰받고 진범을 밝혀낸 사연을 포함하여, 원고가 그동안 30여 건의 사건을 해결한 내용”을 방영하여 원고를 극찬하였다[갑 20].
- B가 위와 같이 2008. 10. 7.자로 구속되자, 위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였던 C 등 가족들은 2008. 10. 12. 원고를 찾아와 “자신들은 이 사건 방송과는 달리 찐빵소녀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의 조사(특히, 실제적 진실을 밝혀줄 것)를 의뢰하였다[갑 5-2].
- 이를 승낙한 원고는 2008. 10. 12.경부터 2008. 11. 22.경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갑 5-2].
- 그 와중인 2008. 10. 29. 국과수는 강원지방경찰청에 2008. 9. 24.자 채취물(혈흔)이 ‘혈흔이 아니거나 혈흔이지만 인혈(사람의 피)이 아니다’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 원고는 2008. 11. 2.경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방송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담당 수사검사에게 전달하였으나[을 4], 2008. 11. 3.자 B의 구속기소를 막지는 못하였다. 기소된 범죄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등’이었다[을 9].
- 원고는 그 후,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방송이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여러 언론사에 보내고,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는

한편, 2008. 12. 12.자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을 4, 6). 그 외, 원고는 뒤에서 보는 B의 형사사건에도 위 연구보고서를 동일한 취지로 제출하였다.

○ 위 연구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1부 방송에서 '2008. 8. 4. 피고 제작진이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방소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구제조치를 제시'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명백히 조작한 것이다. 피고 제작진은 사전 취재과정을 통해 전방소녀의 몸에 난 상처의 발생경위를 이미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피고 제작진이 이미 저지러 놓은 결과에 따라 회의 내용을 결정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솔루션 회의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 제작진은 전방소녀가 정신병자인 것으로, 휴게소 부부는 학대와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 ▶ 2부 방송에서 보여준 전방소녀의 온몸 상해 사진도 조작되었을 정황이 많다.
- ▶ 피고 제작진은 당사자 몰래 도청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전방소녀 본인이 작성한 절도 관련 확인서도 왜곡하였다.
- ▶ 전방소녀는 4년 이상 '도벽'이 있다가 2007. 8. 24.에 처음으로 B에게 발각되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에도 전방소녀의 절도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이는 수개월 간의 통화기록, 전방소녀 및 그 할머니가 자필로 작성한 월급 영수증, 전방소녀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관련자 및 가족, 친구들의 진술, 그동안 빈번하게 빵이 사라졌던 일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다.
- ▶ 이 사건 방송에서는 전방소녀의 실제 주거환경도 왜곡되었다.
- ▶ 전방소녀 형부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전방소녀의 '젓은 외박' 사실을 알 수 있고, 전방소녀의 남자친구, 인근 야식집 주인에 의하면 전방소녀는 월급을 주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그 품행은 물론 이 사건 휴게소에서 4년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 전방소녀가 이 사건 방송에서 언급한 '□□가출' 역시, 사실은 2007. 4. 30.경 동네에서 빌린 돈으로 망신을 당한 후 집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쳐 □□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갔다가 트러블이 생기자, 주인 집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시 돌아온 것이다¹⁷⁾. 따라서 이 사건 휴게소에서 전방소녀를 '감금'하였다는 것 역시 조작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모두 전방소녀의 소설같은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도 놀란 연기력으로 허위로 재구성된 것이다.
- ▶ 피고 제작진은 2008. 7. 29. 전방소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이유를 밝히지 않는 등 그녀를 정신지체 장애자로 몰아가는 것 같다. 이 사건 방송내용에 의하면 전방소녀는 재학 당시에는 정상인이었으나 휴게소 가족의 폭력으로 지적장애자가 되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원고가 위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이 사건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평소 도벽과 거짓말이 능숙해 가족들도 외면했던 D를 SBS 방송이 머리가 모자라는 지적장애자인 것처럼 만들어 마치 세상물정을 모르는 지적장애자가 파렴치한 피고인에게 4년 간 임금착취와 같은 학대를 당한 것처럼 방송을 조작하여 시청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어냈고 높은 인기만큼 큰 동정심을 얻어 D의 그간의 도벽과 거짓은 극한상황에서 살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미화되어 용서되고 D의 도벽과 거짓말을 3년이나 속고 뒤늦게 알아 이를 고쳐주려 했던 피고인을 파렴치한 범인으로 만들어 구속시킨 사건인 것이다.

17) 이는 앞서 보았듯이 D가 2007. 5.경부터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하게 된 동기이다.

10. 원고에 대한 형사고발과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

- 피고 제작진은 원고의 기자회견 전날인 2008. 12. 11.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칭한다)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날 D와 함께 원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고발하였다[을 8]. 그리고 D는 그 다음날인 2008. 12. 12. 국립××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원고는 2008. 12. 12. 예정대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갑 5].
- 그러자, 피고 제작진은 2008. 12. 16.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시청자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였다[갑 2].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인공 부부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방송화면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지엽적이고 편협한 또는 근거없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위험한 속단에 빠져 이 사건 방송의 조작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 원고는 일체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탐정’을 자칭하면서 무리하게 조사를 벌이는 한편, D의 인적사항 노출 등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권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11. 형사사건 등의 진행경과

■ B에 대한 형사사건

-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2008고합103호)은 2009. 9. 18. B의 혐의 중 ‘D에 대한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이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B의 자백진술에 터 잡은 것이고, D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하지는 않았다), 상습상해, 상습흉기휴대상해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B는 재판 초기 6개월간 구속상태였다.
- 무죄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

(가) 상습상해

피고인(B, 이하 같다)은 2005. 여름경부터 2008.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생략)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D, 이하 같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2008. 7. 23.경까지 (범죄일람표 생략)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2008. 7. 9.경까지 (범죄일람표 생략)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상습으로 강요하였으며, C와 공동하여 2007. 8. 24. 의무 없이 “600만 원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에서 제하는 것을 기화로, 2008. 7. 29.까지 위 휴게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나) 상습흥기휴대상해

피고인은 2007. 7. 초경부터 2008. 6. 3.경까지 (범죄일람표 생략) 총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2008.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생략)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이유

이 사건의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다.

- ① 진술 내용 중 '2007. 4.경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재떨이로 머리를 맞아 눈이 붓고 까맣게 되어 오○○ 운영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다는 부분, □□ 가출건의 경위와 복귀과정 및 소개비 지급 부분, 고교 졸업 후 이 사건 휴게소에 계속 근무하게 된 배경 부분, 피고인이 칼 등을 이용하여 학대하여 주방, 복도, 창고 등에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는 부분' 등은 W, X, G, F의 각 법정진술과 이민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국과수의 혈흔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② 2008. 3. 또는 4.경 피해자가 폭행을 못 이겨 이 사건 휴게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그 무렵 피해자가 280만 원을 훔쳐 피고인 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었을 가능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③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파출소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휴게소 근처에 전경을 배치하였다는 부분, 방송 취재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 ④ 왼쪽 팔, 가슴, 정강이 등의 상처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⑤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거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 ⑥ 현금보관증 등 각종 확인서를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해 억지로 작성하였다는 진술은 작성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던 점, 대부분의 서면이 피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⑦ '피해자가 이 사건 휴게소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진술은 이 사건 휴게소의 위치, 개방성, 바로 인근에 이모할머니 F가 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⑧ 그 밖에, 피해자의 평소 언행, 생활 습관, 국립××병원의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 법정에 나타난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외,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이거나 폭행 등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2009노2611호)은 2010. 5. 14. 무죄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C에 대한 형사사건

이 사건 휴게소의 사업자등록자인 C는 D에 대한 고용주로 간주되어, ① 미성년자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노동부신고의무위반, ② 강제노동, ③ 근로시 폭력, ④ 월급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B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공소사실 중 ‘강제노동’, ‘근로시 폭력’ 부분을 삭제하였고, XX지방법원은 2011. 1. 13.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선고는 유예하였다.

■ B1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B의 딸인 B1은 2008. 11. 4. D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죄로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다가, B의 무죄판결 확정 이후인 2010. 8. 31.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다.

12. D의 형사처벌

- D는 2008. 9. 9.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부부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기소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0고단2539호)은 2011. 9. 23. “D가 고소 당시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 진술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 내용에 비추어 고소사실이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D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D의 항소이유서 부제출로 2011. 12. 28. 확정되었다.

13. 점점 드러나는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체

- B 가족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2010. 11. 10.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2315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주장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실제 취재내용과 정반대 또는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을 편집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B 가족이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D에 대하여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벌이고 앵벌이를 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 위 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내용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작출하거나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본래의 취재 내용을 오인하도록 편집하는 등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법원이 2012. 2. 23. 선고한 판결에 나타난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이는 ‘갑 4호증’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 부분이다).

- 이 법원은 위와 같이 드러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방송내용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을 방송한 것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1부 방송

- ▶ 제보 동영상 부분: K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마치 제3자의 믿을 만한 동영상 제보인 양 둔갑시켜 방영
- ▶ 손님에 대한 인터뷰 부분: 허위 인터뷰 대상자를 내세워 D의 피해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작출
- ▶ D가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 채 자리를 피하는 장면: 실제로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손님에게 아이스커피를 갖다 주고 돌아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왜곡 편집·조작한 것임
- ▶ ‘얼굴에 난 멍’에 대한 B의 답변 부분: 다른 일시,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편집하여 B가 마치 허위진술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작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B가 계속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방송내용에 이용
- ▶ B 앞에서 연신 굽신대는 모습: 실제로는 D가 한번 구부린 장면을 연속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작출함으로써, 마치 D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B 부부에게 예측되어 노예처럼 실 틈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한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킴
- ▶ 관광객 인터뷰 장면: 제보자를 관광객으로 둔갑시키거나, ‘D의 등에 생긴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일 수 없다’는 관광객의 전문진술은 성인 여성의 옷을 벗겨 등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음에도 이러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함
- ▶ B가 D의 답변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부분: 사실은 B가 D에게 ‘지적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한 대화내용을 위와 같이 답변내용을 일일이 지시한 것처럼 왜곡하여 편집함
- ▶ 선생님 인터뷰 장면: 교장선생님의 인터뷰 음성을 담임선생님의 인터뷰인 양 왜곡하여 B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의도에서 편집
- ▶ G의 진술 부분: 사실은 G가 인터뷰하면서 ‘D가 거짓말을 잘 하고 집에서도 물건을 훔친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가출 부분도 B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 일부 발췌하여 방송함
- ▶ D의 정신병원 입원과 솔루션위원회의 구체조치: 시간순서를 반대로 편집하여 방송내용에 자연스럽게 음을 부여하여 그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서, 대표적인 ‘악의적 편집’에 해당
- ▶ 정신병원 입원 과정: 언니 U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는 등 실제 사실 관계와 다르게 방송내용을 구성

■ 2부 방송

- ▶ D의 등 부위 상처: 이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상처이고 D는 이를 피고 제작진에게 이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송에서는 B와 무관한 상처 장면과 D의 진술을 동시에 방영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이 부분 방송 장면의 상처가 B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실제 취재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함
- ▶ 대질신문 회피 장면: B는 경찰로부터 대질신문을 통보받은 다음날 실제로 대질신문에 응하였고 피고 제작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방송에서는 '아직도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한 것은 명백히 허위임
- ▶ 상당 기간 '감금'하였다는 내용: 피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하여 D의 근무형태, 숙식기간, 외출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D, H의 진술을 그대로 방영하여 상당 기간 감금당하였음을 암시하는 화면 연출

○ 또한, D의 진술변경 경위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 피고 제작진은 실정법인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계혈족인 G, H의 동의 없이 U의 동의만 받아 D를 약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D는 당시 정상적인 성인여성이었다. 입원 후에도 D의 외출은 불가능하였고, 피고 제작진은 U와 V의 면회만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 형부 V는 면회 과정에서 D에게 “힘들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다. 피고가 도와준다고 한다.”고 말하여 D가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 ▶ 또한 의사 W가 D와 면담하면서 “방송국(피고)이 D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D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과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니까 이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아버지가 입원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D가 피해서 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D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D를 회유하였다.
- ▶ 위 정신병원은 외부와 단절된 병원이고 병원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지가 묶이는 징계를 받는 곳인데, 실제로 D는 병원규칙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수차례 받았다. 이는 위 정신병원이 정상인인 D가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 ▶ D는 진술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다가 진술을 변경한 이후인 2008. 9. 8.에서야 피고 제작진과 함께 외출을 나갈 수 있었다.
- ▶ 결국 피고 제작진이 D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D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 이 법원은 2012. 2. 23.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B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이 사건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동기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B 가족을 가해자로, D를 피해자로 단정하여 이에 짜맞추어 미리 구상한 줄거리에 따라 취재, 촬영, 편집된 허구의 사실일 뿐이고, 극적 재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D의 피해는 극심하도록, B 가족의 가학성은 반대로 강하게 표현하였으며,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자극하는 자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D의 진술번복 경위, 진술의 모순점도 확인하지 않고 D의 진술을 탄핵할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수사내용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방송한 점, 이 사건 방송은 사실관계를 취재하면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미리 피고 제작진이 내린 결론에 부합하도록 취재, 촬영, 편집된 허구의 방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진실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광고수익을 올린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가 B 가족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합계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28808호)은 2013. 1. 11. 1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갑 4-1].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3.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8].

14. 그 밖의 사정들

- D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검찰청은 B의 무죄판결 확정 이후인 2010. 10. 11. ①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갑 7].
- 이 사건 게시글은 앞서 보았듯이 2008. 12. 16.부터 시청자게시판에 게재되었다가, B 가족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그 이후인 2010. 12. 26.에 이르러 삭제하였다[사실조회회신].
 -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출력한 시점인 2009. 9. 21.경 이 사건 게시글의 조회수는 ‘9080건’, 추천수는 ‘57건’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피고의 시청자게시판에 게재된 공지글 중 조회수에서는 4위, 추천수에서는 3위를 차지하는 등 다른 회차 방송에 관한 관련글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2].
- 이 사건 프로그램 역시 2011. 4. 결국 폐지되었다.
- 원고는 위 민사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이 채 경과하기 직전인 2016. 2.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Z, a, b, c 등이 2009. 7.경 원고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2016. 6. 3.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27.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기를 모두 복역한 후, 최근에 출소하였다[갑 19-2, 을 7].

II.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반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 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언론이 특정 보도나 방송, 기사와 관련한 내용을 시청자게시판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이나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 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 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8. 9. 16.부터 2008. 10. 14.까지 3회에 걸쳐 공중파로 방영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B 등 그 가족을 D에 대한 악독 가학자로 단정 짓는 한편, 이러한 가학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제재와 응당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경찰 제보를 통해 B를 구속시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D는 완치시켜 평온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을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자, 이 사건 방송과 D 등 그 가족들의 진술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B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기 시작한 원고는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인 다음, 2008. 11. 초순경부터 검찰과 여러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방송의 악의적인 조작실태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작성·배포하는 한편, 이 사건 방송에 대한 피고 제작진의 허위조작 실태를 정면으로 공박하기 위하여 공개 기자회견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피고는 2008. 12. 11.경 원고의 반박과 연구보고서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B 부부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방송화면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는 등 위험한 속단에 빠져 아무 근거 없이 이 사건 방송의 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2008. 12. 16.자로 시청자게시판에 위 게시글을 게재한 점, 그런데 추후 형사, 민사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방송과 D의 진술이 전부 허위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점, 따라서 결국 원고의 주장과 그 조사활동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보았다.

비록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B 부부의 상습적인 폭행혐의가 상당 부분 진실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위와 같이 '아무런 근거없는 조작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허위'라는 취지이고, 그 전제로서 '이 사건 방송이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조사활동을 무마시키고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있는 원고의 주장이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폄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원고를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아직까지 생소한 '탐정'으로 치켜세우면서 긍정적 면을 부각시켜 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그러한 예리한 칼날이 이번에는 자신을 향하게 되자 이번에는 오히려 피고 스스로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을 '불법탐정', '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표현을 동원하여 비방하는 등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원고가 정당하게 제기한 조작설의 광범위한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의 품성과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전반

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근거 없고 편협한 주장’으로서 위험한 속단에 해당한다고 힐난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조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훼손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충분히 포섭된다.

따라서 시청자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앞서 보았듯이 이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과 조사활동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의 조각 여부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원고가 제기한 조작설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게재된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방송의 연장선에서 B 가족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조사활동과 조작설 근거 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방송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내세우는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역시 앞서 본 민사판결에서 판시한 부분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위법성조각사유를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일반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된 이후에 이러한 방송이 D의 일방적인 진술과 피고의 편파적인 취재 등으로 조작·허위날조된 것이라는 B 가족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조작 여부를 확신한 원고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그러한 조작실태를 언론기관 등과 일반인들에게 폭로하기에 이르자,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조사활동, 조작설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박할 목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연장선에서 위 방송이 공익성과 진실성, 공정성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배포·게재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 등을 침해·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게시글 자체의 진위 여부에 앞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여부가 선결적으로 먼저 밝혀져야지만 비로소 알 수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방송이 허위조작되지 않고

B 가족의 가학행위 및 D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과 진실성, 공정성을 담보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과 조사활동을 근거없는 편협한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사건 게시글 역시 공익성과 진실성, 공정성을 갖고 있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닐뿐더러 원고의 명예 또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이 피고의 시청자게시판에 게재된 2008. 12. 16.경 무렵 이러한 게재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당시 원고가 자체 조사활동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이 조작된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방영 및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 당시 그 허위조작 여부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 진위 여부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밝혀지기 전이어서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등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방송과 그 연장선에서 작성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조작된 것이라는 점까지 명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서 살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이는 원고가 2010. 8. 16.경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 고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에는 B에 대한 형사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직후로서, 이로써 D의 진술이 모두 믿을 수 없거나 거짓 진술이라는 사정만 밝혀졌을 뿐, 위 무죄판결로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까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방송과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행위까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결국 이 사건 방송 등의 허위조작 실태와 이로 인하여 B 가족은 물론 원고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앞서 보았듯이 B 가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판결의 심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밖에 없었다.
 - 나아가,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2012. 2. 23. 그 항소심 판결이 2013. 1. 11. 각 선고된 사실,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건들도 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르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재판 실정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 확정시까지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선고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가 법원의 재판 등 공권적 판단으로 명확히 확인·확정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13. 1. 11.자 항소심 판결 이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2013. 2. 2.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는 위 판결의 확정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 여부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이

확정됨으로써 그 전모가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이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라는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항소심 판결내용이 2013. 1. 15.경 각종 언론을 통하여 일반에 보도되고[을 11], 원고 또한 이러한 언론기사를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갑 1 - 다만, 출력일자 는 이 사건 제소 날짜인 '2016. 2. 1.'이다, 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조작 여부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2013. 2. 2.경 무렵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6.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다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동기, 당사자의 동의 여부, 유포의 정도 및 횟수, 보도의 진실성,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나. 위자료 액수 : [7,000만 원]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 이 사건은 피고의 '고의 내지 악의적인 방식'에 의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사건이다. 더욱이,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에 속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폭로한 원고의 사회적, 객관적 가치(피고 스스로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탐정' 제도를 소개하면서 원고의 활동을 극찬한 바 있다)를 방송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매도·매장시킬 의도로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배포·게재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아래에서 보듯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게시글은 2008. 12. 16.부터 2010. 12. 26.까지 근 2년 동안 피고의 시청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게시글은 시청자게시판의 첫머리에 항상 게재되는 '공지글'로 등록되어 관리됨으로써 위 게재기간 동안 시청자들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늘

제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의 조회수, 추천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도, 이 사건 방송의 파급력 및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위 방송을 진실하고 공정한 것으로 믿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조작설 등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원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평가 역시 상당히 높아졌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폭로하려는 원고의 정당한 주장과 활동을 사전에 미리 봉쇄·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방송조작 실태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에서 작성·배포·게재되었다.
- 언론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활동을 매도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어느 정도나마 회복되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은 피고가 언론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게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의 탈을 쓴 채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난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언론 등의 보도를 인용한 경우도 아니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B 가족의 형사 무죄판결과 민사 판결 등을 통해 그 허위조작 실태가 드러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거나(피고가 형사판결 이후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드러난 진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그 후속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 2010. 12. 26.자로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정보도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한 사죄 등의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고소한 b 등이 피고가 게재한 이 사건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원고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가 이들을 접촉한 피고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여 결국 원고가 구속수감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① b 등이 이 사건 게시글에 부정적인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b 등 4인이 집단적으로 원고를 고소한 점, ③ 피고의 소송대리인과 b 등의 고소대리인이 동일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혹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한편으로 b 등의 형사고소와 피고의 관련성을 직접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이 사건에 현출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의혹만으로 위자료 액수 산정의 중요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① 원고의 직업 내지 사회적 활동이 ‘박탈’되거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되었다는 점, ② 원고가 본인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③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④ 생활환경과 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기존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다.

- 결국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중대 피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경미한 정도를 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일반 피해’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기본 산정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앞서 보았듯이 ①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라는 점, ② 원고를 포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방송의 조작실태를 폭로한 원고를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조작설의 유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난한 점, ④ 이 사건 게시글의 전파성과 인지도, ⑤ 방송사라는 피고의 지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 및 이에 반비례하여 비등해진, 이 사건 방송의 조작설을 제기한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정도, ⑥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기간, ⑦ 일반인에 미친 파급력, ⑧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받기 어려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정한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청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

〈별지〉 피고의 기청자게시판 게시글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7나53581 위자료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4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8.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II 판단 제2항(단기소멸시효 완성여부)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 제3항 손해배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방송의 허위성과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방송의 피해자인 B 가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자세히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이 피고 제작진의 기획의도를 기초로 허위 내지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알리려는 원고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사건 방송이 공정한 취재로 밝혀낸 진실을 담보하는 내용임을 강변하는 한편 원고의 의혹제기나

조사활동이 근거 없는 편협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탐정이라고 폄하하려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배포,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 여부는 이 사건 방송의 허위성 및 조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조사가 충분한 근거를 둔 사실에 입각한 것임이 B 가족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밝혀졌으므로, 그 판결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가 위 관련민사소송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위 방송이나 게시내용이 정당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의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러한 피고의 게시내용이 조작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는 것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관련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3. 2. 2.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16. 2. 1.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시 쓰는 부분(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반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언론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당사자의 동의 여부, 유포의 정도 및 횟수, 보도 등의 동기과 진실성, 사회적 관심도, 그 이후 정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액수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 ①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와 파렴치한 가해자로 지목된 B 가족이 허위 조작방송의 실질적 피해자임을 폭로한 원고의 사회적, 객관적 가치를 폄훼할 목적으로 작성, 배포, 게재된 것으로서, 2008. 12. 16.부터 2010. 10. 26.까지 약 2년간 피고 시청자게시판 ‘공지’로 게재되어 있었다.
- ② 이 사건 방송의 파급력과 방영 이후 가해자 B 가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던 상황에서 허위·조작 방송임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가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더욱이 B 가족의 형사무죄판결과 민사판결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이 허위·조작된 것임이 명백해졌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나 게시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정정보도 등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 ④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원고의 의혹제기에 대해 각 쟁점으로 이를 반박하는 피고의 해명을 주로 담고 있고 원고를 폄훼하는 사실적시나 표현은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여부에 관하여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 한정하여 해명글로 게시된 점, 원고도 이 사건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와 각 해명의 모순점을 다시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피고의 해명을 반박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 이 사건 방송의 직접적인 피해자 B는 150,000,000원, B의 남편은 60,000,000원, B의 자녀는 9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방송과 이 사건 게시글이 갖는 전파성, 인지도,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볼 때, B 가족이 입은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 ⑤ 한편 원고는, 원고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b 등이 이 사건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원고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가 이들과 접촉한 피고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원고의 직업 내지 사회적 활동이 박탈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원고가 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적지 아니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권유에 의해 b 등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형사처분 및 그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52463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34171(확정)

압수·수색으로 수술 환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하면서 다른 환자를 인터뷰하여 방송하고, 다른 병원의 수술실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것은 정당한 언론활동이 아닌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 할 것이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매일방송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9월 22일자 <MBN 뉴스8> 프로그램에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이란 제목으로 원고가 수술실에 난입하는 등 무리한 압수·수색을 해 수술 중인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해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이에 원·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같은 이유로 각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보도의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는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인 의사의 동기가 없었다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인 점, 소외 병원과 무관한 수술실과 수술 장면이 '자료화면'이란 자막 없이 배경화면으로 사용된 점, '압수·수색 당시 수술 환자'라는 자막과 함께 변조된 음성을 내보내며 인터뷰를 당시 압수·수색을 당한 수술실의 환자처럼 보도한 점 등에 비춰 이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서초경찰서는 300명가량의 소속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고, 10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 수사과는 그 구성원 수가 제한적이며 범위가 명확하다. 원고가 속한 □□□□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변인들이나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기사를 보고서도 충분히 원고임을 알 수 있다고 보이며,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원고의 모습이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6가단524634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매일방송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7.
			2017.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초경찰서 수사과 □□□□ 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2014. 8. 13. 서울 △△구 ××동 소재 ☆☆☆ 이비인후과(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한 경찰관이 고, 피고는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인 'MBN-TV'를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위 압수·수색 영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보도를 하였다.
- 나. 서초경찰서 수사과 □□□□ 수사팀 B는 소외 병원에 대하여 보험금 내지 보험급여 편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4. 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13. 10:10경부터 소외 병원의 3층 진료실을 시작으로 2층 원장실, 회복실, 수술실 등에 대하여 위 영장을 집행하였고,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원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C, LIG화재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D 등이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하였다.

- 다. 피고는, ① 2014. 9. 22. MBN-TV ‘뉴스8’ 프로그램에서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1 기재¹⁸⁾와 같은 보도를, ② 같은 달 24. 같은 프로그램에서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위험한 압수·수색’ 공방」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2 기재와 같은 보도를, ③ 같은 달 25. 같은 방송 ‘굿모닝 MBN’ 프로그램에서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의료계도 반발」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¹⁹⁾와 같은 보도를, ④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경찰 “병원이 동의” 병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제목 아래 별지4 기재²⁰⁾와 같은 보도를, ⑤ 같은 달 26. 위 ‘뉴스8’ 프로그램에서 「경찰, 보험사 동행 위해 영장 허위 작성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5 기재²¹⁾와 같은 보도를, ⑥ 같은 달 29. 같은 프로그램에서 「‘경찰 사칭’ 보험사 직원 알고 보니 전직 경찰」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6 기재와 같은 보도를, ⑦ 같은 해 10. 1. 같은 프로그램에서 「의사들 뿔났다. 경찰·보험사 직원 고발」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7 기재²²⁾와 같은 보도를, ⑧ 2015. 4. 27. 같은 프로그램에서 「‘수술실 난입 압수·수색’ 검찰 수사서 사실로 드러나」라는 제목 아래 별지8 기재와 같은 보도를 각 소외 병원 현장 화면, 자료화면 등의 영상과 함께 방송하였다(이하 위 각 보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 라. 전국의사총연합은 2014. 10. 1. B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교사죄, 의료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협박죄로 고발하였고, D, C 등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고발하였다. D는 ‘2014. 8. 13. 10:00경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소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2016. 1.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07 사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6. 11.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D의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한편 검찰은 2016. 1. 5. D의 공무원자격사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마. 한편 소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집행한 B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18)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걸가요. 수술 중인 의사에게까지 무리하게 취조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술이 중단되면서 당시 마취를 한 환자가 자칫 큰 위험에 빠질 뻔 했습니다’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고, 기자의 멘트 중 ‘당시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전신’ 부분이 삭제된 채 ‘당시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한 상황’이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다.

19)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경찰의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방치됐다는 내용을 최근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라는 부분은 ‘마취 상태에서’ 부분이 삭제된 채 기재되어 있다.

20)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하지만 병원은 수술실 진입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당시 의료사고가 우려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라는 부분은 ‘아주’ 부분이 삭제된 채 기재되어 있다.

21)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MBN에서 지난해에 보험사 직원을 데리고 가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무리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 직원을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렇게 경찰이 썼습니다. 금감원 조사팀이다. 신원을 속인 것부터가 불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의 거짓말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저희 MBN에서 보험사 직원을 대동한 경찰의 무리한 병원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다.

22)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영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술실까지 들어가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의 행태를 최근 MBN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라는 부분은 ‘최근 저희 MBN에서 보험사 직원을 대동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다.

9115 정정·반론·손해배상 사건에서 2015. 12.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2015. 12. 2. 정정보도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002 정정·반론·손해배상 사건에서 2016. 9. 9. 정정보도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술실에 난입하는 등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수술 중인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협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여 영장 집행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고, □□□□ 수사팀에서 경제수사팀으로 문책인사를 당하였으며, 그 결과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 12. 31. 미리 퇴직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1)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 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소외 병원의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그로써 당시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었으며, 그 환자가 코를 절개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병원의 병원장인 E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2층 수술실에 들어간 사실, 이 사건 영장 집행 중에 E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원고 등이 여러 차례 E에게 소외 병원 사무장 등 다른 사람의 입회하에 진행을 해도 되니 수술을 들어가라고 하였음에도 E는 수술하러 가지 아니한 채 약 한 시간가량 계속 영장 집행에 참관하여 설명하면서, 원고가 없는 자리에서는 다른 곳에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자격 없는 사람은 빠지고 심부름만 한 것으로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층 수술실에 들어간 시점에는 F 환자가 수술실에 있었는데, 위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던 도중에 경찰이 수술실에 무단 진입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진행 중인 수술이 중단된 사실은 없고, 당시 위 환자의 코가 절개된 채 방치된 사실도 없으며, 위 환자 옆에는 다른 의사와 보조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그와 같은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었으며, 수술 중인 환자가 코가 절개된 채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인터뷰의 상대방(이하 '인터뷰이'라 한다)의 인터뷰 및 그 보도 과정에서 사용된 배경화면 등에 의하여 암시된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에 인터뷰이로 등장하는 여성은 그 무렵 소외 병원 2층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F 환자가 아닌 사실, 인터뷰이의 인터뷰가 방영되는 전후로 소외 병원과 무관한 수술실과 수술 장면이 '자료화면'이라는 자막 없이 위 각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되고, 코가 절개된 채 8분 동안 방치되었다는 그래픽 화면이 방송된 사실, 인터뷰이를 '압수·수색 당시 수술 환자'라는 자막과 함께 변조된 음성을 내보내며 그 인터뷰 내용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 식으로 방치됐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수술하는 도중에 들어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여 위 인터뷰이를 당시 직접 압수·수색을 당한 수술실의 환자로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 집행으로 수술이 중단된 바 없는 점, 위와 같은 보도의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터뷰이는 압수·수색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그를 압수·수색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던 중인 환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가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내용 또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였다거나, 사실상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인 B와 원고는 영장 집행을 시작하면서 영장 및 경찰 신분증을 직접 병원장 E에게 제시하고 죄명, 집행절차를 설명하고 집행 시작 지시를 한 점, ② 영장 집행과정에서 B는 E와 계속하여 대화를 주고받았고 E는 B의 요구사항을 병원 직원에게 직접 지시

한 점, ③ 그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인 D, C를 경찰이라고 소개하거나 이들이 직접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D, C가 직접 E에게 압수수색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압수 대상서류를 요구하였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영장의 집행은 B가 주도하면서 보험사 직원인 C와 D가 이를 보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병원 직원들의 진술서 작성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범위에 포함되는지 의문인 점, ② B와 병원장 E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직원들의 진술서를 요구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③ B가 D를 경찰로 소개하거나 D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④ D는 B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는 D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교사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⑥ B가 영장 집행을 주도하고 D가 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 ⑦ D가 병원직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D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을 뿐이고, B나 원고가 D를 경찰로 속여 압수수색을 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B가 보험사 직원을 경찰로 속여 압수·수색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5)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고발 내용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 의사총연합이 원고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교사죄, 의료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협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검찰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6) 한편, 금융감독원 수도권지역 조사TF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위 TF팀 직원과 동행한다고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장 청구서의 '참여자'란에 '금감원 주관 수도권지역 조사TF팀'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 무렵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험사 직원들과의 협조 하에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하였고, 다수의 보험사 직원들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당시 금융감독원 산하에 '수도권지역 조사TF팀'이라는 조직이 실재하고 이 사건 영장 집행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이 그 소속인지에 관하여 보면, 금융감독원에 보험사 직원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한 TF팀이 존재하고 이 사건 영장 집행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이 그 소속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영장 참여자란에 '금감원 주관 수도권지역 조사TF팀'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영장 청구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평가적 판단을 한 이 부분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송한 언론사로서 위 각 보도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각 보도는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보도 중 원고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그로써 당시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었으며, 그 환자가 코를 절개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부분, 원고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보험사 직원을 경찰로 속여 압수·수색을 하게 하였다거나,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는 부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고발 내용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보도 중 경찰이 의사의 동의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여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가 위험에 처해졌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이는데, 의사의 동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인 점, ② 이 사건 각 보도 중에는 소외 병원의 CCTV 촬영 영상 일부 및 경찰관 등이 한 말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쉽게 입수하였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소외 병원 측의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양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면 당시 병원장의 동의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녹음자료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첫 보도는 이 사건 영장이 집행된 이후 40일 이상 경과한 뒤 보도된 것으로서, 그 보도에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사실 확인을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2014. 9. 22.부터 2014. 10. 1.까지 열흘 내의 기간에 7차례 이상 앞서 본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점, ⑥ 피고는 당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고 소외 병원과 무관한 수술실과 수술 장면이 '자료화면'이라는 자막 없이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며, 코가 절개된 채 8분 동안 방치되었다는 그래픽 화면을 방영하고, 인터뷰이를 '압수·수색 당시 수술 환자'라는 자막과 함께 변조된 음성을 내보내며 인터뷰이를 당시 직접 압수·수색을 당한 수술실의 환자로 보도한 점, ⑦ 피고는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 보도하면서 경찰과 보험사 직원과의 유착이 있는 듯한 인상까지 준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4. 27. 재차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총망라하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보도를 한 점, ⑨ 전국의사총연합이 원고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하는 등 혐의에 관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고발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검찰에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는, 피고가 작성한 기사는 '서초경찰서 경찰관, 경찰관' 등으로만 표시했을 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인 원고가 피해자로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서초경찰서는 300명 가량의 소속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고, 10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 수사과는 수사지원팀, 지능팀, 사이버팀, 유치관리팀, 호송출장소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 구성원 수가 제한적이며 범위가 명확한 점, 원고가 속한 □□□□팀(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은 팀장 G를 비롯하여 5명으로 보인다)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변인들이나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기사를 보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무관한 타인들보다 오히려 주변 동료나 지인들, 가족들로부터 신문기사로 인해 의혹과 오해를 받는 고통이 더 크다), 별지2 기재 보도와 관련된 자료 화면에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원고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위법성 조각 여부에서 살펴본 각 사정에 피고는 인지도나 신뢰도 및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방송사로서 이 사건 각 보도는 뉴스 프로그램 중에 방송되어 이를 시청한 다수의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그 내용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보도는 그 멘트 내용 외에도 자막, 자료화면, 배경 화면 등에 의한 메시지 전달 효과가 커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보도의 취재 경위,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및 위 압수수색 등에서 원고가 담당하였던 역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명예퇴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은 대상 기사 중 허위로 인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보도를 모두 합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8〉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7나3417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5246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1.
			2017. 12.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별지1 내지 8을 포함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하였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B는 “피고는 ‘B가 수술실에 난입하는 등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수술 중인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영장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여 영장 집행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115호로 정정반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B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와 피고는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00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9.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B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다음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방송한 ‘원고 등 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소외 병원의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그로써 당시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었으며, 그 환자가 코를 절개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였거나 사실상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영장 집행과 관련된 고발 내용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허위의 보도로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한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소외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 사건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고발당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수술실 안까지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등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관들과 수술실 안에 들어간 경찰관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보도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원고의 모습이 촬영된

소외 병원의 CCTV 영상이 방영된 점,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사건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원고를 고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도 위 고발내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사칭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참여하였던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각 보도는 경찰공무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룬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그로써 당시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었으며, 그 환자가 코를 절개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부분,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보험사 직원을 경찰로 속여 압수수색을 하게 하였거나,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는 부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경찰 등에 대한 고발 내용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보도 중 경찰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피고는 이와 같은 소외 병원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당시 간호사 등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정황 진술 청취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보도 중에는 소외 병원의 CCTV 영상 일부 및 원고 등 경찰관이 한 말이 녹음된 음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쉽게 입수하였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소외 병원 측의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양 보도한 점, ③ 이 사건 각 보도 중 최초의 별지1 기재 보도는 이 사건 영장 집행 후 40일 이상 지난 뒤 방송된 것으로서, 그 보도에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사실 확인을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2014. 9. 22.부터 2014. 10. 1.까지 열흘 이내의 기간에 7차례 이상 앞서 본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점, ⑤ 전국의사총연합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검찰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적 없음에도 고발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검찰에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인지도나 신뢰도 및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방송사로서 이 사건 각 보도는 뉴스 프로그램 중에 방송되어 이를 시청한 다수의 일반 시청자로서는 그 내용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 사건 각 보도는 그 멘트 내용 외에도 자막, 자료화면, 배경 화면 등에 의한 메시지 전달 효과가 커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촬영된 소외 병원의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영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2~3개월 만에 다른 팀으로 인사조치 되었고, 이 사건 각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도 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보도의 취재 경위,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허위 부분 대상 기사가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틀어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가합5680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78807 판결(확정)

한류스타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쟁은 공적 사안에 해당하고, 그 남편으로서 방송 출연 전적이 있는 자는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외 2명

[사실관계]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은 2014년 9월 2일자 <스포츠서울>에 게재된 「스포츠서울, D 초상권 사업 관련해 D 남편 A씨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류스타 D의 남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동사업을 제안해 투자금 20억 원을 받아갔고 정상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투자금만 가로챘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스포츠서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피고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해당 기사가 보도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보도의 공익성 및 상당성을 인정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원고의 지위 및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한류스타 D의 남편으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기사에 여러 차례 실명이 거론된 적 있는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상품화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사는 법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6803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2. B 3. C
변	론	2016. 9. 23.
판	결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업가로서 배우 D의 배우자,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하, '피고 스포츠서울'이라 한다)은 신문발행업, 신문통신업, 인터넷사업, 방송통신판매업(홈쇼핑)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스포츠서울의 대표이사, 피고 C는 피고 스포츠서울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스포츠서울 투자 관련 사건의 경위

1) 피고 스포츠서울은 2012년경 D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E사(이하, 'E사'라고 한다)와 한류스타인 D의 초상권을 활용한 주방용품, 건강식품, 유아용품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위 E사에게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 2) 피고 스포츠서울은, 원고 등이 2012. 4. 26.경 “탤런트 D가 ‘△△△2’에 출연할 예정인데, D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있는 E사에 투자하면 피고 스포츠서울로 하여금 D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익사업도 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하여, 피고 스포츠서울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원고 등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검찰은 2015. 11. 30. 피고 스포츠서울이 퍼블리시티권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하였던 점, E사가 실제로 D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등이 피고 스포츠서울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

다. 화장품사업 분쟁 관련 사건의 경위

- 1) 원고는 2012. 2.경 F, G를 통해 천연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사(이하, ‘M사’라 한다)의 대표 H를 만나 공동사업을 제안하였다.
- 2) 원고는 M사와의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2012. 12. 6.경 주식회사 □□기획, E사, I를 통하여 M사의 주식 52.4%를 취득하면서 측근인 J를 M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 3) M사는 D 관련 화장품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사가 임대한 서울 △△구 ☆☆동 ××-×× 소재 건물 중 반을 전차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2. 12. 13. 그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사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28.경 D와의 화장품모델 계약 선금금 명목으로 원고가 지시한 □□기획 계좌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M사의 화장품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그 부지를 매수하자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2013. 8. 5. 경기 □□군 ○○리 ×××-×, ×××-× ×필지 토지를 M사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토지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매도인 U에게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 위 매매계약이 합의 해지되어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 당했고, SBS에서 제작하는 ‘D의 만찬’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로 2013. 8. 12. E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E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3. 8. 7.부터 2013. 10. 10.까지 총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4) 그러나, M사는 원고가 당초 약정과는 달리 전차한 ☆☆동 건물을 E사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D가 M사가 개발하는 화장품 모델로 활동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제안에 따른 부동산계약으로 인하여 토지대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하지도 않았으며, E사 운영자금을 변제하지도 않았으며, 기망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2014. 8.경 고소하였다.

라. K의 □□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위

- 1) K는 2012. 10. 10. 경기 □□군 ◇◇면 ○○리 ×××-× 외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E사에게 제공하고, D는 자신의 상표권 및 초상권을 제공하는 한편, E사가 이를 활용하여 위 부동산에 비누 등의 목욕 용품 공방, 카페, 음식점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2) E사는 2012. 10. 5. 주식회사 L사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L사는 2013. 3.경 위 부동산에서 비누 제조공방을 개장하였고, 위 공방에서 생산된 비누 등은 서울 △△구 ☆☆☆동에 있는 'N ☆☆☆동하우스'에 공급되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었다.
- 3) E사가 2013. 6.경까지 위 부동산에서 카페 및 음식점을 개점하지 못하고, K에게 수익을 배분하지도 않자, K는 2013. 6. 12. E사에게 위 공동사업협약의 해제통지를 하였다.
- 4) 또한, K는 2013. 10.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사에게 위 □□ 소재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4. 11. 20. 1심에서 일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5) 한편, K는 2014. 8. 29.경 원고 등을 '위 □□ 부동산에 카페, 음식점 등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게 한 후 돈을 편취하고, L사에게 위 부동산을 전차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마. 피고 스포츠서울의 보도 경위 및 원고의 고소

- 1) 2014. 3. 26.경 디스패치라는 인터넷신문사가 "D, △△△ 사업의 명암... 16건 소송으로 얼룩져" 등의 제목으로 원고의 'D'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 2) 이에, 피고 스포츠서울의 기자인 피고 C는 M사의 대표이사 H와 K 등을 포함한 원고와 관련된 사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거친 뒤 2014. 9. 2.자 스포츠서울 신문에 "스포츠서울, D 초상권 사업 관련해 D 남편 A씨 고소"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스포츠서울(대표 B)은 최근 배우 D의 남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 (1) 스포츠서울 관계자는 2일 "A씨가 지난 2012년 D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스포츠서울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갔지만 투자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상권 공동사업자들과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투자금만 가로채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 (2) A씨는 D의 초상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장품업체 M사와 사업가 K씨로부터도 지난달 29일 고소를 당한 상태다.
M사 측은 "A씨가 유명인인 배우 D를 이용한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에 M사 주식을 넘겨받아 대주주가 된 뒤 M사를 자신들이 추진하던 비누사업 등 다른 사업의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자금 창구로만 이용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 (3) 사업가 K씨는 "A씨와 D가 △△△ 수리간 카페 공동사업을 함께 하자며 토지 1136평 및 건물을 넘겨받은 뒤 8개월 이상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부동산을 점유한 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서울을 비롯해 M사와 K씨는 “A씨가 배우 D 브랜드를 이용한 공동사업을 제안해 사업 협약을 맺고 도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초상권 상품화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 E사는 현재 3개 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와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려 있다.

- 3) 원고는 피고 B, C 등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 피고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검찰은 2015. 7. 10.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 22, 23호증, 을 제1, 3, 6, 7, 8, 10, 11, 13, 14, 2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스포츠서울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매체로서, 피고 B는 그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를 취재, 작성한 기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1) (1) 부분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을 제4,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① E사 대표이사였던 O 등이 2012년경 피고 스포츠서울에게 D의 초상권을 이용한 공동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원고와 D가 부부관계이고, E사는 D의 초상권 등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인 점, 원고가 E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의 승인을 거쳐 E사가 추진하던 화장품 브랜드 N의 리플렛 디자인이 결정되었고, E사가 일본 P 백화점과의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원고에게 보고되는 등 원고가 E사를 운영하는 데 상당 부분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였다’는 부분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E사는 2012년경 피고 스포츠서울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피고 스포츠서울과의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4. 6. 30. 기준으로 1,746,867,014원의 결손금이 발생함으로써 피고 스포츠서울은 위 투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M사, K와의 분쟁을 포함하여 D의 초상권 사업을 둘러싼 민형사상 사건이 30건에 달했다는 것은 초상권 공동사업자들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였다는 근거가 된다.
- ④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부분은 피고 스포츠서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언급한 것이고, 앞뒤 문맥으로 보아 허위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2) 부분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 부분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① M사와 K가 2014. 8.경 원고를 투자금 편취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 ② 원고가 M사의 대표이사 H에게 공동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E사, I가 M사의 주식 중 과반수 이상을 액면가로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와 E사의 관계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기획은 D의 퍼블리시터권을 보유한 회사, I, J는 원고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에 M사의 주식을 넘겨받아 대주주가 되었다’는 부분은 세부적인 점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보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M사가 전차한 ☆☆동 건물은 E사의 비누 브랜드 ‘N’의 판매점으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 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기사 보도 후인 2014. 11. 13.경에야 M사에 반환되었고, M사는 2014. 2. 10.경 D의 모델료로 지급한 3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기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879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사를 자신들이 추진하던 비누사업 등 다른 사업의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자금 창구로만 이용하였다’는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3) 부분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 부분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① K는 E사, D와 D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터권을 사용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군 소재 부동산을 E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② 위 공동사업 중에는 위 □□군 소재 부동산 위에 D의 인지도를 활용한 음식점 및 카페를 개점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사는 K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기까지 8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위에서 언급한 카페 등을 개업하지 않았고, K는 위 기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 ③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까지도 E사가 K 소유의 경기 □□군 소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비록 점유의 주체가 E사라 하더라도 원고와 E사의 관계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기사에서 공동사업 불이행 및 무단 점유의 주체를 원고로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A씨가 배우 D 브랜드를 이용한 공동사업을 제안해 사업 협약을 맺고도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E사의 제안으로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음에도 그 약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M사의 대표이사 H와 K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보도한 데 불과하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에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그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이나 보도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통상의 독자들에게 준다거나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고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고발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진실인지를 쉽사리 의심하게 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 27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한류스타로 유명한

D의 남편으로서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는 다수의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고, D의 초상권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위치와 파급력 및 향후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채 고소 여부 및 고소 내용을 압축적인 인용 형식으로 제시한 데 불과하여, 통상의 독자들에게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준다거나 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개별 인터뷰를 거치고 소송자료 등을 수령하는 등의 취재과정을 거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진실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6나207880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가합56803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가. 당사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 '1. 기초사실'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사업가로서 배우 D의 배우자이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하 '스포츠서울'이라 한다)은 신문발행업, 신문통신업, 인터넷사업, 방송통신판매업(홈쇼핑)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스포츠 서울의 발행인자 편집인(현재는 해임된 상태이다), C는 스포츠서울 소속 기자이다.
- (2) D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 주식회사(이하 '□□기획'이라 한다)는 D의 오빠인 Q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D의 초상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사(이하 'E사')는 □□기획과 초상권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D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L사(이하 'L사'라 한다)는 비누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위해 2012. 10. 23. 설립된 회사로, L사가 생산한 비누는 E사가 추진하던 화장품 브랜드 N에 공급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스포츠서울의 발행인자 편집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가) 관련 법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사의 (1) 부분

1) ‘원고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투자금 20억 원을 받아갔다’는 부분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포츠서울은 E사의 대표이사였던 O 등의 투자 권유로 E사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E사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강제8호증, 을제19,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의 초상권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 E사의 대표이사였던 O 등은 스포츠서울에 ‘D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② 원고는 E사 내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렸고, E사가 추진하던 화장품 브랜드 N의 리플렛 디자인 및 K와의 사업 협약에 따른 공사비 등을 승인하였으며, E사 직원으로부터 일본 P 백화점과의 거래를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받는 등 E사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였다’는 부분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투자금만 가로챘다’는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강제11호증, 을제4,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사는 스포츠서울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20억 원을 지급받아 2억 원은 자본금으로, 18억 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위 금원을 계상하였는데, 2014. 6. 30. 기준으로 1,746,867,014원의 결손금이 발생함으로써 스포츠서울은 위 투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② E사는 2013.경 스포츠서울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받은 후 2년 여간 □□기획과 초상권 사용계약 체결, 다큐멘터리 제작 및 법률자문을 위해 약 8억 원 상당을 지출한 것 외에 스포츠서울과 공동사업을 진행한 것은 없는 점, ③ E사가 D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획은 D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D의 오빠인 Q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결국 위 투자금의 대부분이 D와 그 남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사, K와의 분쟁을 포함하여 D의 초상권 사업을 둘러싼 민형사상 사건이 30건에 달하였던 점, ⑤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부분은 스포츠서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언급한 것으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상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투자금만 가로챘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기사의 (2) 부분

- 1)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에 M사 주식을 넘겨받아 대주주가 되었다’는 부분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사와 M사 간의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원고가 아닌 □□기획, E사, I가 함께 52.36%의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은 M사 측의 진술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기획과 E사는 실질적으로 원고 또는 D가 운영·소유한 회사이고 I는 원고의 측근인바, 피고와 M사의 대표이사 H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M사의 주식 중 과반수를 취득하였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충분한 한바, 위 부분은 세부적인 점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보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2) ‘원고가 M사를 다른 사업의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자금 창구로만 이용하였다’는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사는 2012. 12.경 M사가 ☆☆동 소재 건물 일부²³⁾를 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전부를 E사의 비누 브랜드 ‘N’의 판매점으로 사용하였던 점, ② 이에 H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4. 2.경 E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 2014가합509700),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후인 2014. 11. 13.경이 되어서야 위 금원을 반환받은 점, ③ M사는 D의 모델료로 지급한 3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기획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879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④ M사는 E사의 부탁으로 함께 3억 6천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717)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M사를 다른 사업의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자금 창구로만 이용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3) M사는 서울 △△구 ☆☆동 ××-×× 소재 건물 154㎡ 중 77㎡를 전차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의 (3) 부분

1) ‘원고와 D가 △△△ 수라간 카페 공동사업을 함께하자고 하였다’는 부분

원고는 2017. 4. 5.자 항소이유서에서 ‘△△△ 수라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은 없으나 K와 K 소유의 부동산에서 카페, 음식점, 천연비누 공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자인하였고, 을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사와 K는 ‘K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배우 D의 상표권 및 초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K는 D의 상표권 및 초상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E사와 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D가 △△△ 수라간 카페 공동사업을 함께하자고 하였다’는 부분은 세부적인 점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부동산을 점유한 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했다’는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E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점, ② E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전차한 L사가 2013. 3.경 천연비누 제조공방을 개장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K는 자신의 부동산에 D의 상표권 및 초상을 활용하여 공동의 운영 수익을 얻고자 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L사가 천연비누 제조공방을 운영하면서 천연비누 등을 생산하고 다른 곳에 천연비누 등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E사가 K와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E사는 K와 협약을 체결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2013. 6. 중순경 까지 카페 및 음식점 운영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K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④ 이에 K는 2013. 6.경 E사에게 위 협약의 해제통보를 하였으나 E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까지도 K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스포츠서울을 비롯해 M사와 K씨는 “원고가 배우 D 브랜드를 이용한 공동사업을 제 안해 사업 협약을 맺고도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회사의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는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포츠서울, M사, K 등과 D 브랜드를 내세워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여 약속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들로부터 받은 투자금·투자 목적물을 D 초상권 사용료, 법률자문 및 소송 공탁금, 전대차 목적물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원고 측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 E사, L사 등에게만 이익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M사 대표

H와 K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에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그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이나 보도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통상의 독자들에게 준다가나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고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고발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진실인지를 쉽사리 의심하게 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제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원고는 한류스타 D의 남편으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적이 있는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상품화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② E사는 2012년경 피고가 속해있던 스포츠서울로부터 약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3.경까지 피고 스포츠서울과의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피고는 2014. 3.경 인터넷신문사 디스패치가 원고의 'D'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접한 후 E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취재 과정에서 스포츠서울 관계자인 R, S, M사 H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사 K 대표뿐만 아니라 원고의 측근인 J, T 등과 인터뷰를 하였다.

- ③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D 브랜드'를 내세워 스포츠서울, M사, K 등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태이다.
- ④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고소의 객관적인 정황만을 적시하였고, 원고를 고소한 객관적인 경과에 관하여 스포츠서울, H, K 등을 인터뷰한 내용을 압축적인 인용 형식으로 제시한 데 불과할 뿐, 특별히 고소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방식, 표현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506507 판결

칼럼에서 사용된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은 이념 차이에 따른 의견 표명일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10명

[사실관계]

피고 조선방송은 2015년 10월 13일자 <뉴스쇼 판> 프로그램 등에서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불러 논란을 빚었던 A」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피고 서울홀딩스는 2015년 10월 21일자 <서울일보>에 「DNA 돌연변이 A 교수의 발칙한 반항」이란 제목으로 원고에 관해 ‘김일성 찬양론자’ 등의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역사학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정해 피고 조선방송과 패널 H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500만 원을 판결했고, 피고 서울홀딩스와 피고 회사의 취재본부장 I에게는 모멸적 표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공동으로 1,000만 원을 판결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5613). 이후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모멸적 표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서울홀딩스와 I가 원고와 기본적으로 역사관 및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이념적 대립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위 칼럼에서 사용한 ‘김일성 찬양론자로 머리가 돌아버린 공화국 영웅’ 등의 표현들은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이다. 이는 언론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50650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B C D E F G H 주식회사 서울홀딩스 I J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H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서울홀딩스, I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H 및 주식회사 서울홀딩스, 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 D, E, F, G, J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H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홀딩스, I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서울홀딩스, I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B, C, D는 공동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B, C, E, F, G, H는 공동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피고 주식회사 서울홀딩스, I는 공동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피고 J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국사학 학사 및 석사,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역사학자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하 '조선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을 통하여 '뉴스쇼 판', '뉴스를 쏘다', '이슈해결사 박대장' 등을 제작·송출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B는 피고 조선방송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조선방송의 보도본부장이다. 피고 D는 피고 조선방송 소속 기자로서 뉴스쇼 판과 뉴스를 쏘다에 기사를 보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 F, G, H는 피고 조선방송에서 제작한 '이슈해결사 박대장'의 패널로 등장하였던 사람이다.
- 3) 피고 주식회사 서울홀딩스(이하 '서울홀딩스'라 한다)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일보'를 발간하고 있고, 피고 I는 피고 서울홀딩스의 서울중앙취재본부장이다.
- 4) 피고 J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나. 이 사건 강연 및 칼럼

- 1) 원고는 2014. 11. 28. 한국문화다양성포럼과 한국작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랑방 좌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비추어 본 한국현대사’라는 제목으로 약 110분 동안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한 강연을 하던 중,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연’이라 한다).²⁴⁾
- 2) 원고는 2004. 7. 8. 시사주간지인 한겨레21에 ‘[A칼럼]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강연 및 칼럼 관련 보도

- 1) 한편, 2015. 9. 18.경 서울 □□구의 어느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사건 강연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자, 피고 D는 피고 조선방송의 2015. 10. 13.자 ‘뉴스쇼 판’과 2015. 10. 14.자 ‘뉴스를 쏘다’ 프로그램에서 ‘강남 고교서 “박정희 더 일찍 죽였어야” 수업... 학생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제1쟁점),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불러 논란을 빚었던 A’(제2쟁점)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3 기사목록 1 기재와 같은 뉴스를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 2) 피고 E, F, G, H는 피고 조선방송의 2015. 10. 14.자 ‘이슈해결사 박대장’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강연 및 칼럼을 포함한 원고의 발언들, 그 법적 문제점, 원고의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등에 관하여 약 16분 동안 돌아가며 발언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피고 E, 제3쟁점), ‘A 교수는 사실 입만 벌리면, 벌려서, 큰 똥 파동을 일으킨 적이 굉장히 많은 분’(피고 F, 제4쟁점), ‘저 A 교수 얘기는 김일성은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고, 박정희 대통령은 아 그때 죽였어야 되는 건데’(피고 G, 제5쟁점), ‘(이 사건 강연이) 김일성에 대해 김일성이 얼마나 훌륭한 저기...인가 이제 독립운동가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구요’(피고 H, 제6쟁점) 등 별지3 기사목록 2 기재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 3) 피고 I는 피고 서울홀딩스의 2015. 10. 21.자 서울일보에 ‘DNA 돌연변이 A 교수의 발칙한 반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하여 ‘적장 김일성을 극구 찬양하는 생 빨개지 갖’, ‘김일성 찬양론자로 머리가 돌아버린 공화국 영웅’, ‘자기도취자’, ‘사실상 현실상을 부정’(제7쟁점) 등으로 기재한 별지3 기사목록 3 기재와 같은 칼럼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보도’라 한다).
- 4) 피고 J는 2015. 10. 15. 개최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원고는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켜세운 전형적인 중북좌파교수...’(제8쟁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여과없이 교실

24) 원고는 이 사건 강연에서 ‘이승만의 한강 다리 폭파와 서울 탈출, 이승만 복귀 후 부역자 처벌, 당시 부역자로 처벌당하였던 독립운동가들, 부역자 처벌 책임자였던 김창룡의 안두희에 대한 김구 암살 지시, 김창룡부터 시작되는 공안 권력의 계보, 제헌헌법의 이념(근로자의 이익 분배균점권, 농지개혁, 중소기업·산업 국유화 등), 반민특위의 좌절, 김주열의 사망과 4.19 혁명, 공안 권력의 지속, 역사와 책임의식의 중요성,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정한 보수의 의미, 역사의 진보와 퇴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 등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였다.

에서 횡행하는지,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종북좌파이념 세뇌하는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제9쟁점)라고 발언하였고, 인터넷 신문사인 뉴시스는 같은 날 ‘與 “이러니 국정화 해야”...’ A 동영상 ‘총공세’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별지3 기사목록 4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가치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현대사 강연에서 한국 사회의 지배층과 저항계층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중 사례로 박정희를 들면서, 역사적인 가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흥미 있게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 강연과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박정희가 당시에 죽었어야 한다는 식의 원고의 의지나 희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원고는 학술적 연구를 통한 사실에 기반하여 김일성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자수성가형 민주영웅’과 ‘귀족영웅’이라는 분류법을 차용하여 ‘2세로서 아버지의 업적을 승계한 귀족영웅 김정일’과 대비되는 ‘미화되지 않은 출생을 가진 자수성가형 민주영웅으로서의 김일성’을 표현하기 위해 ‘민주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김일성을 찬양할 의도는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위 제1 내지 9 쟁점과 같이 ‘원고가 박정희가 일찍 죽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원고가 김일성을 민족영웅으로 불러 논란을 빚었다’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각각의 관련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가사 피고들의 위 발언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각각의 관련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쟁점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평가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만약 위 각 쟁점들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쟁점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된 것이거나 피고들에게는 이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 2)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

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조).

- 3)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다. 제1쟁점 - 원고가 “박근혜 출생 전 박정희를 살해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는 부분

- 1)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는 제1쟁점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2)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발언이 담긴 이 사건 강연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 ① 원고가 김창룡과 박정희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불과 1분 정도 사이에 무려 4회에 걸쳐 ‘죽여도 될 사람’²⁵⁾, ‘죽여도 여러 번 죽였어야 할 자’, ‘그때 죽여 버렸으면’이라는 발언을 반복한 점, ② 원고가 사용한 위 ‘여러 번 죽였어야 할 자’, ‘죽여 버렸으면’ 등의 발언은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단순한 객관적 가정이 아니라 화자의 의사나 의도가 개입된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원고의 위 발언은 ‘친일파들의 부역자 처벌 명목 독립운동가

탄압 - 부역자 처벌 책임자였던 김창룡 - ㉠ - 김창룡의 김구 암살 지시 - 김창룡으로부터 시작되는 공안권력의 계보' 순으로 계속되던 이 사건 강연 중 위 ㉠ 부분에서 있었던 것인데, 위 강연의 흐름상 '박정희의 사망'이라는 역사적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 '죽이다'와 '살해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두 단어는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연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요약하여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역사학자이자 활발한 저술 및 강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보도는 원고의 공적 영역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위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쟁점 - 원고가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지칭하였다는 부분

- 1) '원고가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지칭하여 논란을 빚었다'는 제2쟁점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2) 원고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칼럼을 게재한 바 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① 원고가 이 사건 칼럼에서 김일성의 항일운동 및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민족의 태양, 형제들의 수령,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민중영웅, 혁명의 창건자' 등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점²⁵⁾, ② 이처럼 이 사건 칼럼이 김일성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칭한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이 '귀족영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출생상의 차이점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중립적 용어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칼럼에 '김일성이 대한민국에서는 극악무도의 전범, 괴뢰집단의 괴수로 평가된다',

25)

저놈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아, 그때 죽여도 될 사람을 하나 살려줬어. 남로당이 한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프락치였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치면, 뭐, 그, 죽여도 여러번 죽였어야 할 잔데, 그 자를 만주에서 같이 놀던 놈이라고. 그놈이 이제 잡히니까 김창룡을 만나게 해달라. 김형 나중 살려주소. 했더니 이제 살려줬어요. 아, 그때 그냥 딱 죽여버렸으면 우리 역사가 짝끔은 바뀔니다. 대통령이 두자리는 확실하게 바뀌어요. 박정희 아님니까. 박정희. 그때 죽여버렸으면 대통령이 될수 없죠. 우리 언니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살려줬습니다. 오늘의 그 박근혜를 있게 한, 오늘의 박근혜가 있기까지는 뭐 이런 분들의 다 은덕이 있는거죠.

26)

(중략)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김일성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쟁취하고자 했던 우리 겨레의 염원에 대해서 무한한 용기와 기대, 그리고 신념을 쏟구쳐주는 원천이며 그 상징"이었다. (중략)
분단된 조국에서 그가 계속 민족의 태양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가 북쪽에 있는 형제들의 수령이었음은 인정해야 한다. 형제들의 수령,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평양은, 아니 전 이북이 흐느꼈다. (중략)
김정일의 출생을 두고는 이북의 이데올로기들이 백두산에 셋별이 솟았다는니 하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늘어놓지만, 김일성의 출생은 그렇게 미화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민중영웅이었지, 출생부터 신비스럽게 미화돼야 할 귀족영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제 동원이 극심해지던 때 사람들은 김일성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해방이 되고 김일성이 나타났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홍길동이나 홍경래, 또는 로빈 후드의 귀환이었다. (중략)
그는... 분명히 혁명의 창건자로서의 위치를 누릴 수 있었다. 혁명의 창건자, 이는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에서 오직 한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자리였다.

‘이북의 역사가들이 항일영웅 김일성의 업적을 너무나 과대포장하였다’, ‘경제난과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등 김일성 및 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일부 비판하는 내용도 함께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한 점, ④ 남북이 분단되어 현재도 극심한 이념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북한 정권의 수립자인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그 진실여부를 떠나 큰 논란이 될 것이 경험치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보도에서 원고가 실제 사용하였던 ‘자수성가형 민족영웅’ 또는 ‘민족영웅’이 아닌 ‘민중영웅’으로 용어 선택을 다소 달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연의 내용을 심하게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일성을 찬양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용어 선택 및 전체적인 칼럼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비판 내지는 검증 요구는 원고가 마땅히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전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3쟁점 - 원고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한다는 부분

- 1)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2보도에서 ‘박정희를 그때 죽였으면 대통령 될 수 없다’, ‘이승만이 다시 서울에 돌아온 날부터 세월호 죽음의 향로가 시작됐다’, ‘김일성이 우리 민족 가장 암울한 상태에 해성같이 나타났다’는 등의 원고의 발언이 문제된 점, ② 이후 원고의 학력, 가정환경 등이 설명되면서 원고의 외할아버지가 제헌헌법의 기초를 다진 유진오라는 점이 보도된 점, ③ 이에 피고 E가 ‘만약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 한 교수님은 자기 외할아버지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또 있게 되구요’라며 제3쟁점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E의 위 발언의 취지를 ‘원고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사 그러한 취지로 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 ① 발언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결국 원고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한 셈이 된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피고 E의 위 발언은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발언에 특별히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는 공적 사안 중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것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분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4쟁점 - 원고가 입만 벌리면 파동을 일으켰다는 부분

- 1)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 F는 이 사건 강연 동영상에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재생되었다는 보도 후 ‘원고는 사실 입만 벌리면 큰 파동을 일으킨 적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제4쟁점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강연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하다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제5쟁점 - 원고가 “김일성은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이고, 박정희는 죽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는 부분

- 1) ‘원고의 발언은 “김일성은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고, 박정희 대통령은 아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건데”라는 의미이다’라는 제5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강연 및 칼럼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G 스스로 위 발언에 앞서 ‘결론을 조금 거칠게 요약하면’ 이라는 말을 덧붙인 점과, 앞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제6쟁점 - 원고가 김일성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을 주제로 이 사건 강연을 하였다는 부분

- 1) ‘(이 사건 강연이) 김일성이 얼마나 훌륭한 독립운동가인가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제6쟁점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2) 갑 제9호증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이 사건 강연에는 김일성을 옹호하거나 김일성의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강연의 동영상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고 H가 제6쟁점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불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있고,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학교수이자 역사학자인 원고가 약 110분여 동안 김일성을 옹호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조선방송, H는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강연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사용된 표현의 수위, 해당 부분이 전체 보도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침해행위 이후의 정황,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다만 피고 B, C의 경우, 위 피고들이 피고 조선방송의 대표이사 및 보도본부장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2보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위 피고들이 피고 조선방송, H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자. 제7쟁점 - 원고는 '생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김일성 찬양론자로 머리가 돌아버린 공화국 영웅', '현실상을 부정하는 자기도취자'라는 부분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3보도에서 피고 I는 원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후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폭로, 과거사 진실규명 민간위원 활동,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정권의 통치행위 비판, 이 사건 강연 및 칼럼' 등의 활동을 언급한 사실, ② 그러면서 '원고가 적장 김일성을 극구 찬양하는 생 빨갱이 짓을 하고 있다', '원고는 위대한 김일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 김일성 찬양론자로 머리가 돌아버린 공화국 영웅이다', '원고는 사실상 현실상을 부정하는 자기 도취자이다'라는 제7쟁점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발언은 그 자체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① 사실들을 이유로 원고를 비난하는 등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원고와는 기본적으로 역사관 및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남북의 대치 하에서 이념적 대립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위 보도(칼럼)에서의 표현들은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이어서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칼럼은 언론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서울홀딩스, I는 공동하여 원고의 위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위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 당시 사용된 표현의 수위, 해당 부분이 전체 보도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침해행위 이후의 정황(피고 서울홀딩스는 2016. 6. 8. 이 사건 제3보도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였다, 을자 제5호증),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차. 제8쟁점 - 원고는 김일성을 영웅으로 칭한 전형적인 종북 좌파교수라는 부분

1)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 14613 판결 참조), 종북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들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북으로 지목된 사람 역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김일성을 영웅으로 칭한 전형적인 종북 좌파교수에 해당한다'는 제8쟁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원고가 김일성을 영웅으로 칭한 것을 포함하여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회

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피고 J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강연 동영상이 고등학교에서 재생된 것을 문제삼으며 제8쟁점 발언을 하게 된 것인 점, 위 제8쟁점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강연과 칼럼의 내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김창룡이 박정희를 죽였어야 했다’, ‘김일성은 민중영웅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8쟁점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카. 제9쟁점 - 원고의 발언이 여과없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교실은 종북 좌파이념을 세뇌하는 혁명전사 양성소와 같다는 부분

피고 J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여과없이 교실에서 횡행하는지,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종북 좌파이념 세뇌하는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제9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강연’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강연을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재생한 교사의 행동’을 비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9쟁점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타. 소결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보도일인 2015. 10.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서울홀딩스, I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3보도일인 2015. 10. 21.부터 위 2017. 6. 28.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조선방송, H, 서울홀딩스,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 D, E, F, G,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강연 생략

<별지2> 이 사건 칼럼 생략

<별지3> 대상기사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260855 판결(확정)

기사 53건을 삭제·수정하기로 하면서 이행강제를 위한 지연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후 52건에 대해서는 삭제 등을 하고도 1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적당히 감액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시민일보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2014서울조정11278·11279)했다가 당사자간 자체협상을 통해 피고가 원고와 관련된 총 53건의 기사(2014. 4. 16.~8. 31.)에 대해 삭제, 수정 혹은 기사 하단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한 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피고는 기사 52건에 대해서는 삭제 등을 했으나, 2014년 5월 29일자 「유병언 세력, 야권연대 가담했나?」라는 제목의 기사 1건에서 문제가 된 '세칭 구원파 교주로 알려진 유병언' 부분에 대해 삭제 등을 하지 않았고,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연락해 비로소 기사를 수정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예정액보다 감액된 손해배상 300만 원을 판결했다. 이후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합의사항 중 다른 모든 것은 이행하고 1개의 기사에 대한 삭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가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1일 50만 원으로 계산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원고 측의 요청에 피고가 해당 기사를 바로 수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악의적으로 사건 기사에 대한 삭제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9,850만 원(197일×50만 원)을 300만 원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6가단26085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시민일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6. 23.
			2017.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이른바 구원파로 알려진 종교단체이고, 피고는 언론기관이다.
- 나. 원고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1) 피고는 2014. 4. 16. 이후 2014. 8. 31.(기준일)까지 보도한 총 53건의 기사에 대하여,
 - 가) 합의문에 첨부된 [별지1]과 [별지2]를 각 합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 홈페이지 사회면에 48시간 게시하고 게재 후에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도록 하고,
 - 나) 피고는 [별지1]과 [별지2]에 해당하는 기사는 삭제를 하거나 수정, 혹은 기사 하단에 관련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게재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53건의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중재신청 및 민형사상 제소를 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중 위 나.의 1)의 가)항을 이행하고, 위 나.의 1)의 나)항의 내용 중 관련 기사 52건에 대하여는 삭제 등을 하였으나, 2014. 5. 29.자 “유병언 세력, 야권연대 가담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1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세칭 구원파 교주로 알려진 유병언” 부분에 대하여는 2015. 8. 18.까지 삭제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날 원고 측에서 피고 측에 연락을 하여 비로소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가 된 “세칭 구원파 교주로 알려진 유병언” 부분은 “유병언은 세칭 구원파 교주로 알려졌다”는 의미이어서 [별지1]에 기재된 “유 전 회장은 A(구원파)의 교주이다”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의일인 2015. 1. 23.부터 10일 이내인 2015. 2. 2.까지 삭제 등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별지1]의 반론보도문과 [별지2]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이 사건 문제가 된 53개의 기사 중 52개의 기사에 대하여는 삭제 등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는 삭제 등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원고의 연락을 받은 2015. 8. 18.에야 삭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합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사항, 즉 반론보도문 게시, 정정보도문 게시, 53개 기사 삭제 등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사항 중 다른 모든 것은 이행하고 1개의 기사에 대한 삭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가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1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점, 원고 측이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삭제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자 피고가 그날 바로 수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악의적으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삭제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 효력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삭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98,500,000원(2015. 2. 3.부터 2015. 8. 18.까지 197일 × 5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00,000원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1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서울북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1414 판결

상표권 무단 사용에 관한 보도가 언론사의 사익과도 관련된 경우, 공익을 이유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원고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뉴스타운

[사실관계]

피고는 2016. 2. 2.부터 6. 28.까지 27차례에 걸쳐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원고가 구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했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진실하지 않은 기사로 인해 명예와 신용 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기사의 허위성 등을 인정해 손해배상 2,000만 원 및 정정보도 게재를 명했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898)했으나 이후 항소 취하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애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000만 원)이 내려졌으나(2016서울조정952·953),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 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

원고가 구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했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경 한국거래소에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주식을 제외한 채 단독 상장하려고 하자 그 무렵부터 해당 내용과 같은 기사를 계속 보도했는데, 이는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주식을 원고의 주식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피고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위 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1414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원	고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뉴스타운
변	론	2017. 6. 22.
판	결	2017. 7. 13.

주 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홈페이지 경제/IT면 중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 보도문 가항 기재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 나항 기재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 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각 이어서 별지 보도문 기재 각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별지 보도문 기재 각 내용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 각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

- 1) 해태제과 주식회사(이하 원고와의 구별을 위하여 편의상 ‘구 해태제과’라고 한다)는 1945.

10. 3. 설립되어 제과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건설사업 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1997. 11.경 부도처리되었다.
- 2) 구 해태제과는 2001. 4.경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 영업양도 및 법인 소멸

- 1) 구 해태제과의 채권단은 2000. 11.경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해태제과는 2001. 7. 18.경 신설법인인 원고(다국적 금융연합체인 “◇◇◇◇◇컨소시엄”에 의해 2001. 7. 11. 설립되었다)와 사이에 제과사업 부문 소유의 부동산, 고정자산, “해태”라는 상호 및 제과사업에 연관된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제과사업과 연관되는 모든 영업권 등의 자산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서울지방법원은 2001. 9. 21.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자산 및 인수되는 부채의 이전 허가신청’을 승인하였다.
- 3) 구 해태제과는 2001. 9. 28. 원고에게 제과사업 부문을 최종적으로 양도하면서 상호를 “하이 콘테크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위 회사는 2012. 11. 23. 해산되어 2012. 12. 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원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도

원고는 2016. 1. 22.경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원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2016. 5.경 원고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의 보도 내용

피고는 2016. 2. 2.부터 2016. 6. 28.까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와 같이 2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가 구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하여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마.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경위

- 1) 원고는 2016. 6.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16. 7. 12. 피고가 ‘원고는 구 해태제과의 상표권자이자 영업양수인으로서 적법하게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장되었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4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 해태제과로부터 “해태”라는 상호를 포함하여 제과사업에 대한 자산 일체를 영업양도 받은 후 “해태”라는 상호로 제과사업을 영위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였는바, 피고가 2016. 2. 2.부터 2016. 6. 28.까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와 같이 27차례에 걸쳐 원고가 구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하여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진실하지 아니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상 양도대상에 “해태제과”의 상호, 역사, 연혁, 브랜드 가치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해태제과”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여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익을 취하였는바, 피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보도한 것이고, 고의로 허위의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정정보도 청구 부분

1) 관련 법령 및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제2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에 의하여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제26조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피고로 한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의 허위 보도

살피건대, 구 해태제과는 2001. 7. 18.경 원고와 사이에 제과사업 부문 소유의 부동산, 고정자산, “해태”라는 상호 및 제과사업에 연관된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제과사업과 연관되는 모든 영업권 등의 자산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9. 28. 원고에게 제과사업 부분을 최종적으로 양도하면서 상호를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구 해태제과로부터 “”, “**해태제과주식회사**”, “**해태**” 등의 상표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는 2016. 2. 2.부터 2016. 6. 28.까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와 같이 27차례에 걸쳐 원고가 구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하여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보도를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구 해태제과 주주들은 한국거래소가 구 해태제과의 상호·역사·연혁을 무단 도용한 원고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한국거래소의 서울 사옥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위 주주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216호, 2016카합20298호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해태제과”의 상호·상표를 무단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 ② 구 해태제과 주주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신주발행유지 등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436호), 신주식배정이행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호)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구 해태제과로부터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분과 “해태”라는 상호, 제과사업과 연관된 상표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구 해태제과는 “해태”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제과사업과 관련하여 “해태제과”라는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③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에 대하여 뒤의 나 2)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고, 뒤의 나 2) ①,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찍이 피고의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민사판결들이 선고 및 확정되어 왔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홈페이지 경제/IT면 중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 보도문 가항 기재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 나항 기재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 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각 이어서 별지 보도문 기재 각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별지 보도문 기재 각 내용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 각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으로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피고가 2016. 2. 2.부터 2016. 6. 28.까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와 같이 27차례에 걸쳐 원고가 구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하여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보도를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8, 15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2. 2.부터 2016. 6. 28.까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와 같이 27차례에 걸쳐 원고가 구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하여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① 이미 구 해태제과 주주들이 2004년경 구 해태제과의 핵심인 제과사업 부문을 헐값에 자산매각 방식으로 매도하고 구 해태제과의 경우 껍데기만 남게 함으로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이콘테크 주식회사, 원고,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429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염가에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경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 2010가합31483호로 주주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 해태제과가 원고에게 제과사업 부문의 자산 일체를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530조의2가 정한 회사의 분할로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들이 전부 그대로 확정되었다.
- ② 피고는 원고가 2016. 1.경 한국거래소에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주식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상장하려고 하자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와 같은 기사를 계속하여 보도하였는데, 이는 구 해태제과 주주들이 위와 같은 소송에서 계속하여 패소하였음에도 위 주주들의 주식을 원고의 주식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③ 원고는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 기사들을 작성한 A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위 죄명에 대하여 구약식으로 기소하였는데, A가 이에 대해 불복하여 현재 정식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62호)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 보기도 어렵고 사실관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허위의 보도내용으로서 피고가 이를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 28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보도내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당함으로써 유, 무형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의 무형의 손해에 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별지 조정대상기사 기재 각 기사의 형식, 내용, 시간적 지속성 및 파급력, 피고의 각 불법행위의 정도 및 그 결과, 특히 원고의 사업에 미친 영향,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 : ‘해태제과’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본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2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경제면에 해태제과식품(주) 가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 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27차례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태제과식품(주)는 ‘해태제과’의 상표권자이자 영업양수인으로서 적 법하게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장되었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별지2> 조정대상 기사 생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100511 판결(확정)

개인의 형사 구속 전력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방송사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9월 29일자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에 「육남매의 상속 다툼, 누가 노모를 모시나」란 제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육남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큰 아들이 유류 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자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제보하게 된 ‘현대판 고려장’ 사건인데 애초 제보 취지와 달리 육남매의 상속 다툼으로 왜곡 방송했고, 원고가 언급하지 않은 ‘구치소’라는 자막을 삽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피고 문화방송에게 7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했고, 정정보도청구는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을 인정해 기각했다. 이후 원·피고의 항소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이라는 이유로 조정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2016서울조정1948).

[판결요지]

□ ‘구치소’ 자막 삽입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부친의 부동산을 팔아 원고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형(피고 B)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사고쳐서 들어간 걸 자랑이라고 말하던가요?”라고 인터뷰했고, 피고 언론사는 임의로 ‘동생이 사고쳐서 (구치소) 들어간 걸 자랑이라고 말하던가요?’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개인의 과거 형사 구속 여부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10051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시작 직후 화면 상단에 자막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씨로 1회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tv.imbc.com/>)에 게재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클릭시 링크된 화면에 통상의 방송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제 563회 ‘육남매의 상속 다툼, 누가 노모를 모시나’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통상의 방송내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링크된 화면 ‘다시보기’ 2016년 제563회차 클릭시 통상의 방송내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이 함께 보이도록 한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 후 최초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방영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로서 시사교양프로그램인 '리얼스토리 눈'을 제작·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는 회사이며, 원고는 망 C²⁷⁾의 삼남이고 피고 B는 망 C의 장남으로서 형제지간인데, 피고 문화방송이 2016. 9. 29. 방송한 '리얼스토리 눈' 제563회 '육남매의 상속 다툼, 누가 노모를 모시나' 편(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 출연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방송 경위

- 1) 원고와 피고 B의 사촌 동생인 D는 피고 문화방송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인 '리얼스토리 눈' 제작팀에 피고 B가 2006. 7. 19. 부친인 망 E로부터 모친인 망 C는 잘 모시기로 하고 부산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 받고서는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자마자 망 C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요양병원이 망 C의 신체를 결박하게 하는 행위에 동의를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 2) D의 위와 같은 제보 이후 피고 문화방송 '리얼스토리 눈' 제작팀은 2016. 9. 8.부터 9. 13.까지 총 6일 동안 망 C, 피고 B 및 그 배우자, 원고 및 그 배우자, 망 C의 장녀인 F, 차남인 G 등을 인터뷰 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재를 하였고, 망 C가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모습, 입원하였던 요양병원 입원실 등을 촬영하였다.
- 3) 피고 문화방송은 2016. 9. 29. '리얼스토리 눈' 제563회로서 '육남매의 상속 다툼, 누가 노모를 모시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다. 관련 사건

- 1) 원고는 2016. 11. 16.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16. 당사자간의 합의 불능이라는 이유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 2)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문화방송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원고가 구치소를 다녀온 사실을

27) 망 C는 2016. 9. 29. 방송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12. 27. 사망하였다.

간접적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피고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 4. 25. ‘구치소를 다녀 온 사실은 원고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어 자막에 반영하였다는 피고 문화방송의 담당 프로듀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땅 C의 여섯 자녀들 중 H, I는 이 사건 방송 당시 출연 및 인터뷰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방송에 잠시 출연한 F, G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문화방송은 당초 제보 취지 및 목적과 무관하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땅 C의 여섯 자녀 모두가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두고 상속 다툼을 하는 것처럼 방송 제목을 정하여 허위 내용의 방송을 하였으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 나. 나아가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면서 ‘(구치소)’라는 자막으로 임의로 삽입하여 원고가 구치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나간 2016.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속 다툼’ 내용 관련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한편,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은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 중 '육남매 사이에 상속 다툼이 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위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문화방송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제보자 D(원고와 피고 B의 사촌동생)의 당초 제보 취지는 피고 B가 망 C를 잘 모실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고서는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자마자 망 C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학대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는 경우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 방송은 망 C의 자녀들의 상속 다툼에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는 방송 기획, 제작, 편성, 보도의 자유가 있으므로 제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자의 제보 목적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이를 단서로 충분한 취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다.

- (2) 피고 문화방송의 취재 결과, 망 C는 치매 내지 가성치매 상태로서 인지능력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 B는 무릎연골 관련 치료를 계속 받아왔으며, 피고 B 부부가 망 C는 잠시 모실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시킨다는 사실을 인근에 사는 다른 형제들인 F, G에게 알린 점(이에 원고가 망 C가 입원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망 C를 퇴원시킬 수 있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반박 주장과 같이 피고 B는 무릎연골재생수술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망 C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 문화방송으로서는 피고 B가 유증 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망 C를 더 이상 보살피지 않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원고나 제보자 D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3) 피고 문화방송은 취재 중, 원고와 피고 B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촬영하게 되었고 그 대화 부분은 그대로 방영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별다른 의미 없이 피고 B에게 화가 나서 대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내용에 여러 제반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 문화방송 입장에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을가 제1호증의 1 취재테이프 녹취록 일부]

피고 B	법대로 해서 뺏어가라 집이 그렇게 탐나나.
원고	어 그래 탐난다.
피고 B	십년 이상이면 더 오른다
원고	알고 있다. 알고 있어.
피고 B	네가 얼마나 잘난지 모르지만 잘 해봐라.
원고	언제 법정에 같이 서보자 그래.

- (4) 원고는 망 C를 요양병원 입원 당일 퇴원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 앞에서 “‘꽃구경가자’라는 거짓말에 따라 나선 우리 엄마 온 몸에 멍꽂을 피우고 돌아왔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피고 B를 비난하기까지 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망 C를 모신다거나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

려고 하지 않고 주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해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고 문화방송으로서는 원고 등이 피고 B가 유증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탐내서 자신을 포함한다는 피고 B의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5) 나아가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 다음 달인 10월이 ‘효의 달’이었고,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시점에 마침 D의 제보가 있어 상속재산을 둘러싼 공동상속인들 간의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고 취재를 시작한 점, 다만 그 취재 결과 원고 및 제보자 D의 주장과 함께 피고 B의 주장도 방송에 반영하기로 하고 가능한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문화방송은 그 방송 의도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수집하였고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 방송을 하였다고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방송 중 ‘육남매 사이에 상속 다툼이 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문화방송으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제작 의도에 비추어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간접강제신청 포함)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구치소’ 자막 삽입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원고가 인터뷰 중 직접 ‘구치소’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구치소’라는 자막을 삽입하여 이 사건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구치소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1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부친의 부동산을 팔아 원고 합의금을 마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동생이 사고쳐서 들어간 걸 자랑이라고 말하던가요? 40년이나 지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무튼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인터뷰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 인터뷰 내용 중 “동생이 사고쳐서 (구치소) 들어간 걸 자랑이라고 말하던가요?”라는 자막을 삽입한 점, ② 이 사건 방송의 기획 의도와 전체적인 방송의 맥락에 비추어 반드시 위와 같은 원고의 인터뷰 내용, 적어도 ‘(구치소)’라는 자막이 이 사건 방송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이 ‘(구치소)’라는 자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쳐서 들어갔다’는 원고의 얘기로부터 원고가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다녀왔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과거 형사 구속 여부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에 원고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구치소’라는 자막을 삽입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해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피고 문화방송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문화방송이 이 사건 방송을 기획·제작하게 된 경위, 위 자막 삽입 관련 부분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킨 표현의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나간 2016. 9. 29.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문화방송과의 인터뷰 중 원고가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원고가 구치소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방송은 피고 B가 아닌 D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 문화방송 제작진의 요구에 따라 피고 B가 인터뷰를 하는 중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옛날에는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 팔아서 막내동생(원고)한테 다 들어갔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것만 해도 자기 집 한 채 값 정도는 챙겨간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가 구치소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 B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문화방송의 담당 프로듀서가 피고 B가 아닌 원고와 인터뷰를 하다가 원고가 구치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고의 대화 내용에 구치소라는 자막을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주된 근거로 피고 B를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의 구치소 전력을 지적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소결

따라서 피고 B가 피고 문화방송과의 인터뷰 중 원고가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240943 판결(확정)

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했다면 언론사로서의 주의의무가 감경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매일방송 외 2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5년 10월 22일자 한 교회에서 목사들 사이에 일어난 상해 사건을 ‘두 목사가 서로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다. 원고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상대 목사 B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B를 칼로 찔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해 피고 매일방송, 서울신문사, 동아닷컴에 대해 손해배상 각 4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원·피고의 항소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에 대한 언론사 면책 여부 판단

피고 동아닷컴이 통신사인 뉴스1으로부터 이 사건 기사를 전달받아 웹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하면서, 피고 언론사 스스로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소속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보도했다.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게재했다는 사정이 언론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것은 전혀 아니므로,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16가단24094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매일방송 2.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3. 주식회사 동아닷컴
변	론	2017. 7. 13.
판	결	2017. 8. 1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금 4,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1,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장 청구취지에는 위 '2015. 10. 24.부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누락이 오키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2015. 10. 22. 18:40경 서울 △△구 ☆☆동에 소재한 □□교회 건물 안에서 B와 원고가 모두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소란이 발생하자 △△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B와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살인미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는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을 죄명과 상관없이 ‘이 사건 교회상해사건’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피고 매일방송’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교회상해사건과 관련하여, 2015. 10. 23. 및 10. 24.에 걸쳐 피고 매일방송 소속 C 기자가 작성한 다음 표 ①, ③, ④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보도하고, MBN 채널 뉴스방송에서 다음 표 ②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 ① 2015. 10. 23. 17:08 “서울 △△구 교회, 목사끼리 벌어진 칼부림 사건 주목”
“서울 △△구 교회에서 두 목사가 서로 흥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 ② 2015. 10. 23. 19:41 MBN뉴스8(방송) “목회 활동 위한 때문에...목사끼리 칼부림”
[앵커멘트] “교회에서 목사들끼리 흥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구에있는 한 교회로 다른 교회의 목사 B가 찾아갑니다. 동료 목사 A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B는 A를 보자 미리 준비한 흥기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A 역시 B가 들고 있던 흥기를 빼앗아 찔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③ 2015. 10. 24. 00:02 “서울 △△구 교회, 목사끼리 칼부림한 이유는?”
“서울 △△구 교회 칼부림 사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흥기를 들고 찾아간 □□교회 A는 ■
■교회 B가 평소 자신을 음해한다고 여겨 B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 ④ 2015. 10. 23. 14:02 “서울 △△구 교회서 두 목사끼리 칼부림, 서로 흥기 들고 수차례 찔러”
“서울 △△구의 한 교회에서 두 목사가 서로를 흥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B는 □□교회 담임목사 A(47)를 흥기로 수차례 찔렀고, A는 B가 들고 있던 흥기를 빼앗아 다시 B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피고 서울신문’이라고 한다)는 2015. 10. 23. 피고 서울신문 소속 D 기자가 작성한 다음 표와 같은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보도하였다.

- 2015. 10. 23. “서울 △△구 교회서 목사끼리 칼부림...왜 음해하나”
“B는 □□교회 담임목사 A(47)를 흥기로 수차례 찔렀고, A는 B가 들고 있던 흥기를 빼앗아 다시 B를 수차례 찔렀다.”

라.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피고 동아닷컴’이라고 한다)은 2015. 10. 24. 주식회사 뉴스1(이하 ‘뉴스1’이라고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표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보도하였다.

- ① 2015. 10. 24. 09:20 “△△구 교회 목사 칼부림, 흥기에 찔리자 빼앗아 수차례 찔러”
서울 △△구 ××동의 한 교회에서 목사 2명이 서로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흥기에 찔린 A도 B가 들고 있던 흥기를 빼앗아 B를 수차례 찔렀다고 전했다.

- ② 2015. 10. 24. 09:33 “△△구 교회 목사 칼부림, 대한예수교장로회 두 목사 이미 총회 탈퇴”
서울 △△구 ××동의 한 교회에서 목사 2명이 서로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졌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A도 B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B를 수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 ③ 2015. 10. 24. 10:44 “△△구 교회 목사 칼부림, 소속 교단 선긋기...이미 총회 탈퇴한 사람”
서울 △△구 ××동의 한 교회에서 목사 2명이 서로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A도 B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B를 수차례 찔렀다.”고 말했다.
- ④ 2015. 10. 24. 11:05 “△△구 교회 목사 칼부림, 자신 음해한다 생각해 흉기로 찔러”
서울 △△구 ××동의 한 교회에서 목사 2명이 서로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A도 B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B를 수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 ⑤ 2015. 10. 24. 11:57 “△△구 교회 목사 칼부림, 대한예수교장로회 입장은?”
“A 또한 B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다시 그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 원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검찰은 원고가 B를 칼로 찌른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한 결과 2016. 6. 20. ① 고소인 B의 녹음 내용과 원고의 녹음 내용을 보면 'B가 칼로 자해한 것이고 원고는 B를 제지하였을 뿐 칼로 찌른 적이 없다'는 원고의 변소에 부합하고 ②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가 당시 방어 차원에서 칼을 뺏어 찔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건 직후 정황으로 보아 원고의 발언 내용을 'B를 칼로 찔렀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증거로 삼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B에 대한 살인미수 유죄판결

B는 이 사건 교회 상해사건으로 '피고인 B가 칼로 원고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의 유죄판결(2016고합23)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 1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판결(2016노2376)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며 2017. 3.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살인미수의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에게 칼로 찔렸을 뿐 B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은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도 B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내용을 사실로 언급한 뉴스를 방송하여 허위 사실 적시로 원고 명예를 훼손하였

다. 이러한 기사 및 방송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교단과 주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원고가 목회활동을 하던 교회가 폐쇄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금전으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

- 1) 피고들의 기사 내용은 ‘원고가 B를 칼로 찔렀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사는 ‘원고가 B를 찔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피고들 소속 기자(단, 피고 동아닷컴의 경우 위 피고에게 뉴스를 제공한 뉴스1 소속 기자)의 조사·확인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를 찔른 것이 사실이고, 이는 성직에 종사하는 목사들의 분란과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인들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보도의 공익성이 있다.
- 3) 또한 설령 기사 및 보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을 취재하여 그 설명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피고들 소속 기자들은 사실에 대해 조사, 확인할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기사 게재 및 방송보도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가. 피고들의 명예훼손 책임

1) 관련 법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에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기사 및 방송보도의 공공의 이익 여부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기사 및 방송 보도는 목사들 사이에서 흥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사회의 종교적 가치기준과 모범을 제시할 지위에 있는 목사들이 행하는 범죄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기여하는 데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기사 및 방송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가 B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피고들의 각 기사 및 보도내용을 차례로 본다.

(1) 피고 매일방송은 ‘목사끼리 벌어진 칼부림 사건’, ‘두 목사가 서로 흥기를 찌르는 사건’, ‘목사끼리 칼부림한 이유는?’, ‘두 목사끼리 칼부림, 서로 흥기 들고 수차례 찔러’라는 큰 제목을, 피고 서울신문은 ‘서울 △△구 교회서 목사끼리 칼부림’, 피고 동아닷컴 뉴스의 경우 ‘△△구 교회 목사 칼부림, 흥기에 찔리자 빼앗아 수차례 찔러’, ‘△△구 교회 목사 칼부림’이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피고 매일방송과 피고 동아닷컴의 각 기사 및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서두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거의 모두 ‘서울 △△구 교회에서 두 목사가 서로 흥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그 뒤 문장에는 두 목사를 B와 A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과 제목을 합하여 그 인상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위 기사와 보도 내용은 ‘원고가 B를 칼을 찔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서울신문은, ‘서울 △△구 교회서 목사끼리 칼부림’이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에는 ‘A는 B가 들고 있던 흥기를 빼앗아 B를 수차례 찔렀다’고 표현한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B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

(3) 비록 이 사건 각 기사와 보도 내용 중에 ‘A 역시 B가 들고 있던 흥기를 빼앗아 찔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흥기에 찢린 A도 B가 들고 있던 흥기를 빼앗아 B를 수차례 찢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제목과 서두에서 원고도 B를 칼로 찢러 상해를 입혔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설명을 전하는 내용의 언급은 그 비중이 매우 적은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및 방송이 경찰관의 수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의견 표명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B를 칼로 찢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적시한 후에 수사기관의 설명을 언급함으로써 적시 사실에 대한 근거로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을가2, 3호증(을다5, 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를 칼로 찢러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를 칼로 찢른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및 방송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피고들이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보도에 앞서 원고가 B를 칼로 찢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을나1, 2호증, 을다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피고 매일방송 소속 기자 C는 2015. 10. 23. 이 사건 교회 상해사건을 전해 듣고, △△경찰서 담당 형사과장 E에게 전화를 걸어 △△구 교회에서 목사들끼리 서로 칼로 상해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질문하고 E는 원고와 B에 대한 현행범체포서를 토대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C가 해당 교회관계자에게 연락하여 교회에서 목사들끼리 서로 칼부림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질문하자 교회관계자가 ‘다른 언론사들이 내 말을 기사화하였으니 그 기사를 보라’는 답변만을 확인하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하고 위 1의 나.항 표 기사를 작성하였다.
- (2) 피고 서울신문 소속 기자 D는 2015. 10. 23. 다른 언론사 기사를 통해 이 사건 교회 상해사건을 알게 되어, △△경찰서 형사과장 E에게 전화를 걸어 △△구 교회에서 목사들이 서로 칼로 찢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묻고, E로부터 ‘원고가 B의 칼을 빼앗아 위해를 가했다’라고 답변을 듣고 이러한 내용으로 위 1의 다.항 표 기사를 작성하였다.
- (3) 피고 동아닷컴에게 1의 라.항 표 기사를 제공한 뉴스1 소속 기자 F가 위 해당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F는 당시 다른 언론사 등을 통해 ‘△△구 교회에서 목사들이 서로 칼부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서 형사과장 E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다. 당시 E는 ‘△△구 교회에서 B가 A를 흉기로 찔렀고 그 후 A도 흉기를 빼앗아 B를 칼로 찔렀으며 두 목사는 각기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기자 F는 위 답변을 토대로 위 1의 라.항 표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고, 뉴스1은 뉴스콘텐츠 제공계약에 따라 피고 동아닷컴에 위 기사를 전달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기자들이 관할경찰서에 사건 경위,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원조사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유선전화를 걸어 E 형사과장과 통화하여 사건에 대해 문의한 점, ② 관할경찰서의 형사과장의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로로 형사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닌 점, ③ 형사과장인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전화를 걸은 기자들이 누구누구인지는 모르고, 기자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구 교회에서 목사들끼리 쌍방 칼부림 사건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고 현행범체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기자들이 E의 답변에 대하여 그 답변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나 상세한 경위에 대해 E에게 더 이상 질문하거나 그 밖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피고 매일방송은 소속 기자 C가 교회관계자도 조사하여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피고 매일방송이 스스로 내세우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교회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또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는 진술을 들은 바 없으므로 C가 취재 조사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 ④ 현행범체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단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개시단계에서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는 혐의사실로서만 기재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더 수사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행범체포서만을 가지고 혐의사실이 유죄임을 단정 지을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하는 점, ⑤ 피고들은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고 원고가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라 원고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 원고가 이송된 응급실에 직접 방문하여 주변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가족, 대리인,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원고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러한 일이 그리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러한 과정을 거쳤더라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기사방송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서울신문은 언론사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참고하는 것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진술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형사사건 혐의를 받는 당사자 측의 입장을 청취·확인하는 데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와 목적은, 언론사로 하여금 당해 당사자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형사사건 피의사실 보도에 있어서 당사자 측 입장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의 판단과는 다른 사실이 드러날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보도시점에서 잠정적 판단일 수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단정적으로 피의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그 시점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신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교회 목사가 다른 목사를 칼로 찌른 행위는 법적으로 더욱 심한 비난이 가해지리라 예상되는 사건이므로 자칫하면 원고의 명예침해가 중대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진실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소속 기자(단, 피고 동아닷컴의 경우 뉴스1 소속 F 기자)가 E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만을 전해들은 후 더 이상의 자료나 근거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목사 A(원고)가 목사 B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방송보도를 행한 것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동아닷컴이 소외 뉴스1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게재하였더라도 마치 피고 동아닷컴 소속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도, 피고 동아닷컴 스스로 위와 같이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동아닷컴이 뉴스1로부터 이 사건 기사를 전달받아 웹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하였다는 사정이 피고 동아닷컴의 언론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것은 전혀 아니므로, 피고 동아닷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자료

-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들의 각 기사 및 방송보도의 횟수, 표현 정도, 피고들의 조사확인 의무의 위반 정도, 원고의 직업, 피고 측이 사실을 오인하기에 이른 과정에서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각 위자료를 피고 매일방송은 4,000,000원, 피고 서울신문은 1,000,000원, 피고 동아닷컴은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 나.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매일방송은 4,000,000원, 피고 서울신문은 1,000,000원, 피고 동아닷컴은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 및 방송보도일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48271 판결

기사제목에 단정적 표현이 아닌 의문문을 사용한 경우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 : 주식회사 A 외 1명
- 피고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5년 12월 10일자 인터넷 <노컷뉴스>에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회사가 출판한 아동 역사서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사건의 판결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 제목이 일반 독자에게 원고 개인이 위 표절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는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400만 원(원고 회사에게 100만 원, 원고 대표이사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578).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달리 해당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상당성 및 공익성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원고들의 상고가 있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대법원 2017다261325).

한편, 원고 회사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5서울조정4090·4091).

[판결요지]

□ 의문문을 사용한 기사 제목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로 기재돼 있어 마치 원고 회사 A가 아닌 원고 B가 개인적으로 표절 행위를 한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B가 표절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표절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본문에서는 표절한 주체를 ‘B가 운영하는 출판사’로 기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B가 아닌 B의 회사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원고 B가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정정보도 등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6나2048271	정정보도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2. C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005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노컷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cutnews.co.kr>) 초기화면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2 기재 기사의 제목을 클릭 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제1항 기재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들

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청구취지 제1, 2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4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도서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홈페이지 <http://www.nocutnews.co.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는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배경

- (1) 원고 회사는 2012. 4. 27. 'OOOO 한국사'라는 제목의 10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출판하였다.
- (2) 이에 기존에 '한국사 XX'라는 제목의 5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이하 '기존 서적'이라 한다)을 저술하였던 D는 2014.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302호로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서적의 저자 E, F, G(이하 '이 사건 저자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들이 한국사 XX와 유사한 이 사건 서적을 저술, 출판함으로써 자신의 기존 서적에 대한 저작권(이하 '기존 서적의 저작권'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3) 위 법원은 2015. 12. 3. D가 주장한 이 사건 서적의 131개의 문구 중 9개의 문구가 기존 서적과 유사하여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저자들은, 위 9개의 문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할 수 없고, 위 각 문구가 포함된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모두 폐기하며,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69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피고들의 기사 보도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5. 12. 10. 노컷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C가 작성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기재와 같다.

제목: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

한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한국출판인회의 B 회장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아동 역사서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이 문단을 '① 부분'이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사 XX>의 저자 D씨가 A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소송에서 "출판사 A가 출간한 <OOOO 한국사>가 9군데에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시했다. (중략)

이번 사건은 2002년 첫 출간된 <한국사 XX>의 저자 D씨와 현재 출판사인 J가 표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O선생'과 학생들이 등장해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OOOO 한국사>의 서술 방식과 역사 서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투로 서술한 <한국사 XX>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베껴거나 일부를 윤문했다는 주장이다. (중략) (이하에서는 위 3개의 문단을 '② 부분'이라 한다)

<OOOO 한국사> 시리즈는 A가 출판사 역량을 집결해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XX>를 비교와 경쟁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국사 XX>는 출간 이후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350만 부에 달하는 대표적인 어린이용 한국사 통사이다.

이 책을 겨냥해 A는 이와 차별화하려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취지의 비교 광고 때문에 A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4개의 문단을 '③ 부분'이라 한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큰 것은 바로 표절을 한 주체인 출판사 A의 대표가 한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B씨이기 때문이다.

B회장은 인터뷰 때마다 "한국 출판계가 살려면 좋은 필자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이하에서는 위 2개의 문단을 '④ 부분'이라 한다)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파문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 '표절이 맞다'라는 판결이 나오에 따라 우리 출판계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하 '⑤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1) 원고 B가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고,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서적의 131개의 문구 중 9개의 문구만이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기사는 ‘원고 B가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서적의 전체가 기존 서적을 표절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 (2)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그 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의문형식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표절 책임이 대표자인 원고 B에게 귀속된다는 사회통념에 기초한 서술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 B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B가 ‘저자로서’ 또는 ‘직접’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다.
- (3) 실제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서적을 기획출판하여 이 사건 서적의 저술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3.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이라는 제목과 그 기사 내용을 통해, 원고 B가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이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신문 등의 언론 매체의 어떤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2)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 (3)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다. 판단

- (1)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원고 회사가 아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원고 B가 개인적으로 표절 행위를 한 것처럼 읽혀질 수 있고, ‘표절’이라는 용어는 ‘저작권 침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베껴 쓰는 행위’로서 주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쓰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원고 B가 표절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표절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기사 본문에서는 표절한 주체를, ‘한국출판인회의 B 회장이 운영하는 출판사(1면 1행)’, ‘출판사 A가 출간한 ○선생의 <○○○○ 한국사>(1면 4행)’, ‘A와 저자 3명은(1면 13행)’, ‘A가 출판사 역량을 집결해(2면 6행)’, ‘이 책을 겨냥해 A는(2면 10행)’, ‘표절을 한 주체인 출판사 ‘A’(2면 13행)’로 각 기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원고 B가 아닌 원고 회사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서적의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기존 서적을 비교 경쟁대상으로 삼은 주체 역시 원고 회사로 기재하였고, 앞서 본 제목 이외에는 원고 B가 저작권 침해의 주체이거나 그 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에서 ‘표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본문에서 관련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명시하였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라는 단어가 혼동·혼용되기도 하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표절’이라는 단어는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사용된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점, ⑤ 회사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체이므로 그 구성원들에 의해 행해진 회사의 행위가 모두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서적의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기존 서적을 비교와 경쟁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발견된다’는 부분 역시 원고 B가 이 사건 서적의 전체적인 기획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 및 본문 내용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 회사가 발간한 이 사건 서적이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일부 침해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B이며, 원고 B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라는 것으로,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출판의 문화적 진흥과 산업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 건전한 출판문화를 조성하는 것 역시 한국출판인회의의 역할이자 목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한국출판인회의의 회장인 원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비판하는 내용”일 뿐인 점, ⑦ 또한, ‘원고 B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직원들 및 저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는 ‘원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대표자인 원고 B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읽혀질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B가 표절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원고 B가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 B가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가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B가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① 내지 ⑤ 부분

(1) ① 부분

(가) 주장

위 부분은, 관련 판결이 한국출판인회의와 무관함에도 원고 B가 한국출판인회의의 회장임을 강조하여 원고 B를 비방하고 있고, 관련 판결이 1심에 불과함에도 마치 최종 판결인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닌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가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의 회장인 점, 위 부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제1심 법원인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였을 뿐인 점, 일반적으로 ‘표절’이라는 용어가 ‘저작권 침해’의 의미로도 쓰이는 점, 원고 B가 한국출판인회의의 회장이라는 점을 명시하거나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원고 B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① 부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거나 원고들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② 부분

(가) 주장

관련 판결에서는 B의 청구 중 극히 일부만 인용되어 소송비용 중 9/10를 B가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 부분에서 마치 이 사건 서적 전부가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편파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부분에서 이 사건 서적 전부가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기사에는 ‘관련 소송에서 B가 주장한 문구 중 9군데에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는 재판결과 중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에 관심이 미비하므로, 피고들이 관련 판결의 주문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한 이상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편파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②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의 명예 또는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③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기존 서적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서적을 기획·홍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허위이다.

(나) 판단

1) 기획·홍보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기사의 내용은 ‘〈OOOO 한국사〉 시리즈는 A가 출판사 역량을 집결해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XX〉를 비교와 경쟁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갑제3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서적 초판을 발행하면서 그 홍보를 위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 “‘눈에 띄는 새책’이라는 제목 하에” ‘현재 어린이 역사책의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J출판사의 책은 독자대상이 6학년 이상에 맞춰져 있고, 2002년 초판 발행 이후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아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어린이책평론가)의 ‘전문가 칼럼 자녀에게 어떤 역사책을 권해 줄까?’라는 제목 하에 ‘나는 예전에 초등학교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앞서 말한 그 베스트셀러를 교재로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장이 어려워 아이들이 한 문장도 이해를 못했다. 역사 수업이 아니라 거의 국어 수업이었다’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낸 사실, 이에 D, 주식회사 도서출판는 위 광고 등이 부당하게 기존 서적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한 사실, 이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15. 1. 26.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갑제20호증, 을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존 서적과 이 사건 서적은 출판물의 성격, 독자층 등이 겹치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서적인 점, ② 그렇기 때문에 원고 회사 역시 이 사건 서적의 홍보 과정에서 기존 서적과 비교하여 이 사건 서적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일반적인 소설이나 수필 등과 달리 이 사건 서적과 같이 어린이들을 독자로 하는 역사책의 경우 다른 서적과 차별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서적의 구성, 편재 등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서적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작가와 원고 회사의 팀장이 업무회의 등을 통해 서적의 구성, 방향 등에 관한 회의를 거쳐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전문분야가 ‘역사’가 아닌 이 사건 작가들이 시대별로 주제를 나누어 이 사건 서적을 집필하였고, ‘출판권 설정계약서’ 상의 인세 등 계약 내용이

소설 등 일반적인 서적의 경우와는 상이한 점, ⑤ 이 부분 기사는 ‘원고 회사’가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기존 서적을 비교와 경쟁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발견된다고 기재함으로써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원고 B가 기획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까지 암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⑥ 위 기사 내용 바로 뒤에 ‘그 정황’의 예시로 원고 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경고 조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이 원고 회사가 기존 서적을 비교와 경쟁대상으로 삼은 행위에 원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행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 부분은 ‘원고 B’가 이 사건 서적의 기획 단계부터 기존 서적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서적을 기획·홍보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서적의 기획·홍보 시 기존 서적을 비교와 경쟁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부분

갑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실, 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15. 1. 26.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2012년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에 전면광고로 기존 서적을 비방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기사 부분은 위 통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통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위 기사 부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인 점, 이 사건 기사는 원고 회사의 공정거래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초점을 둔 기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4) ④ 부분

(가) 주장

원고 B는 그동안 인터뷰에서 “좋은 필자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 부분은 원고 B가 ‘인터뷰 때마다’ 그러한 발언을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고, 위 발언 사실과 ‘표절을 한 주체가 원고 B’라는 표현을 대비시켜 원고 B를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나) 판단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15. 4. 7. 이데일리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콘텐츠는 돈이 아닌 사람이다. 맨 파워에 투자해야 출판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발

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발언은 좋은 작가를 발굴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 부분은 관련 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 원고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 B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원고 B의 신분과 평소 인터뷰 내용을 적시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의견이나 평가를 덧붙이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 부분은 ‘인터뷰 때마다’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사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B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⑤ 부분

(가)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한 데 따른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함에도, 위 기사 부분은 관련 판결을, 저자가 직접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경숙 표절 파문’과 유사한 사건으로 묘사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서적의 일부가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인 점, 위 부분은 ‘신경숙 표절 파문’에 이어 또다시 표절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 B가 직접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 부분은 ‘표절이 인정된 판결’이 연속하여 나온 출판계의 위기상황을 지적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되었고, 피고들이 이 부분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사가 원고 B가 이 사건 서적의 기획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의도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사는 출판사인 원고 회사와 한국출판인회의의 회장인 원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표절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 C는 원고 회사에서 2008. 5. 경부터 2009. 10. 경까지 어린이책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H로부터 ‘원고 B가 이 사건 저자들로 하여금 기존 서적을 강의교재로 사용하는 서울 ○○동 소재 △△ 논술학원에서 강의를 듣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하게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서적의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기존 서적을 비교와 경쟁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B가 표절에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관련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합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81513 판결(확정)

전 국회의원의 자원외교 활동에 대한 보도는 공익성이 있고 언론사가 취재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3개월간 볼리비아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력해 상당성이 인정된다

- 원고 : A
- 피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1월 19일자 <한겨레>에서 「현지업자 증언·감사자료 보니 뒷돈」 등의 제목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자원개발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이 찬조금 8,000달러가량을 원고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가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다. 이후 원고의 상고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 국회의원으로 자원외교 특사를 자처하며 활동한 공직자다. 피고 기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기획보도를 준비했고 약 3개월가량 자원외교 문제를 집중 취재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재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장소까지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5가합599 손해배상 등		
원	고	A		
피	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10. 5.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5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제1면 우측하단의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정정보도문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로,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1회 게재하라. 피고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누리당 소속 전 국회의원(1988. 5.경부터 2012. 5.경까지 ○○시 ○구 등의 13대 내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이고, 피고는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19.부터 2014. 1. 23.까지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라는 탐사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2014. 1. 19. “뒤틀돈과 조작의 신화” 편에서 한겨레신문 3면에 “현지업자 증언 · 감사 자료 보니 뒤틀돈”이라는 제목과 “‘검은돈’ 8천달러, 1만2천달러, 254만달러···”라는 소제목 아래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²⁸, 2014. 1.

20. '경부의 강압과 왜곡' 편을, 2014. 1. 21. '재앙이 된 무능, 공기업' 편을, 2014. 1. 22. '눈 먼 돈의 비극, 정경유착' 편을, 2014. 1. 23. '증발한 수조원, 의문과 책임' 편을 각 게재하였으며, 그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볼리비아 방문 당시 기업인들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마치 원고가 자원 외교 명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하던 중 현지 사업자 D 등으로부터 미화 8,000달러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²⁹⁾

3. 판 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구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일반의 구독자가 보기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자원

28) 별지 목록 2 기재 기사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서 "A 의원 준다며 8천 달러 건어기"라는 제목이 추가되었다.

29) 원고가 이 사건 기사뿐만 아니라 피고의 탐사기획기사 전부 혹은 피고의 2014. 1. 19.자 기사 전부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기사를 제외한 피고의 탐사기획기사는 자원외교의 평가와 관련된 보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본다.

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이 8,000달러 가량의 찬조금을 거두어 원고에게 건넸다는 사실적 주장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허위 여부의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식회사 B사, 주식회사 C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0. 1. 18.부터 2010. 1. 25.까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하였을 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자원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이 8,000달러 가량의 찬조금을 거둬 원고 쪽에 건넸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실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 여부

다만,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이를 읽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D 등 자원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로부터 8,000달러 가량의 찬조금을 수수하였다는 인식을 줄 만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피고는 그 사실적시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있고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1)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0, 11호증, 을 제2 내지 8,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전 국회의원으로 자원외교 특사를 자처하며 활동한 공직자로서, 원고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소속 기자들은 볼리비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 관련자를 취재하는 등 3개월가량 자원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기사의 주요 취재원인 D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감수하고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의 정황과 동석인, 지시한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취재에 응하였고, 이는 D가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D뿐만 아니라 원고 및 E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F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의 입장도 취재한 후 기사에 게재한 점, ⑤ KBS 추적 60분의 2015. 2. 14. 방송분에 익명의 볼리비아 기업사절단 참여자도 당시 돈을 건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당시 사장이던 E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보도된 적이 있는 점, ⑥ E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피고와의 취재 과정에서 ‘D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는 2009.

4. G 동광 사업 컨소시엄 법인인 H 출범 당시 D와 동석하였고, 2012. 2.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그 전에 신동아에 실린 D의 인터뷰를 특별히 언급하는 등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그에 관한 의혹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6나2081513	손해배상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제 1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합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5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제1면 우측하단의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정정보도문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로,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1회 게재하라. 피고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볼리비아 방문 당시 기업인들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마치 원고가 자원 외교 명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하던 중 현지 사업자 D 등으로부터 미화 8,000달러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³⁰⁾

3. 판 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

30) 원고가 이 사건 기사뿐만 아니라 피고의 탐사기획기사 전부 혹은 피고의 2014. 1. 19.자 기사 전체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기사를 제외한 피고의 탐사기획기사는 자원의외교의 평가와 관련된 보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본다.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구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일반의 구독자가 보기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자원 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이 8,000달러 가량의 찬조금을 거두어 원고에게 건넸다는 사실적 주장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허위 여부의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

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입증책임의 전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の場合에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가 기업인들로부터 8,000달러를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로 전환되거나 원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2010. 1.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를 방문하였고, 그 당시 D 등 자원개발사업 관련 기업인들이 8,000달러를 거둬 원고에게 건넸다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위 금품을 받은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2, 제1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의 주요 취재원인 D는, “E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원고가 볼리비아를 방문한 2010. 1.경 원고 등과 함께 볼리비아 라파스 카미노레알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고, D와 I(사 부사장)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커피숍 출입문 바깥쪽 로비에 앉아 있었는데, I가 E에게 불려가 커피숍 안에서 E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E 사장이 원고가 누구에도 볼리비아 자원외교를 위해 수고하니 여행경비에 보태 쓰게 2,000달러씩 내자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D는 현지교민 대표 입장에서 2,000달러, J사의 몫 2,000달러를 합해 4,000달러를 I에게 전달했으며, I는 D에게 8,000달러 넘게 해 가지고 10,000달러 드린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D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의 정황과 동석인, 지시한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취재에 응하였고, D의 취재과정에서의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② I도 D 등 자원외교 관련 기업인들 중 일부가 조금씩 돈을 걷어 E 사장에게 전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E는 피고의 취재 과정에서 ‘D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E가 2009. 4. G 동광 사업 컨소시엄 법인인 H 출범 당시 D와 동석하였고, 2012. 2.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그 전에 신동아에 실린 D의 인터뷰를 특별히 언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D를 모른다는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식회사 B사, 주식회사 C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원고가 2010. 1. 18.부터 2010. 1. 25.까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하였을 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자원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이 8,000달러의 찬조금을 거둬 원고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 여부

다만,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이를 읽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D 등 자원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로부터 8,000달러 가량의 찬조금을 수수하였다는 인식을 줄 만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피고는 그 사실적시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있고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1)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 국회의원으로 자원외교 특사를 자처하며 활동한 공직자로서, 원고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 을 제2 내지 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기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기획보도를 준비하였고, 그에 따라 당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온 K, L 의원 및 상당수의 교수, 회계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부터 자원외교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였으며, 또한 볼리비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 관련자를 취재하였는바, 피고 기자들은 위와 같이 약 3개월가량 자원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기사의 주요 취재원인 D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감수한 채 피고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여,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의 정황과 동석인, 지시한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D는 라파스 까미노레알 호텔 커피숍 벽의 선반 위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어 커피숍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었다고 함), 피고 기자들은 D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장소인 라파스 까미노레알 호텔에 가서 커피숍 밖에서 커피숍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인지 등을 확인하기도 한 점, ③ 피고 기자들은 D뿐만 아니라 원고 및 E 당시 한국 광물자원공사 사장, F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의 입장도 취재하였는데, E는 D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를 모른다는 E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웠고, F는 D와의 면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뒷돈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F가 녹음과 관련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10761 판결(확정)

본문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 보도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수 있다

- 원고 : 사단법인 A
- 피고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5명

[사실관계]

원고는 뉴라이트 운동을 기치로 출범한 자유주의연대와 사단법인 뉴라이트재단이 통합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시대정신'을 기관지로 발행하고 있다.

피고들은 A에 7년간 지원된 후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원고 단체가 친정부 집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전·현임 행정관들이 몸 담았던 곳이라며 '원고와 이 단체들 간의 커넥션이 드러나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 및 진실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1779).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피고 제이티비씨와 그 편집책임자에 한해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피고 공동으로 손해배상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본문 내용과 다른 '4각 커넥션'이란 보도 제목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제이티비씨는 어버이연합,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의 4각 커넥션을 다룬 방송보도를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제목에 「A-전경련-청와대-국정원...4각 커넥션 드러나나」라고 기재했다. 위 제목 부분은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여지가 있고,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 사이의 4각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부분은 그 자체로 허위라고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7나201076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2.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3.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4. B	
		5. C	
		6. D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합1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C, D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제이티비씨 인터넷 신문(<http://www.jtbc.joins.com>)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9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여 이를 48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B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2017. 9.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 원고의 피고 제이티비씨,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C,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B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문 제10면에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3단에 걸쳐 보도하고,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0시부터 48시간 동안 경향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han.co.kr>)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그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정정보도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별지1-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3.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0시부터 48시간 동안 뉴스타파(<http://newstapa.org>) 초기화면의 주요기사 목록에 별지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별지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4.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는, ①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20:00에 시작하는 JTBC 뉴스룸 첫 뉴스로 별지3-1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보도 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하며, 방송 후에는 홈페이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② 이 판결 확정일 2일 후 오전 07:42 아침엔 프로그램에서 별지3-2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보도 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하며, 방송 후에는 홈페이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③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 20:00에 시작하는 JTBC 뉴스룸 첫 뉴스로 별지3-3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보도 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하며, 방송 후에는 홈페이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④ 이 판결 확정일 후 1일 내에 48시간 동안 피고 제이티비씨 인터넷신문인 'JTBC 뉴스'(<http://news.jtbc.joins.com>) 주요화면에 별지9 정정보도문을 정정대상 기사와 동일한 글자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그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검색되도록 하라³¹⁾.

31) 이 부분 청구취지만 당심에서 변경되었는데 항소취지에서는 종전의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위 피고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각 의무일 이후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30,000,000원,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B, C는 각자 50,000,000원,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B, C와 각자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뉴라이트 운동을 기치로 출범한 자유주의연대와 사단법인 뉴라이트재단이 2008년 9월경 통합하여 사상 및 정책 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시대정신'을 기관지로 발행하고 있다.
- (2)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경향신문사'라고 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인 '경향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자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 (3)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여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 (4)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이하 '피고 제이티비씨'라고 한다)는 종합편성채널 JTBC를 운영하고, 인터넷신문인 'JTBC 뉴스'(<http://news.jtbc.joins.com>)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방송사이자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 B는 그 보도담당 사장으로서 뉴스 프로그램의 총괄 및 편집 책임자이자 JTBC의 '뉴스룸'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사람이며, 피고 C는 '뉴스룸'의 이 사건 해당 기사를 취재·보도한 기자이고, 피고 D는 평론가로서 JTBC의 '아침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각 보도

- (1) 피고 경향신문사는 2016. 4. 27. 경향신문 제10면(사회면)과 경향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부, E 행정관 몸담았던 ‘A’에 4년간 2억 국고보조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4 기재와 같이 게재·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상기사’라 한다).
- (2)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2016. 4. 28. ‘뉴스타파’ 인터넷사이트에 “‘극단적 중복 체결 그룹’이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발간하는 잡지 시대정신에 대하여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라고 설명한 기사를 별지5 기재와 같이 게재·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상기사’라 한다).

- (3) 피고 제이티비씨는, ① 2016. 5. 9. 20:00경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앵커인 피고 B와 기자인 피고 C가 "[단독] 청와대 행정관 몸 담았던 'A'...21억 의문의 후원금"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별지6 기재와 같이 보도하고, 이어 같은 내용의 뉴스를 다음날인 2016. 5. 10. 07:46경 '아침엔' 프로그램에서 "[단독] 이번엔 'A'에 출처 모를 후원금 21억 원"이라는 제목으로 별지7 기재와 같이 다시 보도하였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3 대상보도'라 한다), ② 2016. 5. 10. 07:42경 위 '아침엔' 프로그램에 출연한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후원금 내역을 밝히지 않아 투명성이 없고, 이명박 정부 때 연간 3억 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을 받다가 2012년에 중단되었는데 원고 출신 인사가 2013년에 청와대 행정관이 되면서 다시 연간 1억 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었는데 위 청와대 행정관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4 대상보도'라 한다), ③ 2016. 5. 10. 20:00경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4각 커넥션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피고 B, C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별지8 기재 중 본문 내용과 같이 보도한 후, 위 보도 내용을 같은 날 21:10경 인터넷신문에 온라인으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A-전경련-청와대-국정원... '4각 커넥션' 드러나"로 기재하여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 사이트에 별지8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 대상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강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 대상기사 및 대상보도에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 적시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1-1 내지 3-4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 보도와 그를 위한 간접강제 및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제1 대상기사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추진단체로 선정되어 공정하게 사업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위 기사는 청와대 행정관 E가 과거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에 부임한 2013년 이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특혜를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고, 이러한 논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원고의 2011년도 행정자치부 공익사업 수주 실적을 누락하였다.

② 이 사건 제2 대상기사

원고는 공산주의와 종북세력에 대하여 반대할 뿐 '극단적 종북 척결 그룹'이 아니고, 원고가 발행하는 시대정신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가 아닌데도, 위 기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유도하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③ 이 사건 제3 대상보도

㉠ ‘종북 척결’ 등 극단적인 어휘를 사용한 주장을 하거나 ‘종북 척결 세미나와 토론회’를 연 적이 없으며, ‘미군 장갑차에 숨진 효순이·미선이 사건과 광우병 사태가 종북주의자들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이 부분 보도에서 각기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고, ㉡ 원고가 회원들 또는 후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 21억 원 상당은 그 출처가 분명하나, 다만 원고에게 이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도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출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이 부분 보도는 ‘출처 모를 후원금’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원고가 받은 후원금 21억 원이 부정한 돈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④ 이 사건 제4 대상보도

사단법인의 회비를 내는 회원 및 후원자에 대하여 공개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원고가 그 회원 또는 후원자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성이 없다고 말한 피고 D의 발언은 허위이다. 또한 원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 연간 3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았다거나 2012년에 국고보조금이 끊겼다가 2013년 현 정부에서 원고 출신 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면서 연간 1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등의 발언도 모두 허위이다.

⑤ 이 사건 제5 대상기사

위 기사의 본문에는 원고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제목을 “A-전경련-청와대-국정원... ‘4각 커넥션’ 드러나”로 게재함으로써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과 사이에 ‘4각 커넥션’ 등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구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한편, 위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 (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대상기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대상기사에 원고의 2011년도 행정자치부 공익사업 수주 실적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강제9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도 공익사업비 75,000,000원은 원고와 사단법인 F가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되어 공동으로 지급받은 공익사업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법인에 재직하였던 E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간 2013년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지급이 중단되었던 국고보조금 지급이 재개된 사실, ② 원고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합계액은 1억 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합계액은 1억 9,268만 원에 달하는 사실, ③ 위 기사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편중된 박근혜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기사인 점, ④ 그 중에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E 행정관 몸담았던 A'이라든가 'E 선임행정관이 과거에 활동했던 A'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원고에게 국고보조금이 배정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위 기사가 E 등이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특혜를 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기사에서 제시한 표에 원고의 2011년도(이명박 정부 시절) 국고보조금 수령액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간과하고 0원으로 표기하였고, 2016년 공익사업비 7,500만 원은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사업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기사 내용의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이는 극히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기사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 대상기사에 대하여

(1) '극단적 중복 척결 그룹' 표현 관련 부분

위 기사에서 '극단적 중복 척결 그룹'이 원고를 의미하는지 살피건대, 위 기사의 제목이 “‘극단적 중복 척결 그룹’이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인 점, 위 기사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E와 전임자인 G가 우리 사회에 중복 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 왔다면서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념과 노선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19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의 핵심 간부였다가 1990년대 후반 전향하여 북한인권운동에 가담했고,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며, 원고 법인의 이사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으로, 원고는 E와 G의 공통점으로 일부 언급되었을 뿐인 점 등 위 기사의 논조 및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서의 '극단적 중복 척결 그룹'이란 전·현직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E, G를 비판하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비난하여 지칭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2)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표현 관련 부분

위 기사 중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이라는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 G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공통점 부각을 위해 사용한 수식어에 불과할 뿐인 점, 더욱이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로서는 을나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잡지 '시대정신'에 게재된 글들 등에 기초하여 원고를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라고 판단하고, 위 기사에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또한 원고 스스로도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할 것이고, 다만 세부적 사항을 다소 과장하거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 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3 대상보도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적시사실 ㉠ 관련 부분

위 프로그램 진행 당시 원고에 대하여 “소위 ‘중복 척결’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중복 척결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왔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숨진 효순이와 미선이 사건과 광주병 사태가 중복주의자들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표현된 사실은 별지6, 7의 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을다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 G는 잡지 시대정신 2010년 가을호에 ‘미군 여중생 치사사건과

허위의 촛불시위'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목적으로 한 '여중생 범대위'의 거짓된 선동으로 촛불시위가 확산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2012년 6월 '종북 실체와 대응책'이라는 강연에서도 "효순이·미선이 사건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광우병 저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② E의 주도 하에 2012. 6. 5. '탈북자와 북한인권운동가는 변절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좌파이념과 종북세력의 현주소', '38운동권의 친북적 국가관과 민주당의 의무', '임수경 의원에게 보내는 경고와 일깨움'의 3가지 주제에 대한 좌담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원고의 사무국장이던 G가 발제를 맡기도 한 사실, ③ 원고는 잡지 시대정신 2015년 봄호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종북의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그동안 통합진보당으로 대표되는 종북세력이 2006년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투쟁,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각종 반미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반사회적 활동을 하였는데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10. 8. '이석기 사건의 교훈과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는 세미나를 주최하였고, 위 세미나에서 원고의 대표 H는 "종북세력을 추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중략) 우선, 종북세력을 '척결'해서는 안 된다. '척결'이라 함은 처벌을 비롯하여 강력한 무형의 압박을 가하여 절멸시킨다는 의미일 터인데, 이러한 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 (중략) 종북세력은 척결할 것이 아니라 고사시켜야 한다"라는 토론문을 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의 구성원들은 일관되게 '종북세력을 반대'하는 주장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프로그램 진행 당시 이루어진 앞에서의 표현들은 결국 원고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E, G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들에 기초하여 그대로 인용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고의 입장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거나 사실관계를 압축 또는 장식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주장 적시사실 ㉠ 관련 부분

위 보도에서 '원고가 받은 후원금 21억 원이 부정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부분은 국회의원 박범계가 공개한 원고의 회계자료를 인용하여 방송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 보도는 국회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던 단체에 7년 동안 21억 원 상당의 거금이 후원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원고가 그 후원금의 출처와 사용용도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면서 원고의 후원금 출처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인 점, '출처 모를', '출처가 불분명한'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부정한 돈'이라고 기재한 바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그 후원금의 출처와 사용용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한 표현일 뿐인 점, 보도의 말미에 원고의 입장 및 원고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비중 있게 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후원금이 부정한 돈이다'는 사실까지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후원금 출처와 사용용도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4 대상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자치부의 공익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다가 2012년에는 이를 받지 못하였는데 다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E가 2013년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의 사무국장 이었던 E가 청와대 행정관이 되면서 원고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실제와 다소 다르게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다시 시작된 시기가 원고 출신의 인사가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들어간 시기와 겹쳐 의혹을 받고 있다’는 주요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이로써 허위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위 보도의 주된 내용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인 원고가 정부로부터 교부받던 지원금이 중단되었다가 원고의 전직 간부가 청와대 행정관이 된 시점에 재개되었다’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함과 아울러 지원금 교부 재개에 청와대 행정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함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제5 대상기사에 대하여

(1) 언론보도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2) 강제8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5 대상기사의 원 보도는 화면의 왼쪽 상단에 “‘4각 커넥션’ 드러나나”라는 제목을 띄운 상태에서 보도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제5 대상기사의 본문 역시 A가 아닌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의 4각 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강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이티비씨가 위 방송보도를 피고 제이티비씨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제목에 “A-전경련-청와대-국정원... ‘4각 커넥션’ 드러나나”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제5

대상보도의 본문에 A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위 제목 부분은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 제이티비씨가 같은 날 아침 'A와 어버이연합의 관계, A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의 문제' 등을 지적한 이 사건 제4 대상보도를 한 상태였으므로, 어버이연합 배후에 권력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사건 제5 대상보도의 본문에 A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온라인 기사의 제목을 보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 사이의 4각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 제이티비씨 역시 오보임을 인정하고 2017. 5. 22. 이 사건 제5 대상기사의 제목을 “전경련 - 청와대 - 국정원 ‘커넥션’ 드러나”라고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 대상기사의 제목 부분은 그 자체로 허위라고 할 것이다.

- (3) 따라서 피고 제이티비씨는 이 사건 제5 대상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제이티비씨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의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며, 이행강제금의 지급도 함께 명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상기사 또는 대상보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상기사 또는 대상보도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각 손해배상청구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5 대상보도

(1) 앞서 본 이 사건 제5 대상기사의 제목 부분은,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과 사이에 4각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제이티비씨 및 편집 책임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제5 대상 기사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5 대상기사의 원 보도의 취재기자인 피고 C가 특별히 요구하여 위와 같은 제목이 게재되었다거나 제목 선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의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5 해당기사의 본문에는 원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제5 해당기사의 원 보도에서도 ‘4각 커넥션 드러나’라고 게재하였을 뿐 원고가 언급되거나 그 제목에 기재된바 없는 점, 위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제목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원 보도내용을 인터넷신문에 온라인으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기사가 작성·게재된 경위,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형식 및 표현방법, 위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사정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이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따라서, 피고 제이티비씨,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6. 5.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경향신문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제이티비씨,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제이티비씨,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경향신문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C,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제이티비씨에 대하여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 제이티비씨, B에 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1, 2, 3-1, 3-2, 3-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4~8〉 대상기사 생략

〈별지9〉 정정보도문

제목 : “A-전경련-청와대-국정원… ‘4각 커넥션’ 드러나나”라는 제목의 인터넷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2016. 5. 10. “A-전경련-청와대-국정원… ‘4각 커넥션’ 드러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위 기사의 본문 내용이 A와 무관함에도 마치 A가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과 4각 커넥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목을 게재하였으므로, 해당 기사의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1. 8. 선고 2017가단52295 판결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편집부에서 임의로 수정·편집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사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기자 B는 2017년 6월 1일자 피고 회사에 「서산시의회 A 의원, 무면허 운전 적발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보냈다. 피고 회사는 B의 기사 내용을 편집해 2017년 6월 2일자 <충청투데이>에 「서산시의원 음주운전 물의」라는 제목을 붙여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원고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을 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피고 충청투데이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3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언론사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전지방법원 2017나115086).

[판결요지]

□ 언론사의 편집 행위에 따른 위법성 판단 여부

피고 언론사는 피고 B가 작성한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편집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고, 이로 인해 독자들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 언론사에 기사를 송고한 기자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

언론기관은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보도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 기자가 진실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 피고 회사에 송고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피고 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단5229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2. B
변	론	2017. 9. 27.
판	결	2017. 11.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충청투데이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충청투데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충청투데이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서산시 시의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충청투데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충청지방 종합 일간지 신문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서산시 주재 취재기자이다.
- 나. 원고는 2016. 7. 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3%)을 하였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17. 5. 27.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 다. 피고 B는 2017. 6. 1. 피고 회사에 '서산시의회 A 의원, 무면허 운전 적발 물의'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냈다.

- 라.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별지1] 기사 내용을 편집하여 2017. 6. 2.자 충청투데이 신문 6면 좌측 하단(크기 5.5 × 5.8cm)에 '서산시의원 음주운전 물의'라는 제목을 붙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 마.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었고, 한편 네이버 카페 'C'에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기사가 옮겨 게재되었는데 위 카페의 게시판에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 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항의하자 피고 회사는 2017. 6. 9.자 충청투데이 신문 6면 좌측 하단(크기 5.6 × 3.2cm)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4]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였고, 2017. 6.경 네이버카페 'C' 운영자에게 위 카페에 게시된 글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27.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서산시의원 음주운전 물의'라는 제목으로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송고한 기사 내용 중 원고가 2016. 7.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에 대한 기사내용을 삭제하고 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기사내용을 남겨놓는 방법으로 피고 B가 작성한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편집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앞서 본 원고의 사회적 지위, 피고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기사가 편집되어 게재된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기사의 피고 회사 신문지상에서의 크기 및 위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 원고의 항의에 대한 피고 회사의 대응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언론기관은 그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보도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참조).

나. 피고 B가 [별지1] 기재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송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편집부는 피고 B가 송고한 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3> 대상기사 생략

<별지4> 정정보도문

제목 : 바로잡습니다

내용 : 본보 2일자 6면에 보도된 '서산시의원 음주운전 물의' 제목의 기사는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운전'으로 바로잡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163 판결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장기복용 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더라도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식품의 유통에 관한 보도는 공익성과 신속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 : 주식회사 A의 관리인 C 외 1명
- 피고 : 한국방송공사 외 4명

[사실관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6년 9월 8일자 <미리보는 KBS 뉴스 9> 프로그램에서 「특히 받았다는 다이어트용 식품서 비소 검출」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비소를 장기간 복용 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피고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방송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재차 방송했고,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도 게재했다. 이에 원고는 기사의 허위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기사 내용의 공익성 등을 인정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원고들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412).

[판결요지]

□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회사들의 공장 외관이 일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된 점, 제품의 비닐포장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색상이 그대로 노출된 점, 방송 직후 원고의 제품 판매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보도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르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도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163 손해배상(언) 및 정정보도
원	고	1.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C 2. 주식회사 B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2. D 3. E 4. F 5. G
변	론	2017. 11. 23.
판	결	2017. 12.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C에게 79,999,2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29,99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에게 150,567,74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00,567,740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오후 9시 'KBS 뉴스 9'의 첫머리에, 각 글자는 통상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하여 프로그램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오후 9시 ‘KBS 뉴스 9’이 방송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시 까지 원고들에게 각 1일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하고, 원고 B와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자생식물의 약리활성 및 물질구명에 대한 연구, 식품원료 개발 및 제조업,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차전자피, 발효소맥혼합분말, 다시마분말, 효모추출분말, 기타 식물혼합분말 등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위생법상 기타가공품인 ‘○○○리바(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 2) 원고 B는 천연항생제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식품첨가물 제조 및 기능성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발효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 3)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텔레비전방송 등 업무를 행하는 공영방송사업자이고, 피고 D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기자로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한 자이며, 피고 E, F, G(이하 ‘피고 경찰관들’이라 한다)는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수사를 담당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제보 및 수사 등

- 1) 피고 E는 2016. 6. 중순경 서울△△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인터넷과 한의원에서 건강식품, 비만치료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며 이 사건 제품과 제조일자, 성분, 유통기한, 제조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은색비닐에 포장된 환제(당엔솔라, 다이어트제품, 코골이제품)를 임의제출 받고, 2016. 6.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각 제품의 성분분석 및 약독물분석 등을 감정 의뢰하였다.
-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7. 7. 위 각 제품들에서 약독물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약독물감정서를 회신하였고, 2016. 7. 12. 이 사건 제품에서 비소가 2.8mg/kg 검출되었으며, “식품공전에는 기타가공품의 비소에 대한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비소는 개미독 및 살충제로 사용되고 섭취 시 소변감소, 단백뇨, 빈혈 및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삼산화

비소의 치사량은 약 120mg임”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식품감정서(이하 ‘이 사건 2016. 7. 12. 자 식품감정서’라고 한다)를 회신하였다.

- 3) 피고 E는 2016. 8.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회신에 기초하여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6. 8. 3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담당분석관 민승식과 통화하여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에 관하여 문의한바, “비소는 유기비소와 무기비소로 구분되며 검사결과 2.8mg/kg의 양은 비소총량(음성기준 0.03mg/kg)을 나타낸 것으로, 유기비소와 무기비소를 구분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따로 구분하지는 못하였고, 비소 섭취량이 100% 몸에 축적되는 것은 아니나, 유해중금속으로서 한번에 120mg이 치사량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 E는 같은 날 이 사건 제품에서 비소 함량이 2.8mg/kg으로 검출되었고, 환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³²⁾ 위반 및 제10조 제2항 위반³³⁾으로 범죄인지 하였다.
- 4) 피고 E는 2016. 9. 2. 이 사건 제품 등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피의자의 특정, 식품제조, 건강식품제조 인허가 여부의 확인, 이 사건 제품과 미표시 제품들을 제조·판매한 거래량과 매출내역 확보, 제품에 사용된 재료와 제조량 및 판매량 확인 등을 위해 B의 본사, 지사, 공장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하였고, 2016. 9. 5.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원고 회사들의 공장, 사무실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피고 G, F는 2016. 9. 7. 이를 각 집행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제품 및 이 사건 제품의 프리미엄 제품(○○○리바 프리미엄), 식품제조 관련 자료, 이 사건 제품의 원료, 매입매출 현황 자료 등을 압수하고 이 사건 제품을 압류하였다.
- 5) 피고 E는 2016. 9. 8. 위와 같이 압수한 이 사건 제품 및 ○○○리바 프리미엄 제품 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시 감정의뢰를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10. 4. 이 사건 제품 샘플 2개에서 비소 2.7mg/kg, 2.4mg/kg이 각 검출되었고, ○○○리바 프리미엄에서 14.3mg/kg이 검출되었으며,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다시마 분말에서 46.5mg/kg, 건조다시마에서 39.6mg/kg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식품감정서(이하 ‘이 사건 2016. 10. 4. 자 식품감정서’라고 한다)를 회신하였다.
- 6) 피고 E, G는 2016. 9. 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소 함량이 2.8mg/kg 함유된 이 사건 제품을 B가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해식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기준과 유통 중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 9. 13. 이 사건 제품은 A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32)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3) 제10조(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가공품에 대한 비소 기준은 없으나, 비소는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에 널리 분포하는 물질로 해당 제품의 원료 성분 배합비 등을 고려할 때, 원료로 사용된 다시마분말 등에서 유래된 비소가 최종 제품에서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소가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7) 피고 E, G는 2016. 10. 9. 비소에 대한 인터넷 검색 자료를 확인하고,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수사보고 하였으며, 피고 G는 2016. 12. 28. A, 원고 B 및 그 각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사건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제품 관련 각 방송 보도

-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6. 9. 8. 20:22경 '미리보는 KBS 뉴스 9' 프로그램의 '단신뉴스'편에서 「특히 받았다는 다이어트용 식품서 비소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특히까지 받았다는 다이어트용 식품에서 비소가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고, 같은 날 21:18경 방송된 'KBS 뉴스 9' 프로그램에서 「단독! “다이어트 특효” 홍보하더니...비소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D 기자의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방송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고 한다), 같은 날 21:32경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앵커 멘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 및 영상을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뉴스'에 게시하였다.
-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6. 9. 8. 23:58경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단독! “특히까지 받았다는 다이어트용 식품 비소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방송하였고, 2016. 9. 9. 06:20경 '뉴스광장 1부' 프로그램에서 「단독! “특히받은 다이어트용 식품서 비소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재차 방송하였으며, 2016. 9. 9. 06:29경 이 사건 방송 보도 중 앵커 멘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 및 영상을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뉴스'에 게시하였고, 2016. 9. 9. 07:15경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특히까지 받았다는 다이어트용 식품 비소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방송하였으며, 2016. 9. 9. 07:33경 '뉴스광장' 프로그램의 '오늘의 주요 뉴스'편에서 「다이어트 식품, 발암물질 '비소' 검출...경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특히를 받았다는 다이어트용 식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경찰이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제품 회수에 착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2016. 9. 9. 09:50경 '930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히까지 받았다는 다이어트용 식품 비소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다시 방송하였다.
- 3) 이 사건 방송보도의 주요한 내용은 이 사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사건 제품에서 전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소가 제품 1kg당 2.8mg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제품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5. 11. 이 사건 제품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질의한 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는 다시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시마에서 검출된 비소는 유기비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이 있었는데,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는 무기비소가 아닌 유기비소로 추정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과장 H는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량이 2.8mg/kg이고, 이 사건 제품의 1회 섭취량이 11g(5.5g × 2포)이므로, 설사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유기비소가 아닌 무기비소라고 할지라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유독, 유해물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A의 회생절차 개시 등

A는 2017. 10.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인 C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7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39, 40, 4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6, 8, 11,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대상이 된 제품에 관한 사업장 위치, 제품의 종류, 판매가격 및 유통 방식 등을 보도하였는바, 그 내용과 표현의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유통 등에 종사하거나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경찰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언급한 제품이 원고 회사들이 개발·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제품임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나) 비소는 곡물, 야채, 육류, 해산물 등 식품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식품에 존재하는 비소는 대부분 독성이 있는 무기비소가 아닌 유기비소이고,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는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다시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시마에는 비교적 높은 함량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으나 대부분 독성이 거의 없는 유기비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의 함량 2.8mg/kg은 자연상태의 다시마에서 일반적으로 검출되는 비소 함량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므로, 이 사건 제품을 일반인이 복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제품에서 전혀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고, 이 사건 제품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는 허위의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6조 또는 민법 제764조 등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1.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방송보도는 이 사건 제품의 제품명을 어디에도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영상 모두 철저히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이 사건 방송보도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시청자가 원고 회사들 및 이 사건 제품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100% 유기비소라는 점이 입증된 바 없고, 다시마에는 무기비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유기비소 역시 독성이 있는 유해물질이므로, 유기비소가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라) 설령 이 사건 방송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루어진 무렵에 이 사건 방송보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기한 정정보도청구 외에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위 청구에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아래에서는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보아 판단한다).

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8 내지 24,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A의 전남 □□ 소재 공장의 외관이 일부분(건물 외벽의 광고판)만 모자이크 처리된 채 그대로 나타난 점, ② A는 주식회사 ◇◇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농수산홈쇼핑 등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농수산홈쇼핑으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았고, A는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농수산홈쇼핑에 보내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이 사건 제품의 일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 겉포장 박스와 내용물(환)이 들어있는 비닐포장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색상이 그대로 노출된 점, ④ 이 사건 방송보도 이후 유사한 내용의 상당수의 기사가 게시되었고, 이 사건 제품의 실명 및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제품의 실명 디자인이 나타난 기사가 게시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명을 키워드로 하여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보도를 링크한 블로그 글들도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의 이 사건 제품 관련 문의게시판에 이 사건 방송보도에 나온 제품이 이 사건 제품임을 알리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들과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인 또는 이 사건 제품을 접해 본 사람이라면 이 사건 방송보도가 원고 회사들이 제조·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의 대상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주요한 내용이 '이 사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사건 제품에서 전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소가 제품 1kg당 2.8mg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임은 앞서 보았는바, 이 사건 방송보도는 원고 회사들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보도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수산물화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비소는 공기(먼지)·토양(암석)·물(해수, 지하수) 등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

소로 인한 인체 독성의 대부분은 무기비소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무기비소는 발암물질에 해당하나 유기비소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지는 아니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소 화합물 중 유기비소는 무기비소보다 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소는 다양한 화학종의 형태에 존재하는 화합물로 그 형태에 따라 독성이 달라 경구 투입 시에 유발되는 인체 유해성은 위장액 및 식품 등의 pH, 식품 내 오염 농도,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제품에 함유된 비소는 주로 원료인 다시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마의 무기비소 함량은 개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조류에 함유된 무기비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시마(63건)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⑥ 비소가 함유된 식품의 위해성 평가는 총 비소 및 무기비소의 함유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품에 함유된 총 비소 함량만으로는 제품에 함유된 비소의 인체 유해성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비소가 2.8mg/kg 함유된 이 사건 제품의 섭취로 인한 총 비소의 위해도는 WHO가 정한 인체노출안전기준(50 μ g/kg b.w/day) 대비 1.0%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체중 60kg의 성인이 비소가 14.3mg/kg 검출된 이 사건 제품의 프리미엄 제품을 1일 2포(1포 5.5g) 복용(매일 0.1573mg의 비소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함유된 비소의 위해도는 WHO가 정한 인체안전기준(50 μ g/kg b.w/day) 대비 5.2%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5. 11. 이 사건 제품과 관련된 식품 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유독, 유해물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발암물질인 무기비소인지 여부와 이 사건 제품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지 여부(즉, 이 사건 제품의 위해성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보도는 이 사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고, 이 사건 제품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 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먼저 이 사건 방송보도의 공익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는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 D가 원고 회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한국방송공사, D가 원고들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 (2) 나아가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D는 2016. 9. 2.

피고 E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2016. 7. 12.자 식품감정서를 전달받고,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으로부터 “기타가공품의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1kg당 10mg 이하이지만 비소에 대한 기준치는 없다. 캡슐류의 경우에는 비소에 대한 기준치가 1kg당 1.5mg 이하이고, 식용유지류의 경우에는 1kg당 0.1mg 이하인데, 영양용 조제식 등은 비소가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2016. 7. 12.자 식품감정서에는 이 사건 제품에서 비소가 2.8mg/kg 검출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식품공전에는 기타가공품의 비소에 대한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비소는 개미독 및 살충제로 사용되며 섭취 시 소변감소, 단백뇨, 빈혈 및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삼산화비소의 치사량은 약 120mg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 D는 2016. 9. 7.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I를 찾아가 비소의 유해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I로부터 “비소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장기간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 폐암, 피부암, 방광암 등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 인터뷰 내용을 이 사건 방송보도에 삽입한 점, ④ 피고 D 2016. 9. 7. 피고 경찰관들이 A의 전남 □□ 소재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 동행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의 기초가 되는 취재 및 촬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A의 생산팀장인 J로부터 비소가 다시마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해명을 듣고, 그 인터뷰 내용(‘다시마’ 부분은 비공개 처리)을 이 사건 방송보도에 삽입한 점(피고 한국방송공사, D는, 원고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A의 생산팀장인 J는 약 1시간 동안 경찰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필요한 답변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다시마에서 나온 것이라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의 2013. 8. 23.자 ‘해조류 식품에 존재하는 위해인자 무기원소 화학종 분석법 기술개발’ 보고서(올가 제3호증)에 의하면 4개의 다시마 시료 중 1개의 시료에서 무기비소가 검출된 점, ⑥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결과, 국내외 관련 논문 및 해조류 중 비소 함량 연구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시마에는 0~77mg/kg의 무기비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 확인된 점, ⑦ 일부 해조류에는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특히 건조 다시마 분말에서는 무기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 호주/뉴질랜드,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는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한 총 비소 및 무기비소 함량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유기비소의 경우도 완전히 독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유기비소의 경구 노출시 신장 및 방광에 독성 영향을 미친다거나 유기비소가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DNA 가닥 절단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설사와 신장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도 있는 점, ⑨ 국내에서 아직 식품의 비소 오염에 대해 위해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자료도 있는 점, ⑩ 이 사건 제품의 경우 매일 2포씩 꾸준

히 먹도록 권장되는 식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해조류에 비해 함유된 비소의 섭취량이 증가되어 그 유해성 역시 가중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⑪ 현재에도 이 사건 제품에 함유된 비소가 유기비소인지 무기비소인지를 분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무기비소인지 유기비소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소의 유해성에 대하여 기재된 이 사건 2016. 7. 12.자 식품감정서를 받아본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문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비소의 유해성에 관하여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에 함유된 비소가 설령 다시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무기비소라고(적어도 무기비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방송보도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도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 한국방송공사, D가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는 주로 원료인 다시마에서 유래된 유기비소로 인체에 무해한 것임이 밝혀졌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유기비소인지 무기비소인지 여부나 인체에 완전히 무해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 1) 피고 한국방송공사, D는 허위의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원고들의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 및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 D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경찰관들
 피고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험성과 오보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제보자(원고 B의 고문으로 일하는 L에 대한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K가 제보자인 것으로 의심된다)의 청탁을 받고 원고들의 사업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제보자가 제출한 제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무고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면서 비소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나 연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사를 진

행하였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내사 사실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16. 7. 12.자 및 2016. 10. 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식품감정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도 피고 D에게 누설함으로써 피고 D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도록 하였고(그 과정에서 피고 D가 기자 신분도 밝히지 아니하였고, 취재 사실도 비밀로 하였다), 원고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을 압류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근거로 기재된 압류확인서를 부착하였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압류 해제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원고 B의 상무이사 M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담당조사관이 아닌 피고 G가 신문과정에 끼어들어 방해함으로써 M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2016. 9. 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하면서는 사건개요에 “2016. 9. 8. 21:18분 KBS 보도자료 참조”라고 기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영향력까지 악용하는 등으로 부당한 수사를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질의 결과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다시마 분말 등에서 유래된 비소가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비소가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수사 중 위해 우려 식품 등이 발견 되면 불필요한 소비자 우려 및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처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의 비소 검출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는바, 피고 경찰관들은 피고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들의 피의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허위의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 따라서 피고 경찰관들은 피고 한국방송공사, D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한국방송공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한국방송공사,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위법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제품 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유해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에 따라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피고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지능팀은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부서라

고 하고 있다), ② 피고 경찰관들이 피고 D의 취재 협조 요청에 응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③ 피고 경찰관들은, 원고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및 피의자 신문서에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고 G는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원고 B의 대표이사인 N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여 원고 회사들은 어떠한 범죄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F가 A의 접견실에서 생산팀장에게 영장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서 비소가 나왔다고 설명하였다고 하고 있어, 압수수색 또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 경찰관들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A의 직원들은 피고 D 등 피고 한국방송공사 직원들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경찰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하면서는 사건개요에 “2016. 9. 8. 21:18분 KBS 보도자료 참조”라고 기재한 것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요성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 경찰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⑤ 피고 G는 M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진술을 주도적으로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조사자가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마디 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두고 피고 G가 M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⑥ 피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제품에 부착한 압류확인서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상 발생한 단순한 오류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⑦ A와 원고 B가 2016. 9. 12.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건 제품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2016. 9. 2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상 기타가공품에 대한 비소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는 그 원료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이를 피고 경찰관들에게 전달하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경찰관들로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감정 결과를 기다린 후 그 감정 결과를 받은 직후인 2016. 10. 5.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 경찰관들의 업무처리를 두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압류 해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⑧ 비록 식품위생법상 기타가공품에 대한 비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제품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소가 유독유해 물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 경찰관들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위반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피고 경찰관들은 유기 비소 및 무기비소의 유해성 여부에 관한 자료들을 검색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다), ⑨ 이

사건 제품의 비소 검출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경찰관들이 제보자의 청탁을 받고, 피고 한국방송공사, D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경찰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한편,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가 유기비소인지 무기비소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제품이 완전히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 진행하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피고 경찰관들에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 G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그 의견서에 원고 회사들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비소는 원료로 쓰인 다시마에서 유래된 무기비소로 무해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모두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들의 사회적 평가 및 명예가 훼손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 경찰관들이 약간만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들의 피고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생활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5072685 판결

사생활 공개가 당사자 및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공익성이 있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문화일보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4월 1일자 <문화일보>에 과거 북한 공작원이었던 원고가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원고의 딸이 북한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원고는 위 기사로 인해 북한에 있는 자녀의 생명이 위험하게 됐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고 피고는 기사를 내렸으나, 이미 위 기사를 참고한 다른 언론에 의해 해당 사실이 공개된 후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보도로 원고와 원고의 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으며, 결국 자녀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 자녀들의 생사가 불명하게 되는 중대한 위험이 초래돼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있으나, 피고 역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보도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3,000만 원을 판결했다. 이후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311).

[판결요지]

□ 사생활 침해 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도는 비공개 증언이 북한까지 유출돼 증언자 및 가족의 안위에 위험을 초래한 문제점을 알리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를 함에 있어 증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그 증언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도할 필요성은 없으며 위 보도로 인해 증언자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15가단507268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문화일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2017.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3년 귀순한 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인 B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2013. 12. 6.자 3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공개로 증언하였다.

나. 원고의 딸과 아들이 북한 회령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고의 딸이 2014. 1. 6. 원고에게 전화하여, “1월 3일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공장 담당 보위지도원과 도 보위부 반탐처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남쪽에서 재판에 나갔던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위부 직원들이 원고의 딸에게 “네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이름을 바꾸고 재판에 나가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 만약 아버지와 연락이 되면, 앞으로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너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위협했다고 말하였다.

- 다. 원고는 딸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후, 2014. 1. 14. 위 항소심 재판부에 ‘원고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을 북한 보위부 반탐과에서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에 있는 딸이 보위부 반탐 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정보유출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북의 지식들이 원고와 통화한 것이 밝혀져 처벌받을 것 같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문화일보’라는 제호로 석간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로, 2014. 4. 1.자 신문을 통하여 원고의 나이와 성별, 북한에서의 경력, 딸과 아들의 나이 등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적사항과 원고가 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사실,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 외부에 누설되어 북한의 딸이 북한의 보위부 반탐처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북한의 딸과 통화한 사실, 원고가 이와 같이 자신이 비공개로 증언한 사실이 누설되어 북한의 딸이 위협에 처하게 된 사실을 재판부에 탄원하였던 사실을 위 탄원서의 사진을 첨부하여 보도하였다(이하 위 기사와 보도를 ‘이 사건 기사’,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 마. 이에 원고는 피고 소속 사회부 부장 C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증언을 한 사실과 이로 인해 원고의 딸이 북한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북한 정보당국에게는 원고가 딸과 통화한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는 셈이 되어 딸과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는 위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인터넷판에서는 이 사건 기사를 내렸지만, 이미 뉴데일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다른 언론에서도 위 기사를 보고 기사화하는 바람에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 바. 이후 북한에 있는 원고의 아들, 딸의 소재나 생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와의 연락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에 있는 딸과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딸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원고 자녀들의 생사·소재도 파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도와 원고 자녀들의 생사·소재 파악의 불능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의 발생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을 공개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이 사건 보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인 원고의 비공개 재판에서의 증언이 북한에까지 유출되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협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 유출과정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

다는 공익적 필요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인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고,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으며,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공개 증언이 북한에까지 유출되어 증언자 및 그 가족의 안위에 위험을 초래한 문제점을 알리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보도를 함에 있어 증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그 증언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고, 위 보도로 인하여 북한에 있는 증언자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50,000,000원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자녀들의 생사가 불명하게 되는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있으나, 피고도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소송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금액은 30,000,000원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5가단5023195 판결

지방변호사회 감사 후보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채널에이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1월 6일자 <박정훈의 뉴스 토크> 프로그램에서 「막말 변호사가 변호사회 감독?」이란 제목으로 서울지방 변호사회 감사 후보자인 원고가 마트에서 70대 손님에게 '늬은이가 빨리 죽어야지' 등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피고는 같은 날 <채널에이 종합뉴스>에서도 「막말 변호사 감사 도전장」이란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항소해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4549).

한편, 원고는 위 소 제기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심리에 2회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된 바 있다(2015서울조정1856·1857).

[판결요지]

□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방송은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선출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마트 사건은 그 혐의 사실이 폭행과 모욕으로 비교적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이미 제1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 회사 소속 기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두텁게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5가단502319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채널에이 2.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3.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청구취지 금액을 후에 거둬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모두 부동의하였다. 따라서 당초의 청구취지에 따라 심판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등 참조).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에이'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이다(이하 '피고 채널에이'라고 한다). 피고 B는 변호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1 보도에 출연하여 발언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1. 6.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제93대 임원선거에 감사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후보등록을 마쳤다.
- 다. 피고 채널에이는 2015. 1. 15. '박정훈의 뉴스 토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화면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 이러한 방송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³⁴⁾ 그 뒤 이 사건 제1방송은 ‘유튜브’ 사이트에도 게시되었다.³⁵⁾

진행자 : 자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막말변호사가 변호사회를 감독한다? 자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C 기자 어떤 일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C 기자 : 네. 돌아오는 26일에 서울변호사회 감사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한 변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막말변호사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막말과 언행을 했는지 들어보시면 좀 황당하실텐데요. 지난해 5월 △△구의 한 가게에서 74살 노교수가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을 때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지’ ‘짜구려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렇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옆구리를 가격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데요. 이 변호사가 2007년 8월에는 법원여직원과 소송서류 보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을 퍼붓고 자신이 지원장과 1년 선후배로 아는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이 이 내용을 녹음을 해서 법원 내부전산망에 공개해서 법원행정처와 노조가 징계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진행자 : 뭐 전후 사정이 좀 있었겠죠. 저런 말까지 나올 때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속하는 변호사께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B 변호사, 저런 분들 많습니까?

B 변호사 : 아 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많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진행자 : 뭐 실제로 많이 안보셨을텐데. 그렇다면 저런 분이 지금 감사로 나오는게 문제인데, 감사가 어떤 일을 하는거고 저런 분이 자격이 있는건지 궁금한데요.

B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는 회비의 집행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회부 수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직책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한데 글썄요. 도덕성이 중요한 감사 자리에 입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구요. 또 하나는 제가 관련된 선관위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감사 후보가 다섯 분이 계신데 기호가 3번이더라구요 이분께서. 죄송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안되나. 어쨌든 근데 공약도 내부에서 다른 분의 공약은 이메일로 다 왔는데 이분의 공약만은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관위 의결 통해서 홍보물로 발송하기 적절치 않다고 해서 가렸는데 이런 걸로 볼 때 내부적으로 어떤 자정노력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또 하나는 현직 협회장과의 알력이 있어서 부각되고 음모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감사를 선출할지는 투표결과를 지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취재가 된다면 저희가 따로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변호사회,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전화로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34)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115/69111932/1>

35) <https://www.youtube.com/watchpBjhjWWhg>

서울변호사회관계자(전화통화 목소리) : 과태료이상 징계를 받으면 임원은 자격을 상실해요. 임원이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입후보 관련해서는 그런 제한은 있지 않아요. (감사 후보가) 형사사건이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죠.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보통 회계쪽을 감사가 맞지요. 정책적으로 적당한 집행이나 의견은 내실 수 있죠. 회의와 재정집행에 관해 하시는거죠. (보수는) 한 달에 백만 원 전후일거예요.

D 기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괜찮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국민들은 실질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저런 절차나 규정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 피고 채널에이는 같은 날 종합뉴스를 방영하면서 별지2 기재와 같은 화면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방송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하고, 제1방송과 제2방송을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통칭한다), 이러한 방송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진행자 :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벌금과 과태료처분까지 받았지만 후보 등록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E 기자입니다.

E 기자 : 26일로 예정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 선거. 두 명의 감사를 뽑는 선거에 70대 노인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해 논란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편의점에서 74살의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지' '짜구려 아파트에 사는 놈'과 같은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휴대폰으로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과 난동을 피워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원여직원과 소송서류 보관 문제로 벌인 언쟁까지 논란이 되면서 2008년엔 대한변협에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사회의 고위 임원으로서 재정과 업무집행 등을 감독하는 감사 후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가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채널에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피해자인 서울대 교수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과태료처분 역시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감사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①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 중 원고가 7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 등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다. 그럼에도 피고 채널에이는 방송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가사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극적인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인터넷에까지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대외적 평판을 증대하고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물질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파산관재인 해임 등에 따른 일실수익으로 100만 100원, 위자료로 700만 원³⁶⁾을 청구한다.

- ② 피고들은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범죄 혐의 사실을 입수하고 원고의 사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사 또는 은둔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원고에 막말을 일삼고 노인을 폭행하며 난동을 피우는 인간으로 인식하도록 왜곡하였으며, 원고의 내밀한 사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각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로 1,2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방송에서 보도된 사실관계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방송은 원고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적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임원 선거 입후보 등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관련된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6. 9. 23. 서울 △△구 ☆☆동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하 ‘편의점 사건’이라 한다)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2007. 12. 21.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07고정119 판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8. 4. 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이 법원 2008노38 판결), 상고심에서도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3146 판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공무원에게 전화를 통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당시 원고와 통화를 하였던 법원 공무원이 원고의 욕설과 폭언을 녹취한 파일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공개하였고,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이하 ‘서산지원 사건’이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원고가 편의점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산지원 사건까지 일으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8년 8월경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와

36) 원고의 2015. 6. 29.자 청구원인보충·변경신청서 제57면에 ‘700만 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10.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39 판결), 항소심도 2012. 2.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누44346 판결), 상고심도 2012. 6. 28.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두7349 판결).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징계의 근거가 된 변호사법의 규정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다.

- 3) 원고는 2014. 5. 8. 서울 △△구 소재 ○○○○아파트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73세)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하 '마트 사건'이라 한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6. 9.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2016. 2. 12.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4고정2705 판결),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2016. 11. 10.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 법원 2016노751 판결),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9477호).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3, 제24호증의 18, 19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할 것인바,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사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마트 사건에 관한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고, 방송의 내용을 살펴봐도 폭행이나 폭언 등을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편의점 사건 및 서산지원 사건에 관한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도 앞서 본 각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에 의한 보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다(변호사법 제1조, 제2조).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지역의 1만 1천여 명의 변호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대의 지방변호사회로서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감시하는 감사의 선출 과정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그것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사리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사건 각 방송의 주된 취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와 같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감사 선출에 있어 도덕성에 의심이 가는 후보의 출마에 아무런 내부적 자정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방송 당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가 공개되는 등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였다. 이는 이 사건 제1방송 첫머리의 “자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막말변호사가 변호사회를 감독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데요.”라는 부분과 피고 B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의 역할을 언급한 부분, 이 사건 제2방송의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사회의 고위 임원으로서 재정과 업무집행 등을 감독하는 감사 후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가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라는 부분 등 전체적인 보도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보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각 방송 중 마트 사건 및 서산지원 사건에 관한 부분에 원고의 폭언과 욕설 내용이 드러나 있으나 이는 기소된 공소사실 및 녹취된 내용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서울지방법원 호사회 감사직에 입후보한 원고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그밖에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경멸적 표현 또는 추측성 보도 등은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방송의 말미에 원고의 반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은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지1, 2 기재 각 화면의 그림과 제목 등 일부가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듯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과 전반적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화면만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소의 수사적 과장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함께 방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에 의한 보도가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2,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는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각 방송은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선출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자정노력을 촉구함과 아울러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보도에 적시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의 주된 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 ② 이 사건 각 방송 중 일부 내용에 원고의 욕설과 폭언 등이 드러나 있으나 이는 기소된 공소사실 등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경멸적 표현 등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 말미에 원고의 반론을 함께 방영하는 등 그 표현내용·방법 등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에 드러난 원고의 언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그 보호가치 등이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서산지원 사건과 편의점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소송 등의 경과에 관하여는 이미 2008년경부터 여러 언론사를 통하여 보도가 되어 왔다. 한편 피고 B의 이 사건 제1방송 발언 내용 중 '원고가 감사 후보들 중 기호 3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서울지방법원 사회의 감사후보자 등록공고문에도 원고가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더라도 감사 입후보자 중 손쉽게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마트 사건은 그 혐의사실이 폭행과 모욕으로 비교적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이미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달리 피고 B나 피고 채널에이 소속 기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특히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내밀한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에 의한 보도가 사생활에 관한 위법한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방송내용 생략

〈별지2〉 방송내용 생략

경찰의 언론브리핑과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맥락상 큰 차이가 없는 패널의 발언은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 : A
- 피고 : 대한민국 외 2명

[사실관계]

경찰서장인 피고 B는 2015년 9월 1일 기자들을 상대로 인질 사건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범인이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원고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서 벌인 범행'이란 취지로 말했다. 변호사인 피고 C는 MBN <빅5>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원고와 범인 사이를 '약혼관계'로 표현했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B의 경과실이 인정되는 언론브리핑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에만 손해배상 300만 원을 판결했고, B와 C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했고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17나60436).

[판결요지]

□ 범죄사실에 관한 언론브리핑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에 관한 언론브리핑이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 있고 원고와 범인 사이의 관계가 인질사건의 범행동기와 연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반인으로서 범죄피해자에 해당하고, 원고와 범인의 관계가 중요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언론브리핑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B가 언론브리핑을 할 당시 여러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하고 있어 범인 검거 후 수사기관의 브리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질사건 발생 및 체포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B가 언론브리핑에서 사용한 표현행위가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인 중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B의 경과실에 의한 언론브리핑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언론브리핑에 근거한 패널의 발언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피고 C는 패널로서 인질사건의 경위를 경찰의 공식적인 언론브리핑을 토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범인 사이를 '약혼관계'라고 표현했다. 이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이란 경찰의 언론브리핑 내용과 표현상의 차이로 보일 뿐 전체적인 발언 내용이 B의 언론브리핑이나 기존 언론보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

사	건	2016가단7155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대한민국	
		2. B	
		3. C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B는 연대하여 119,635,890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19,635,8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C는 49,635,890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19,635,8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06:05경 △△경찰서 ☆☆지구대에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이 가게로 찾아와

허리띠로 손목을 묶은 뒤 협박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의 영업장소로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던 중 범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였으나 검거하지는 못하였다.

- 나. 범인은 2015. 9. 1. 07:00경 원고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자 부엌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원고의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였다. 경찰관들은 범인을 설득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09:35경 범인을 체포하였다.
 - 다. 피고 B는 △△경찰서장으로서 2015. 9. 1. 10:30경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피의자가 현금을 빌려주면서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별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라. 피고 C는 변호사로서 2015. 9. 4. MBN의 '빅5'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여 “C 변호사. 이 50대 남성과 치정관계에 있는 그 여성.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기에 그 여성의 초등학교 아이. 그 죄 없는 아이를 흥기로 위협하고 인질극을 벌인 겁니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둘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사이였는데 그 남학생의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카페를 하면서 오늘 체포되었던 피의자를 알게 되면서 약혼관계로 발전했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보니까 돈도 빌려주게 되고,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셨나 봐요. 돈도 일정 부분 남자가 빌려줬고 이런 돈관계도 얽혀 있고 결혼관계도 얽혀 있었는데 최근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오늘 체포된 위씨가 의심을 하게 된거죠(이하 생략).”이라고 말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피고 B는 범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바탕으로 범인과 원고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원고가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원고가 범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는 언론브리핑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과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초동수사를 맡은 경찰공무원들이 원고의 레스토랑에서 범인을 놓친 후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인질사건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C는 변호사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원고와 범인 사이를 ‘약혼관계’로 표현하거나 ‘원고가 돈이 필요하였나 봐요’, ‘둘 사이가 아무래도 약혼관계였기 때문에 집에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던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경찰서장으로서 2015. 9. 1. 10:30경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피의자가 현금을 빌려주면서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벌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조사나 사실확인 없이 범인의 진술과 메모, 범인과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의 초동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언론브리핑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조사나 사실확인 없이 범인의 진술과 메모, 범인과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의 초동수사 내용만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언론브리핑을 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남녀관계와는 달리 결혼이라는 특별한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것인데 피고 B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언론브리핑을 하였다.
- ② 을나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범인이 작성한 메모에 ‘A 너는 나와 결혼 하자고 하면서 3천만 원 이상 착취하고 또 다른 남자와 만나’라는 기재가 있거나 원고와 범인 사이의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가 전 남편과의 결혼반지를 범인에게 생일선물로 리모델링 해서 줄까 생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 설사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금전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범인이 원고에게 실제로 언제, 얼마의 금원을, 어떤 경위로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분명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조사나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또는 원고와 범인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범죄사실에 관한 언론브리핑이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이 있고 원고와 범인 사이의 관계가 인질사건의 범행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점, 범인 체포 약 1시간도 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급박하게 원고와 범인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해야할 만큼 이 사건 인질사건, 더구나 원고와

범인의 관계가 중요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가 현금을 빌려주면서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벌인 범행'이라는 표현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굳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범인의 체포 경위나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알릴 수는 있고 범인의 주장임을 전제로 범행동기를 설명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B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 B가 언론브리핑을 할 당시 여러 언론기관에서 사건현장 등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어 범인 검거 후 수사기관의 브리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질사건 발생 및 체포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나름대로 범인의 진술이나 메모, 범인과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언론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B가 언론브리핑에서 사용한 표현행위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하고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인 중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B가 이 사건 언론브리핑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경과실에 의한 언론브리핑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초동수사를 맡은 경찰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범인을 놓친 후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인질극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인질범 진압과정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원고의 영업장소에 나타난 범인을 발견하고 급박하게 추격을 전개하여 범인을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경찰이 범인검거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신속하게 원고의 아파트로 달아난 범인의 소재를 확인하고 부역갈을 든 범인과 대치를 하면서도 범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인명피해 없이 범인을 검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이 원고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직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범인을 제때 검거하지 못하였으며 인질범 진압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위자료 : 피고 B의 언론티핑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인질사건의 발생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언론티핑의 경위와 내용, 표현방법, 그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2) 원고의 상해치료비 1,582,490원, 원고의 정신과 치료비 4,666,200원, 원고의 아들 병원비 1,387,200원 : 원고는 2015. 9. 14.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자신의 병원치료비를 합계 6,248,690원을 지출하였고, 2015. 9. 19.부터 2016. 1. 6.까지 사이에 자신의 아들 치료비로 합계 1,387,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나 원고의 아들이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범인을 상대로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5, 11 내지 15호증)만으로는 피고 B의 언론티핑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원고의 영업손실 1,200만 원 : 원고는 피고 B의 언론티핑과 그에 따라 후속 언론티핑으로 인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5. 9.부터 2017. 4.까지 임대료로 1,2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 20개월)을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임대료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언론티핑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인질사건 이후 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언론티핑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피고 B가 언론티핑을 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3.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변호사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원고와 범인 사이를 ‘약혼관계’로 표현하거나 ‘원고가 돈이 필요하였나 봐요’, ‘둘 사이가 아무래도 약혼관계였기 때문에 집에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던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피고 C는 기본적으로 피고 B의 언론브리핑과 그 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패널로서 그 동안 알려진 인질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발언내용이 피고 B의 언론브리핑이나 기존 언론보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② 피고 C로서는 인질사건의 담당 경찰서장인 피고 B의 공식적인 언론브리핑을 신뢰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범인 사이를 '약혼관계'라고 표현하여 피고 B의 언론브리핑 내용과 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이라는 언론브리핑 내용과 표현상의 차이로 보일 뿐 전체적인 맥락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③ '원고가 돈이 필요하였나 봐요', '둘 사이가 아무래도 약혼관계였기 때문에 집에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던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피고 B의 언론브리핑이나 기존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추측성 표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다.

6. 결 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명권 침해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250681 판결

교회 장로들의 실명과 징계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 보도한 것은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

- 원고 : A 외 14명
- 피고 : 국민일보 주식회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인 피고 B는 2016년 8월 15일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교회 질서 문란케 한 장로 16명 출교·제명키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실명을 적시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성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교회 재산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로서, 이 사건 교회 원로목사인 C의 횡령 사실을 고발했고 C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성명권 침해 행위를 인정해 3,000만 원(피고들에게 각 2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원·피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각 항소를 기각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7125). 이후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교회 장로 신분인 원고들의 성명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이기는 하나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교회 내에서 원고들에 대해 이뤄진 징계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종전부터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시위하는 등으로 주위에는 이미 널리 알려졌더라도 종합 중앙일간지인 사건 신문에 실명과 징계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의 실명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음은 물론, 피고들의 실명 보도 후 뒤따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원고들의 실명이 그대로 보도돼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의 시위 행위와 별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신문기사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해 징계내용을 보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문

사	건	2016가단250681 손해배상(언)
원	고	A 외 14명
피	고	1. 국민일보 주식회사 2. B
변	론	2017. 5. 18.
판	결	2017. 6. 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교회 재산에 대한 치리(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장로들이고, 피고 국민일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종합일간지인 '국민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교회 원로목사인 C에 대하여 C가 담임목사시절에 교회로부터 수령한 특별선교비 600억 원과 퇴직금 명목 200억 원,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각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2016. 6. 30.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이 사건 교회 당기위원회는 원고들의 고발행위가 '교회의 기능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와 '악의적인 언동 등으로 교회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14. '출교'와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하였다.
- 라.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인 피고 B는 2016. 8. 15.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교회 질서 문란케 한 장로 16명(☆☆☆ 소속) 출교·제명키로'라는 제목 아래 원고들의 실명을 적시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문기사'라고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판단기준

(1)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이나 두문자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법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성명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있으며 그 표현내용,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1) 원고들이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이기는 하나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2) 교회법상 출교는 교회로부터 퇴출되는 것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되는 징계이고, 제명은 장로로서의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평신도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허용되는 중징계인 점, (3) 이 사건 교회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4) 이 사건 신문기사에서 피고들은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악의적인 언동으로 교회에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교회측의 징계이유를 가감 없이 그대로 적시한 반면 원고들의 입장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게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5) 피고들은 원고들이 종전부터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시위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이미 널리 알려졌으므로 이 사건 신문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일부 원고들이 교회측에 계속 이익을 제기하면서 시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일간지인 이 사건 신문에 실명과 징계내용이 보도되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의 시위 행위와 별개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내용과 실명보도까지 용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신문기사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징계내용을 보도한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문기사 보도경위 및 내용, 표현방식, 위법성의 정도, 이 사건 신문이 종합 중앙일간지로서 전국에 배포되고, 피고들의 실명 보도 후 뒤따라 다른 언론지에서도 원고들의 실명이 그대로 보도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각 2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8. 1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초상권 침해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88859 판결(확정)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밝히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선 것은 초상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

- 원고 : A 외 1명
- 피고 : 한국방송공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5월 10일자 <뉴스9> 프로그램 등에서 연기자 C의 세월호 사건 관련 소환조사에 대해 보도했다. 원고들은 연기자 C가 검찰에 출석할 때 동행했고, C가 포토라인에 서는 과정에서 원고들도 함께 촬영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됐다. 이후 피고는 C에 대해 진행되는 검찰 조사 및 재판 소식을 보도하며 원고들이 C를 에스코트하는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계속 사용했다. 이에 원고들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들이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초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촬영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공표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각 100만 원을 판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1939).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초상 촬영에 관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해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손해배상)을 취소했다. 이후 양자의 상고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들은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각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4서울조정8619, 8620(병합) 및 2014서울조정8996, 8997(병합)).

[판결요지]

□ 원고들의 촬영·공표 등에 대한 묵시적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C가 포토라인 앞에 섰다가 다시 검찰청 출입구에 들어설 때에도 계속 고개를 들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원고 B는 초상이 조금이라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단순히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아닌 마스크 등을 착용해 초상을 완전히 가렸어야 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C가 검찰청에 출석하는 데 반드시 동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C의 경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다수의 취재진이 포진하고 있는 구역에 등장했다는 점 등을 보아 원고의 초상 촬영에 관한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

사 건	2016나2088859 손해배상청구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제 1 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101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6.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나 4)항 4행의 “막는 역할을 담당하였.” 다음에 “원고 B는 검찰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모자를 벗고 평상복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C가

취재진 앞에서 말을 마치자 바로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등 C를 경호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로 원고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자신들의 초상이 촬영·공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들의 초상을 공표한 것은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명예훼손

피고는 구원파와 C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들이 C의 측근이자 구원파 신도로서 구원파의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이 사건 각 보도에서와 같은 정도의 초상의 촬영·공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설령 원고들이 위 촬영·공표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촬영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원고들의 초상을 공개한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언론중재법 제5조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 2.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 참조).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3) 묵시적 동의 관련 법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바, 승낙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에 의하여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7865판결 등 참조). 예컨대 촬영과 공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예상하면서도 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촬영에 임하는 경우,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촬영에 응해 포즈를 취하거나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친근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 경우, 신문기자에게 기꺼이 설명하는 경우 등은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 당시 촬영과 공표의 범위, 사용목적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한다. 즉,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어떠한 용도로 쓰일지 알지 못했다면 초상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촬영·공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1)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의 초상이 방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초상이 촬영·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초상의 촬영·공표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2 내지 28호증, 을가 제2 내지 69,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촬영 및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촬영 및 보도의 예측

- ① 이 사건 보도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러 있었고,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세모그룹의 유병언 회장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C가 소환되기 전인 2014. 5.경부터 위 관련자들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소환되는 모습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 ② C는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한 탤런트로 이미 얼굴이 알려졌었고, 유병언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인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자 구원파 수련원인 경기 안성 금수원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와중인 2014. 5. 10.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특별 수사팀에 소환되었다.
- ③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8조에 따르면 소환대상자가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 등의 정보 공개를 허용할 수 있는바, 당시 검찰은 C 측과 사전 협의한 출석 시간을 C가 출석하기 하루 전인 2014. 5. 9. 취재진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를 포함한 수많은 언론사 취재진이 검찰 청사 앞에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에 촬영용 카메라와 함께 C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 ④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C의 사회적 인지도, C 이전의 세월호 사건 관련자들에 관한 보도 등을 고려할 때 C가 인천지방검찰청사에 출두하는 모습과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등은 생방송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될 것이 예상되었다.
- 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3조에 따르면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서 제정한 포토라인 운영준칙 제1장 제1 내지 3조에 따르면 ‘포토라인’은 유명인사에 대한 취재가 과열 경쟁 양상으로 번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취재 경계선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한 뉴스가 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공개적인 장소이다.
- ⑥ 원고들은 C의 오랜 지인으로서 C가 언론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는 것이 안쓰럽고 가여워서 검찰청에 출석하는 C를 에스코트해 주기 위해 C와 동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들도 당시 C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⑦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C가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 다수의 취재진이 촬영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 대기하고 있어 C와 함께 검찰청에 출석하게 될 경우 C가 언론사에 의해 촬영·보도되면서 원고들도 부수적으로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고 촬영된 영상이 보도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동의가 추단되는 행위들

- ① 원고 A는, C가 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차량에서 내린 C의 오른팔을 잡고 함께 포토라인 앞까지 걸어왔고 C가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에도 그 옆에 서 있었으며, C가 다시 걸어가 검찰청 출입구에 들어설 때에도 C의 오른팔을 잡고 함께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는 계속하여 고개를 들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원고 A는 C가 다음날 새벽에 검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출입구로 나와 다수의 취재진들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힌 다음 걸어가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C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면서 이동시에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는 것을 거부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 ② 원고 B는 C가 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모자를 쓰고 C의 뒤에서 걸어다가 C가 포토라인 앞에서 멈춰 서자 잠시 떨어져 있었고, C가 검찰청 출입구로 들어가자 다시 C를 뒤따라갔는데, 원고 B가 자신의 초상이 조금이라도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아닌 C를 동행하지 않거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초상을 완전히 가렸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 B가 포토라인 앞에서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자신의 초상이 C와 함께 확대되어 촬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한 행동으로 보일 뿐 촬영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C가 포토라인에서 검찰청 출입구로 이동할 때에도 취재진에 의해 계속 촬영되고 있었음에도 원고 B는 다시 C를 뒤따라갔다. 또한, 원고 B는 C가 검찰청에서 퇴거할 때에는 검찰청에 출석할 당시에 입었던 평상복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모자도 벗었는데, 이는 원고 B가 취재진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 ③ 위와 같이 원고들은 C가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반드시 동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C의 경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C와 함께 검찰청에 출석하여 피고 등 다수의 취재진이 포진하고 있는 구역에 등장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C와 함께 촬영되는 동안 피고 등 취재진에게 촬영을 거부하거나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C가 취재진에게 발언을 하는 동안 원고 A는 C 바로 옆에서 고개를 든 채 서있었고, 원고 B는 취재진을 의식해 모자를 벗고 평상복을 정장으로 갈아입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피고 등 취재진의 촬영 및 공표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다) 촬영과 공표의 범위, 사용목적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

- ①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검찰청에 출석하는 C를 동행할 경우 C가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고 포토라인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장면이 촬영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모습이 간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촬영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이 C가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보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② 실제로 C가 차량에서 내려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 및 검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에서 나와 차량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C에게 인터뷰하기 위한 기자 등이 몰려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C의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던 수사관, 2~3명의 기자 등과 함께 원고들의 모습이 부수적으로 피고의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다.
-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C가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사건 제1, 2 보도), C가 그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사건 제3, 4 보도), 검찰이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다는 내용(이 사건 제5, 6 보도)의 기사를 보도하는데 자료화면으로 방영하였고, 특별히 원고들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도할 의도로 위 영상을 방영하지 않았다.
- ④ 나아가 당시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는 다수의 취재진과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포토라인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다가오는 주요 보도대상자의 동행자에 대하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원고들을 촬영한 다른 언론사들 중 연합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원고들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보도하였는데(연합뉴스도 원고들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보도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보도는 모두 원고들이나 동행자의 얼굴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았을 원고들이 피고 등 취재진에 의해 촬영된 자신들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등이 되기를 기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기타 묵시적 동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들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C의 오랜 지인으로서 C가 언론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는 것이 안쓰럽고 기여워서 검찰청에 출석하는 C를 에스코트해 주기 위해 C와 동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이 C를 동행하게 된 동기의 자발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위 촬영 당시 자신들이 C나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 ② 원고들은 피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C에 대한 검찰조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보도에서와 같이 원고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을 내보냈는데도 피고 등의 언론사에게 원고들의 초상이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지 않다가, 원고 A는 이러한 보도들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 8.경에 이르러서야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2015. 1.경에 이르러서야 언론조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촬영과 보도 당시에는 이를 묵인 내지 동의하였다가 이 사건 각 보도가 나간 뒤 한참 뒤에서야 이를 문제 삼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의해 촬영-공표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2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59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2011320 판결(확정)

‘주택 앞에 담장을 설치해 주택이 감옥이 됐다’는 표현은 거주자의 의사를 압축하여 표현한 수사적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3월 27일자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현관 앞에 담벼락... ‘감옥’ 만든 건설사」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장애인 부부의 부동산 분쟁 및 담장 설치의 경위에 관해 다뤘다.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 부부의 주택 출입문과 창문 바로 앞에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부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담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 사건 주택이 ‘감옥’이 됐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 언론사는 마치 원고가 감옥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항소 기각했다. 2심에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지엽말단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역시 기각했다. 이후 원고의 상고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보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

담장 설치 이후, 오래 전 폐쇄한 다른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 별도 조치 없이는 현실적으로 주택에 출입할 마땅한 통로가 없었고, 다른 출입문을 통하더라도 지체장애가 있는 거주자의 관점에서는 생활상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판단

피고가 사용한 ‘감옥’이란 표현은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상 이 사건 주택이 사전적 의미의 감옥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표현은 담장 설치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고 내부가 낮에도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수사적 평가에 불과해 이를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보도는 원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소유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려는 취지인바, 보도내용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암시를 줄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6가합105986	정정보도청구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22.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3일 이내에 방송되는 TV 저녁 8시 뉴스시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격일 간격으로 3일간 방송하라.
2. 피고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1항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뉴스 등을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1) B와 C 사이의 부동산 분쟁

가) B는 1983. 5. 4. 서울 ○○구 ○동 ×××-×× 지상 연와조 와즙 평가권 주택(건평 59.1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동쪽으로 바로 인접한 위 ○동 ×××-××× 임야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는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데, C는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4. 승소판결(위 법원 99가단31869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 13. 확정되었다.

다) B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였고(이하 철거 후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또한 C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철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및 소유관계

가) B는 위와 같이 주택을 일부 철거한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동쪽(이 사건 토지방향)으로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과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만들었고(이 사건 출입문을 개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는 구조였다), 위 출입문 근처에 연탄광과 수도계량기 박스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3.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C 소유의 ○○구 ○동 ×××-××× 및 ×××-××× 각 토지상에 폭 8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이를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로의 동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117가구 규모의 빌라촌 건설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다. C는 2014.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도로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소(이하 '이 사건 철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위 법원 2015가단5092139호 및 2015나 57644호 판결), B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에서 10cm 떨어진 이 사건 토지 위에 높이 약 280cm,

길이 약 30m의 담장 및 철제펜스(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의 취재

- 1) ○○구의 한 시의원은 “장애인 부부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집 바로 옆 토지에 중소 건설사인 원고가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양 당사자 간 토지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건설사가 장애인 부부의 집 출입문, 창문 바로 앞에 담장을 설치하는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에게 위와 같은 B와 C, 원고 사이의 부동산 분쟁 및 이 사건 담장 설치의 경위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였다. 이에 피고의 취재진은 위 사안과 관련한 취재를 시작하였다(원고는 B와 그 처인 D가 C를 망신주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고에게 B와 C 사이의 분쟁관계를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재행위는 위 시의원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B와 D는 피고의 취재행위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 2) 피고의 취재진이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을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담장에 대한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담장으로 인해 이 사건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그를 통해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창문 중 절반이 위 담장에 가려져 이 사건 주택의 내부는 낮은 상태에 있었다.
- 3) 이 사건 주택의 북쪽에는 다른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서쪽과 남쪽 방향으로는 공로가 접하여 있었다. 이 사건 주택의 서쪽 방향에는 B의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 위치하고 있었고 위 방으로부터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출입문(이하 '다른 출입문'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위 방을 점포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서 B는 위 방을 아들의 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위 다른 출입문을 폐쇄한 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1개의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취재진이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을 무렵 B는 남쪽의 화장실에 밖으로 통하는 새로운 출입문(이하 '새로운 출입문'이라 한다)을 만들고 있었다.

라. 피고의 방송보도

피고는 위와 같은 취재과정을 거쳐 이 사건 담장의 설치가 진행 중이던 2016. 3. 27. SBS 8시뉴스에서 「현관 앞에 담벼락... '감옥' 만든 건설사」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뉴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앵커 멘트〉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바로 앞에 담벼락이 세워져 현관문도 열 수 없고 창문도 막혀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 건설사가 자신들 땅이라며 이렇게 남의 집 앞에 담벼락을 세우는 기막힌 일이 서울 시내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E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도로 옆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

창문과 현관문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바짝 붙여서 담장이 길게 쳐져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처럼 보일 정도인데, 창문은 절반 정도가 완전히 막혔고 현관문으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집에 사는 65살 장애인 B 부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쪽 화장실 벽면을 뚫어 새 현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관문 설치 작업자 : 화장실 겸 출입문(을 만드는 중이에요). (원래 있던 문은요?) 저기 (기존 현관문은) 막혀 있잖아요.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요?) 기다려야지, 뭐.]

단독주택 바로 옆에서는 117가구 규모의 대형 빌라촌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담벼락은 바로 이 건설사 대표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빌라 건설사 관계자 : 원래 여기까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관문을) 쓰면 안 돼요. 이거 함부로 취재하면 큰일 나. 이 땅 주인(건설사 대표)도 어마어마한 분이예요. 장애인이 무슨 자랑이예요?]

해당 업체는 빌라촌 옆에 도로를 내면서 담장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 : 문이 열리는 건 자기들 땅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 문 열리게까지 해줄니까?]

건설사 대표는 10여 년 전 B 부부의 집의 일부가 자기 토지를 침범했다고 소송을 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 부부는 판결대로 집의 일부를 헐어내고 그 때까지 무단점용 사용료도 냈습니다.

[H/단독주택 거주자 : 이거(불법 점거한 주택 일부)를 다 떼어 주고, 3,800만 원 사용료도 때리는 거예요. (당시 진 빚을) 원금도 못 갚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이후 건설사 대표가 이 지역 본인 땅 일대에 빌라촌을 지으면서 부부와의 토지 분쟁은 더 심해졌고, 구청 측이 B 부부에게 집을 건설사 측에 파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굳이 담벼락까지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업체대표와 만났지만, 고성과 욕설에 취재는 불가능했습니다.

[건설사 사주/담장 설치 : 뭐하는 거야 지금? 카메라 치워! 발길로 차기 전에 새끼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 더 이상 취재 못 합니다. 갑시다.) XX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너 이 새끼 이리로 와!]

이후 건설사 측은 별도의 입장자료를 보내왔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들이라며 B 부부가 기존 현관문을 계속 사용하면 도로가 깔린 건설사 사주의 땅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아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땅 소유권과 별개로) 답을 쌓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부부의) 생존권이라든지 생활권을 현저히 침해하게 된다면 (땅 주인의) 권리의 남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화장실 청소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장애인 부부는 법적 대응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 서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우리 집이 감옥이에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지만 사람이 살 권리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린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변호사님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5, 1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가)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가로막힌 이 사건 출입문 외에 다른 출입문도 존재한다. 피고는 위 다른 출입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B가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담장의 설치로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마치 주택 전체가 담장으로 둘러쳐진 것으로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바로 앞에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택 전체를 둘러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주택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어 B의 가족은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쪽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감성적인 보도를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B가 화장실에 출입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였고, 마치 이 사건 주택에 화장실이 1개만 존재하여 B가 화장실과 새로운 출입문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인 양 자극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감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B가 이 사건 토지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전제한 후 원고가 감옥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 3 주장'이라 한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 제작진의 취재 과정에서 C가 고성과 욕설을 한 것은 피고 제작진이 갑자기 C의 얼굴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C의 행위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정정보도의 취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원고는, 이 사건 담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3개월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역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이 부분 보도는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정보도의 의무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도의 의미 및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상,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입문과 창문 바로 앞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생활환경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이하 '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B 등이 위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제1 내지 3 주장),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기초로 한 아래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주택의 다른 출입문은 B 등이 오래 전부터 이를 폐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바(위 다른 출입문의 외부는 철창으로 봉인되어 있고, 내부 또한 나무판자 등을 덧대어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한 후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담장의 설치 당시 다른 출입문이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입문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B 등이 폐쇄된 다른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새로운 출입문을 만드는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마땅한 통로가 없었던 점, ② 주거의 출입문은 거실 등 공동생활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주택의 서쪽 방은 B의 아들이 사용하는 개인적인 공간인바, 위 서쪽 방에 위치한 다른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경우 거주자들의 관점에서는 생활상의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고[B는 지체장애(2급, 반신마비)를 겪고 있어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바, 피고는 아들이 사용하는 방을 B가 휠체어를 끌고 가로질러 출입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에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B 등이 그 필요와 판단에 따라 폐쇄된 다른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B 등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과장해서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출입문이 사용가능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굳이 화장실 벽에 출입문을 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측과 장애인신문 F 기자 및 MBC G 기자 사이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각 녹취록(갑 제14, 19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F 기자는 이 사건 담장이 있어도 B 등이 다른 출입문으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굳이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낼 이유가 있느냐는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위 F가 이 사건 담장 설치 당시 다른 출입문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G 기자는 MBC 자문변호사의 말을 빌려 이 사건 담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취지가 피고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허위로서 잘못이라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는 위 자문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평가에 불과한 점(한편 위 G는 이 사건 담장의 설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④ 위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B 등이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주택에 다른 출입문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B 등이 위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은 채 위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다른 출입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반론보도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보도가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어 위 화장실의 이용과 위 주택에의 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기는 하나, 위 보도내용이 곧바로 이 사건 주택에 화장실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한편 B가 이 사건 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철거한 후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북쪽 화장실에 연결되어 있던 정화조도 역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북쪽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이유로 B 등은 남쪽 화장실을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위 북쪽 화장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의 거주자들(B는 지체장애를 겪고 있기도 하다)이 생활하는 이 사건 주택에서 2개의 화장실이 모두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이외에 세면시설이나 욕실로도 기능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바깥출입을 위해서는 남쪽 화장실과 새로운 출입문을 동시에 이용하여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제3 주장에 관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C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B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의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며,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 내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바(다만 원고 내지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B가 이 사건 토지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전제하였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소유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건 보도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암시를 줄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감옥’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상 위 표현을 두고 이 사건 주택이 사전적인 의미의 감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표현은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이 제한되고 이 사건 창문 중 절반이 위 담장에 가려져 이 사건 주택의 내부가 낮에도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수사적 평가 내지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인 B 등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사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실제로 피고 제작진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B의 처는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기도 하다)에 불과하여 이를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보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3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7나2011320	정정보도청구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598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3일 이내에 방송되는 TV 저녁 8시 뉴스시간 프로그램

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격일 간격으로 3일간 방송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3일 이내에 방송되는 TV 저녁 8시 뉴스시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격일 간격으로 3일간 방송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3. 피고가 위 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1, 2항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향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가)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가로막힌 이 사건 출입문 외에 다른 출입문도 존재한다. 피고는 위 다른 출입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B가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담장의 설치로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마치 주택 전체가 담장으로 둘러쳐진 것으로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바로 앞에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택 전체를 둘러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주택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어 B의 가족은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쪽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감성적인 보도를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B가 화장실에 출입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였고, 마치 이 사건 주택에 화장실이 1개만 존재하여 B가 화장실과 새로운 출입문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인 양 자극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감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B가 이 사건 토지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전제한 후 원고가 감옥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주장'이라 한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 제작진의 취재 과정에서 C가 고성과 욕설을 한 것은 피고 제작진이 갑자기 C의 얼굴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C의 행위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정정보도의 취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정정보도의 의무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상,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입문 바로 앞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이하 '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위 적시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다른 출입문은 B 등이 오래 전부터 이를 폐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 바(위 다른 출입문은 약 15년 전 쌀가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그 후 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부에 철창을 설치하였고, 내부에는 바람 등을 피하기 위해 나무판자와 비닐로 막아 열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입문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B 등이 폐쇄된 다른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새로운 출입문을 만드는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마땅한 통로가 없었던 점, ② 주거의 출입문은 거실 등 공동생활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주택의 서쪽 방은 B의 아들이 사용하는 개인적인 공간인바, 위 서쪽 방에 위치한 다른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경우 거주자들의 관점에서는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B 등이 그 필요와 판단에 따라 폐쇄된 다른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B 등이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주택에 다른 출입문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B 등이 위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은 채 위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가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어 위 화장실의 이용과 위 주택에의 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주택에 화장실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이 사건 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철거한 후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북쪽 화장실에 연결되어 있던 정화조도 역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북쪽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이유로 B 등은 남쪽 화장실을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위 북쪽 화장실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5명(그 중 2명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이 사건 주택에서 2개의 화장실이 모두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바깥출입을 위해서 남쪽 화장실과 새로운 출입문을 동시에 이용하여야 한다면 생활에 불편이 따르게 됨은

당연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쪽 화장실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어 위 화장실의 이용과 위 주택에의 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C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B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의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며,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 내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바(다만 원고 내지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B가 이 사건 토지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전제하였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소유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건 보도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암시를 줄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제목에 “현관 앞에 담벼락... ‘감옥’ 만든 건설사”라고 표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D가 “무슨 우리 집이 감옥이에요?”라는 말하는 장면을 방송 말미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상 위 표현을 두고 이 사건 주택이 사전적인 의미의 감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표현은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이 제한되고 이 사건 창문 중 절반이 위 담장에 가려져 이 사건 주택의 내부가 낮에도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수사적 평가 내지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인 B 등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사를 압축하여 표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보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B 등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³⁷⁾.

37)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피해자가 당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보도일인 2016. 3. 27.부터 6개월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8. 24.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가 포함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반론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 ① 이 사건 출입문 앞에 담장을 설치한 공사는 수년에 걸친 B 등의 불법적 침해행위에 대해 수차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 ② 이 사건 주택은 폭 8미터의 도로에 면한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감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 ③ 위 담장 설치 공사는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담장을 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반론보도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언론사 등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 보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원 보도 이후 원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등 참조).

나) ①항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C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것이라면 각하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반론보도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구하는 것으로 본다.

승소하였고, B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의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 내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반론보도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②항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제목에 “현관 앞에 담벼락... ‘감옥’ 만든 건설사”라고 표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D가 “무슨 우리 집이 감옥이예요?”라는 말하는 장면을 방송 말미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상 위 표현을 두고 이 사건 주택이 사전적인 의미의 감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표현은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이 제한되고 이 사건 창문 중 절반이 위 담장에 가려져 이 사건 주택의 내부가 낮에도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수사적 평가 내지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인 B 등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사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감옥’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이 부분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다.

라) ③항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입문 바로 앞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B 등이 이 사건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도입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바로 앞에 담벼락이 세워져.....”라고 보도한 부분은 시청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장을 친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 반론보도 청구는 지엽 말 단적이며 사소한 내용에 해당하여 반론보도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이 사건 보도는 건설회사가 자신 소유의 땅이라며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 출입문 바로 앞에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주택의 거주자들이 새로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주택에 출입하기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이르렀다는 내용인바, 이는 법률상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이들의 주거생활의 행태 등에 비추어 다소 적절하지 못하게 소유권을 행사하여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추어 적절했는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고발한 보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카합10353 판결(확정)

지자체장이 사익을 위해 공청회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청회 절차 등의 진행주체인 지자체에게도 반론보도의 이익이 있다

- 원고 : 수원시
- 피고 : 주식회사 수원일보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9월 19일자 인터넷 <수원일보>에서 「A 수원시장, 1조 2천 억 규모 개발 관련 피소」라는 제목으로 A 수원시장이 발표한 개발계획이 사익 부풀리기(땅투기)에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반론보도제도가 본래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해당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정황을 살펴볼 때 이는 원고가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원·피고의 항소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A 수원시장 개인이지 수원시가 아니므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수원시가 해당 개발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공청회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고, 수원시는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반론 또는 반박을 제기할 이익을 가진다.

판결문

사	건	2016카합10353	반론보도청구	
채	권	자	수원시	
채	무	자	주식회사 수원일보사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채무자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 가.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수원일보(<http://www.suwon.com>) 중 별지1 기재 기사가 게재된 위치와 동일한 위치(사회면)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별지1 기재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 나.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별지1 기재 기사 본문 하단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별지1 기재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 가. 7일 동안 인터넷신문 수원일보(<http://www.suwon.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상단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게재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초기 화면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 활자는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

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반론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나. 반론보도 대상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http://www.naver.com>), 다음(<http://daum.net>)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공하라.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닐 경우, 채무자는 위반일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채권자에게 1일당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인터넷신문 수원일보 사이트(<http://www.suwon.com>)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 9. 19. 그 사회면에 채권자 등에 관하여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사는 채권자가 ○○동 개발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공청회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고, 채권자는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A 수원시장 개인이지 수원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이상 채권자도 반론 내지 반박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개최하였다는 공청회 내지 주민설명회는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동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수원권 전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므로, 반론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문의 주장내용이 일반적인 경험 사실이나 기타 신문, 방송, 이미 공표된 연구 결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경우라거나 법원이 당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지득한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동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3. 3.경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2014. 3.경 ○○동에서 '서수원권 R&D 단지 조성, 녹색산업 산한 연구단지 육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나아가 반론보도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방식과 매체, 내용과 표현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2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하고 반론보도의 방법은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한다.

한편 채권자는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에 반론보도문을 제공하라는 청구도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위 네이버나 다음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필요성 및 채권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대상기사 생략

〈별지2〉 반론보도문

제목 : ○○동 개발계획 발표 관련 반론보도문

본문 : 수원일보는 2016. 9. 19.자 사회면에 [A 수원시장, 1조 2천 억 규모 개발 관련 被訴]라는 제목으로, ‘수원시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급작스럽게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동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A 수원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시는 ○○동 개발계획(R&D사이언스파크 건립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위 개발계획이 포함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위 개발계획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수원시의 반론 내용입니다.

〈별지3〉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9604, 2017나2029642, 2017나2029659, 2017나2029673, 2017나2029680, 2017나2029611, 2017나2029628, 2017나2029635, 2017나2029666(병합) 판결

의혹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 원고 : 재단법인 A
- 피고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2월 5일에서 3월 15일에 걸쳐 <경향신문> 및 <인터넷 경향신문>에 아리랑TV 편성팀장인 B가 특정업체를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하도록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아리랑TV의 입찰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원고는 기사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C(아리랑TV 사장)와 E(미디어(외주 제작업체))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 게시를 명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6526 등). 이에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B가 각 항소했고, 2심 법원은 'B가 E(미디어)가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2의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보도청구 인용의 범위를 확장해 판결했다. 이후 피고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7다281114).

한편, 원고는 소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이 내려졌으나(2016서울조정470-471-472-473-474-475-476-477-478), 양자의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 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정정보도 확대 인용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E(미디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 사건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부당한 개입' 내지 '비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E(미디어)에 관한 사정 외에 C(미디어)가 E(미디어)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업체로서 더 적합하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고, 그럼에도 B가 E(미디어)를 지지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입찰공고와 함께 공시된 외주 제작업체 선정 방안 및 아리랑TV의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심사 기준상 C(미디어)가 E(미디어)보다 우월하다는 사정에 관해 별다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입찰비리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E(미디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 사건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한 것은 허위에 해당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판결문

사	건	2017나2029604 정정보도 2017나2029642(병합) 정정청구 2017나2029659(병합) 정정청구 2017나2029673(병합) 정정청구 2017나2029680(병합) 정정청구 2017나2029611(병합) 정정청구 2017나2029628(병합) 정정청구 2017나2029635(병합) 정정청구 2017나2029666(병합) 정정청구
원	고	재단법인 A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B
피 고 , 피 항 소 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6526, 6540(병합), 6564(병합), 6595(병합), 6533(병합), 6557(병합), 6571(병합), 6588(병합), 6601(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 1) 경향신문 02면에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 및 본문을 별지2-1 기재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여 1회 게재하고,
 - 2) 인터넷 경향신문(홈페이지 <http://www.khan.co.kr>) 초기화면의 상단 기사목록에 별지 1-3, 1-4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2-2 기재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2-2 기재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별지1-3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3, 2-5, 2-7, 2-8 기재 각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별지1-4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1/3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1. 경향신문 종합(A2)면에 별지4-1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별지3-1 기재 제목의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고,
2. 인터넷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4-2 기재 각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각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3-2 각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각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향신문 종합(A2)면에 별지4-1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별지3-1 기재 제목의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고, 인터넷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4-2 기재 각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각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3-2 각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각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1-1 기재 정정보도 청구의 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C와 E미디어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이를 '제1쟁점사실'이라고 하고, 이하 각 순번별 쟁점사실을 '제O쟁점사실'이라 한다)는 사실(이 사건 제1, 2기사), ② 'C가 외주제작사 선정 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부 심사위원들과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사건 제1, 2기사), ③ '외부 심사위원들이 C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등 연출로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건 제1, 2, 3, 4기사), ④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의 실제 참여자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사건 제5, 6, 7, 8, 9기사), ⑤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의 내용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자는 취지와 다르게 제작되어 심의위원이 프로그램을 도중하차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건 제3, 4, 5, 6기사), ⑥ '원고보조참가인이 E미디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 사건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건 각 기사)을 각 보도하였으나, 위 각 쟁점사실은 모두 허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내지 5 쟁점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다. 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제6 쟁점사실에 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외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제6쟁점사실의 적시 여부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사 순번	제목	보도 내용
1	「C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 “C는 내부 심사위원들과는 입찰 등록과 1차 심사를 각각 하루 앞두고 갈빗집 등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 “외부 심사위원들은 ‘평가표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사실상 대놓고 내부의향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 “〈Join us Korea〉의 경우 C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B 등 3명의 내부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2	「[단독] C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 “B는 “(미디어어는) 저희 회사 방향과 맞지 않는다” “(미디어어와) 상대가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 “당시 심사위원들이 퇴장한 후 B와 심사위원장인 지대 D 교수는 “(가격점수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겠지”라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3	「[단독] ‘C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	㉦ “문체부 등에서 한 달 넘게 특감을 벌여왔으나 C 개입비리 외에 아리랑TV 직원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이 대거 등장하는 입찰비리 의혹은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기사 순번	제목	보도 내용
3	「[단독] 'C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당시 내부 심사위원이었던 아리랑TV 편성팀장 B가 외부심사위원 의견이 경쟁 업체쪽으로 기울자 “(미디어는) 우리 회사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미디어를 두둔한 것도 의문이다.” ㉕ “그는 “(미디어는)쌍방향 시스템 웹까지 개발해서 데이터 분석까지 모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반면 (미디어는) 그렇지 않다”며 외주사가 바뀌면 그동안 앱개발 성과가 물거품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미디어에 양방향 플랫폼 기술지원을 해준 쿼테크 관계자는 다르게 얘기했다. 그는 “시즌2에서 누가 외주사로 되던 기술지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당시 미디어와 전속계약 관계도 아니었다”며 “서버에 보관중인 데이터는 방송사에서 요청하면 보통 다 제공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B는 사실과 다른 얘기로 미디어 쪽으로 기운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㉖ “그렇다면 누구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아리랑TV B는 왜 외주사가 바뀌면 큰 일 날 것처럼 외부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미디어를 밀어줬을까.” ㉗ “미디어를 둘러싼 입찰비리 의혹의 전모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은 내부 심사위원이었던 B이다.”
4	「C 재임 시절 입찰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 이 사건 제3기사의 '㉖, ㉕, ㉗'와 같은 취지의 보도 내용
5	「[단독] 아리랑TV 12억 투입한 양방향 방송 실제 참여자 수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㉘ “조인어스코리아의 총괄PD인 B는 내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입찰심사에 참여해 실제 참여자수 등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끝까지 숨겼다.” ㉙ “대신 외주업체가 바뀌면 쌍방향 기획자체가 무산될 것처럼 “노골적으로 ‘문지마 심사’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결국 외부 심사위원들은 당초 채점결과까지 고쳐가며 점수를 한쪽에 몰아줄 수밖에 없었고 미디어는 시즌2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6	「아리랑TV 12억 들인 프로, 하루 참여 10명꼴뿐」	○ 이 사건 제5기사의 '㉖, ㉕'와 같은 취지의 보도 내용
7	「방통위, 아리랑TV 10억원대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㉚ “전체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아리랑TV 편성팀장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발언이 97번이나 등장하는데도 감사관들은 녹취록조차 작성하지 않고 감사를 진행했다.” ㉛ “녹취파일 마지막에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부분은 아예 감지조차 못했다.” ㉜ “녹취파일에는 그가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시즌1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외주사에서 제작을 맡으면 그동안 성과가 날아갈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㉝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종합점수를 계산하면서 결과가 뒤집힐까 불안해하다 ‘이야, 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부분도 있다.” ㉞ “감사관이 말한 외부 심사위원이나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역시 모두 피감사자들로 B와 ‘입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들일 뿐이다.” ㉟ “‘받아쓰기’ 수준의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
8	「방통위·금융위, 아리랑TV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 이 사건 제7기사의 '㉖, ㉕, ㉞'와 같은 취지의 보도 내용
9	「방통위·금융위, 아리랑TV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 (2) 이 사건 각 기사별 위 표 기재 보도 내용 및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입찰의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이 사건 입찰과정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에 그치지 않고, '원고보조참가인이 티미디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 사건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제6쟁점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제목(소제목 포함) 및 본문에서 이 사건 입찰에 비리가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아리랑TV의 편성팀장이었던 원고보조참가인이 내부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티미디어를 두둔하고 코미디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등을 하여 티미디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 (나) 특히,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2차 심사위원들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B 편성팀장 등 3명의 내부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뒤집어지지 않겠지 하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실제 참여자수 등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끝까지 숨겼다'는 등 원고보조참가인이 티미디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고의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개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보조참가인의 2차 심사위원들에 대한 발언 이외에도 C 사장과 내부 심사위원들이 입찰 전에 식사를 했다는 사실, 티미디어가 제작하여 방영 중인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의 실제 참여자 수가 실제로는 매우 적으며 이를 원고보조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사실, C 사장과 외부 심사위원들이 학회 등 연줄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사실 등을 이 사건 입찰에 비리가 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 (라) 또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이 사건 입찰에 비리가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봐주기 감사', '받아쓰기 감사'를 하여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마) 반면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이 사건 입찰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보조참가인이나 C 사장, 아리랑TV 측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 (바)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 사건 입찰 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 관계 중에서 'C 사장 측 인사'라거나 'C 전 사장이 중용한 인물'이라고 표현된 아리랑TV의 편성팀장인 원고보조참가인이 내부 2차 심사위원으로서 입찰 비리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비춰진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찰의 2차 심사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제6쟁점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6쟁점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가 지적하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입찰과정에 원고가 개입해서 입찰절차가 정당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입찰비리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한 것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제1쟁점사실이 진실이라는 주된 근거로 원고보조참가인의 2차 심사과정에서의 발언 등이 포함된 이 사건 녹취파일 내지 녹취록을 들고 있는데, ㄷ미디어 및 ㄴ미디어의 PT 및 질의·응답이 끝난 뒤 논의과정에서 외부 2차 심사위원들이 ㄴ미디어의 PT에 대하여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잠시 나가 있었던 원고보조참가인이 2차 심사장소로 돌아와 ‘ㄷ미디어는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었다’, ‘ㄴ미디어는 앱 개발 전략이 없다’, ‘ㄴ미디어는 회사 방향과 맞지가 않다, 상대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전후의 맥락을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이 없는 상황에서 2차 심사위원장인 D는 논의과정 모두(冒頭)에 PT만으로는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 중이어서 내부 2차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E 역시 현업에서의 의견을 구하였고, 제작팀장인 F는 외주 제작업체의 선정이 PT나 말재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이처럼 현재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 중인 상황에서 나머지 2차 심사위원들이 아리랑TV 방송본부 편성팀장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견해가 모아진 상황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심사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등장하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ㄷ미디어 및 ㄴ미디어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이 자신의 생각을 나머지 2차 심사위원들에게 언급한 것이지 원고보조

참가인이 먼저 2차 심사위원들에게 위 두 업체에 관한 평가를 말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내부 심사위원인 F, G나 2차 심사위원장인 D 등이 원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E미디어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사전에 원고보조참가인과 상의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럴만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입찰공고와 함께 공시된 제안요청서 중 공모 프로그램 개요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2에 관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양방향 퀴즈 토크쇼’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E미디어는 ○○○○와 △△△ 앱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에서 △△△ 앱을 활용한 양방향 방송을 구현하고 있던 반면, M미디어는 PT에서 SNS의 이용 정도를 언급하였을 뿐 양방향 방송에 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스마트폰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에 관하여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이른바 ‘콘텐츠’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다. 위 E미디어의 앱 방식은 앱 설치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앱 참여 인원이 100만 명에 이르는 것과 달리 M미디어의 SNS방식은 시청자의 전화목록에 아리랑 전화 번호나 계정이 있어야 하고 참여 인원도 약 500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두 업체의 방송방식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이 2차 심사과정에서 ‘E미디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M미디어는 그렇지 않아 회사 방향과 맞지 않다’, ‘제가 기준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라고 언급한 부분은 E미디어와 M미디어의 방송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적 차이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나머지 2차 심사위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일부러 E미디어를 두둔하기 위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3) △△△ 앱 개발사인 ○○○○와 E미디어 사이에 6개월 단위로 해지의사가 없는 한 갱신되는 우선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E미디어가 입찰에서 떨어지면 △△△ 앱 부분에 대하여 아리랑TV가 인수인계하는지에 대한 E의 물음에 원고보조참가인이 “그건 제가 보장을 못하죠. 왜냐면 기존 업체가 거래하던 데니까”라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4) 또한, E미디어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며 제출한 ‘제작기획서’에서 △△△ 앱 가입자가 2015. 9. 9. 기준 3,203명이라고 기재하고 PT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EBS의 과학퀴즈쇼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앱 가입자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10만, 한 3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PT 후 질의·응답에서는 E의 질의에 ‘실제로 방송에 참여하는 숫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특정 마니아들만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답하여, 실제 참여자수가 가입자 수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고, 또한 심사와

정에서 다른 심사위원들과 ㄷ미디어 사이에 있었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의 실제 참여자 수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뿐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발언을 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의 실제 참여자 수에 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5)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부당한 개입’ 내지 ‘비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ㄷ미디어에 관한 사정 외에 ㄹ미디어가 ㄷ미디어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업체로서 더 적합하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고, 그럼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이 ㄷ미디어를 지지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입찰공고와 함께 공시된 외주 제작업체 선정 방안 및 아리랑TV의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심사 기준 상 기획안의 구체적인 내용, 제작진과 그 제작능력, 납품실적, 보유 장비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ㄹ미디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어야 마땅하다거나 ㄷ미디어보다 우월하다는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부 2차 심사위원들이 ㄹ미디어의 PT에 관하여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및 입찰가격이 더 낮았다는 점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 (6)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에 나타난 ㄷ미디어에 관한 부정적인 정황 등을 보더라도, ㄷ미디어 대표자인 H가 C와 특수 관계에 있다거나 ㄷ미디어가 ‘블랙리스트’ 업체라는 것인데, 전자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6. 3. 11.자 경향신문 02면에서 정정보도까지 한 바 있고, 달리 ‘H - I 전 장관 - C’(위 정정보도와 함께 보도된 이 사건 제4기사에서 ‘I모 전 장관’이 매개관계로 새롭게 제시되었다)로 이어지는 각 인적 연결 고리에 관한 별다른 소명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ㄷ미디어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자격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며 제출한 ‘주요 영상물 제작 및 납품실적’과 여기에 첨부된 ‘실적증명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업체 내지 방송업계에서 기피되는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 (7) 한편, 아리랑TV의 편성팀장인 원고보조참가인이 ㄷ미디어를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의 2차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할 어떤 유인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에서 기술된 것처럼 ‘원고보조참가인이 C 측 인사 내지 C가 중용한 인물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보조참가인이 C의 지시를 받아 ㄷ미디어를 위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 (8) 이 사건 각 기사에는 2차 심사위원장인 D와 원고가 연세대학교 동기라는 점, D의 ㄹ미디어에 대한 ‘폭탄 평점’이 ㄷ미디어 선정의 ‘결정타’가 되었다는 점, E가 당초 부여한 점수에 밀줄을 긋고 1, 2위 업체의 순위를 뒤바꿨다는 점이 부당 개입의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이 사건 녹취파일에 의하더라도 D와 원고는 2차 심사 당일부터야 서로 2차 심사위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D가 ㄹ미디어에 부여한

69점은 2차 심사위원들 중 최저점수이기에 조정평균을 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결정타'가 되지도 않았으며, E가 점수표에 점수를 잘못 기입하여 이를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수정하기 전 E가 매긴 점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찰결과가 바뀌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어느 것도 E미디어의 선정을 위해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당한 개입을 하였다고 볼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 (9)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에는 D와 원고보조참가인이 가격점수 때문에 E미디어의 선정이 번복될까 불안해하다 결국 E미디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자 안도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안도의 한숨까지 쉬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점수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들이 불안 내지 안도하였다는 내심의 사정을 이 사건 녹취파일(3시간 49분 49초경 이후)의 재생에 의한 D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육성만으로는 쉽사리 파악할 수 없고, '이야'라는 단어가 들리기는 하나(3시간 49분 59초경 및 3시간 50분 01초경) 원고보조참가인이 E미디어의 선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명확히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정도여서, 여기에는 기사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E미디어가 2차 심사점수는 높지만 M미디어는 가격점수가 높아 결국 최종점수가 90.89점 대 89.22점으로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E미디어의 우세로 판정된 데 대하여 D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어떤 감정 표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주장처럼 이를 부당 개입의 분명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10) 아리랑TV의 사장 C가 이 사건 입찰이 진행될 무렵에 원고보조참가인이나 1차 심사위원 J와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은 있으나, C가 E미디어 대표자 H와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E미디어 측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C가 원고보조참가인이나 J와 식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찰에 부당한 개입을 하였다거나 입찰비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11) 아리랑 TV 사장 C가 같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원인 K를 아리랑TV의 내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이후 K가 입찰담당부서로부터 '입찰 외부 심사위원 POOL'에 포함될 서울 소재 각 대학교의 교수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스무명 가량의 대학교수들을 추천하였는데 여기에는 K의 대학 시절 또는 유학 시절 후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차 심사위원 중 D와 E가 K의 대학교 후배인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E미디어 대표자 H와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E미디어 측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C, K, 2차 심사위원 등이 서로 학회나 대학 동문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E미디어의 선정을 위한 입찰비리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12)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이 사건 입찰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부당 개입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라.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허위인 제1, 6쟁점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 나아가 피고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보도 방법·형식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분량 및 그 중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이 차지하는 정도, 표현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경향신문으로 보도된 이 사건 제1, 4, 6, 9기사의 경우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경향신문으로 보도된 이 사건 제2기사의 경우 별지1-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제3, 5, 7, 8기사의 경우 별지1-4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보도하도록 하되,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경향신문에 가장 앞서 보도된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도록 하고,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02면과 같은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며, 별지1-3, 1-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인터넷 경향신문 초기화면의 상단 기사목록에 통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하도록 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인터넷 경향신문에 가장 앞서 보도된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이 사건 제2기사 본문 하단에는 별지1-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제3, 5, 7, 8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별지1-4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는 등 주문과 같이 게재 방법을 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1 기재 정정보도청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1-2〉 경향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목 : 「아리랑TV 입찰 비리 의혹」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경향신문은 2016. 2. 5.자 「C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3. 11.자 「C 재임 시절 입찰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3. 14.자 「아리랑TV 12억 들인 프로, 하루 참여 10명꼴 뿐」, 3. 15.자 「방통위·금융위, 아리랑TV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각 기사에서 아리랑TV B 편성팀장이 특정업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아리랑TV의 입찰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리랑TV B 편성팀장이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고 아리랑TV의 입찰과정에도 비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1-3〉 인터넷 경향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목 : 「C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인터넷 경향신문은 2016. 2. 5.자 「[단독] C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기사에서 C 전 사장과 낙찰자로 선정된 E미디어 사장이 특수관계였다, 아리랑TV B 편성팀장이 특정업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아리랑TV의 입찰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C 전 사장은 E미디어 대표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아리랑TV B 편성팀장이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아리랑TV의 입찰과정에도 비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1-4〉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1~4-2〉 대상기사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합2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2020492 판결(확정)

마을회와 주민이 주택 철거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주장이나 의견이 주로 방영되고 마을회의 입장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 마을회에 정당한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다

- 원고 : A 마을회
-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7월 11일자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에서 「가야산 까막눈 엄마집, 누가 반 토막 냈나」라는 제목으로 마을 주민인 B가 병원에 간 사이 원고(마을회)가 도로 확장을 위해 B의 주택일부를 철거했는데, 그 동의 여부에 대해 원고와 B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B는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등의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B가 주택 철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B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등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이미 이 사건 보도에서 충분히 다뤄졌거나 원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 말단적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B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반론을 인용했다. 이후 원·피고의 상고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들은 소 제기예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이 내려졌으나(2016서울조정1109),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 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B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고 시설이 열악한 간이주택을 B에게 공급함으로써 연로한 B가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 결국 B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의 대부분 B의 입장에서 방영됐다. 원고 측의 의견이나 사정에 관해서는 몇몇 마을 주민이 발언하는 장면만을 방영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 부분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한해 반론보도를 인용한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6가합2901	반론청구	
원	고	A 마을회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2017. 2. 24.
판	결	선	고	2017.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MBC TV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에서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반론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MB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원고는 ○○시 ○○면 ○○리 ○○1구(이하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대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며, 그 대표자는 C이다.
- 나. 피고는 2016. 7. 11. 방영된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에서 “가야산 까막눈 엄마집, 누가 반 토막 냈나”라는 제목 하에, ‘△△마을 주민인 B가 병원에 간 사이 원고가 도로 확장을 위하여 B가 거주하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일부를 철거하였는데, 그 동의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B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마을공동체 내에 분쟁과 대립이 발생하였으며, B는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 다. 이 사건 보도에는 별지2 방송화면 제1항 영상(LPG 가스통 앞에서 B가 탈거된 가스관을 들어

보이며 “가스까지도 다 끊어졌어”라고 말하는 장면), 제2항 영상(B가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장면), 제3항 영상(B가 마을회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마을 주민과 다투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의 각 기재, 을 3-1, 4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의 보도를 구하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① B가 이 사건 주택의 철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② 원고는 B에게 간이주택을 공급하였다.
- ③ 별지2 방송화면 제1항 영상은 가스관이 탈거된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다.
- ④ 별지2 방송화면 제2항 영상은 지하수 모터 전원코드가 빠진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다³⁸⁾.
- ⑤ B는 원고로부터 마을회관 화장실 열쇠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다.
- ⑥ 원고는 B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먼저 원고 주장의 ①, ②, ⑥항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보도에서 충분히 반영된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2.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갑 1의 기재, 을 1, 2, 5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보도에는 B가 도로 확장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자인하는 장면, 도로 확장 동의서에 기재된 B의 서명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 나레이터가 ‘△△마을 이장 C는 도로 확장 공사에 B도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C가 ‘B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라고 허락했다’고 말하는 장면, 원고가 B에게 제공한 간이주택이 조망되는 장면, C가 ‘8평 간이주택을 마련하는데 평당 2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말하는 장면, B가 간이주택이 제공되었음을 자인하는 장면, 마을주민이 ‘B를 내쫓으려고 이 사건 주택을 허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C가 ‘원고가 무엇 때문에 B가 미워서 이 사건 주택을 부수겠냐’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①, ②, ⑥항은 이미 이 사건 보도에서 충분히 다루어져 그 반론

38)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니나, 원고가 이를 주요 반론내용의 하나로 주장하므로 함께 판단한다.

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③, ④, ⑤항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역시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2.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갑 1의 기재, 을 3-1, 3-2, 4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는 'B가 이 사건 주택의 철거에 관한 설명을 받아 그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쌍방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과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인 점, ㉡ B가 가스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부분이나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부분은 B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이고, 마을회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는 부분 또한 마을공동체에 분쟁과 대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제시되었을 뿐인 점, ㉢ 이 사건 보도에는 '지하수 모터 전원코드의 연결 여부', '마을회관 화장실 열쇠의 지급 여부와 분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별지2 방송화면 제1항 영상이 촬영될 당시 가스관이 탈거된 상태였다는 사실은 위 영상 자체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 △△마을 공동체에 분쟁과 대립이 발생한 것이나 B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③, ④, ⑤항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그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7나2020492	반론청구
원고, 항소인		A	마을회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합290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11. 3.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방송되는 MBC TV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1 반론보도문(인용)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 나.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피고가 운영하는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리얼스토리 눈’ 525회 다시보기 VOD 화면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 크기, 활자체는 통상적인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 다. 피고가 제1의 가, 나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에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 가. MBC TV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반론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며,

나.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피고가 운영하는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리얼스토리 눈’ 525회 다시보기 VOD 화면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 크기, 활자체는 통상적인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에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³⁹⁾.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MB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원고는 ○○시 ○○면 ○○리 ○○1구(이하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대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며, 그 대표자는 C이다.

나. 피고는 2016. 7. 11. 방영된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에서 “가야산 까막눈 엄마집, 누가 반 토막 냈나”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마을 주민인 B가 병원에 간 사이 도로 확장을 위하여 B의 동의도 없이 B가 거주하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일부를 철거하고 화장실과 가스,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좁고 불편한 간이주택만을 제공하여, B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함으로써, 결국 B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에는 별지3 방송화면 제1항 영상(LPG 가스통 앞에서 B가 탈거된 가스관을 들어보이며 “가스까지도 다 끊어졌어”라고 말하는 장면), 제2항 영상(B가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장면), 제3항 영상(B가 마을회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마을 주민과 다투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호증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보도를 구하

39)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중 제1의 가항 부분만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에 위 청구취지 중 제1의 나항 및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이 항소취지에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선택한다.

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① B가 이 사건 주택의 철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② 원고는 B에게 간이주택을 공급하였다.
- ③ 별지2 방송화면 제1항 영상은 가스관이 탈거된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다.
- ④ 별지2 방송화면 제2항 영상은 지하수 모터 전원코드가 빠진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다⁴⁰⁾.
- ⑤ B는 원고로부터 마을회관 화장실 열쇠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다.
- ⑥ 원고는 B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법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언론사 등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 보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원 보도 이후 원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등 참조).

나. 반론보도의무의 발생

1) 갑 1호증, 을 3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실적

40)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니나, 원고가 이를 주요 반론내용의 하나로 주장하므로 함께 판단한다.

주장에 관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위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원고 주장 반론보도 내용 중 ①, ②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보도에는 B가 도로 확장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자인하는 장면, 도로 확장 동의서에 기재된 B의 서명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 나레이터가 ‘△△마을 이장 C는 도로 확장 공사에 B도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C가 ‘B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라고 허락했다’고 말하는 장면, 원고가 B에게 제공한 간이주택이 조망되는 장면, C가 ‘8평 간이주택을 마련하는 데 평당 2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말하는 장면, B가 간이주택이 제공되었음을 자인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주장 반론보도 내용 중 ①, ②항 부분은 이미 이 사건 보도에서 충분히 다루어져 그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 반론보도 내용 중 ⑥항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위 ①, ②항 부분도 반론보도문에 언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 주장 반론보도 내용 중 ③, ④, ⑤항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마을 도로 확장을 위하여 B가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는 B에게 시설이 열악한 간이주택만을 공급함으로써 연로한 B가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 B가 가스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부분이나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부분은 B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이고, 마을회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는 부분 또한 마을공동체에 분쟁과 대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제시되었을 뿐인 점, ㉢ 이 사건 보도에는 ‘지하수 모터 전원코드의 연결 여부’, ‘마을회관 화장실 열쇠의 지급 여부와 분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별지2 방송화면 제1항 영상이 촬영될 당시 가스관이 탈거된 상태였다는 사실은 위 영상 자체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 △△마을 공동체에 분쟁과 대립이 발생한 것이나 B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 반론보도 내용 중 ③, ④, ⑤항 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그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원고 주장 반론보도 내용 중 ⑥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마을 주민이 'B를 내쫓으려고 이 사건 주택을 허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C가 '원고가 무엇 때문에 B가 미워서 이 사건 주택을 부수겠나'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㉞ B가 마을 도로 확장과 주택철거에 관한 동의를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B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게 된 점, ㉟ 원고는 위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B가 거주할 수 있도록 간이주택을 마련하여 주고, 마을회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쇠를 교부⁴¹⁾하기도 하는 등 B가 도로 확장 공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㊱ 그럼에도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마을 도로 확장을 위하여 B가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는 B에게 시설이 열악한 간이주택만을 공급함으로써 연로한 B가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국 B를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거의 대부분 B 측의 입장에서 방영하고, 원고 마을 측의 의견이나 사정은 몇몇 마을 주민이 발언하는 장면만을 방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 반론보도 내용 중 ⑥항 부분이 이 사건 보도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의 방법 및 간접강제

- 1)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5항, 제6항, 제27조에 의하면, 언론사 등이 하는 반론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반론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하며, 언론사 등이 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포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법원은 방송·게재 또는 공포할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하고, 신청취지에 적힌 반론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및 기사의 내용, 분량, 표현방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별지1 반론보도문(인용)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방송 또는 게재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활자 크기와 게재 방법 및

41) 다만, 그 후 B는 마을회관 화장실 열쇠를 분실하였고, 다시 마을 측으로부터 화장실 열쇠를 받지 못하여, 마을회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간접강제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1〉 반론보도문

제목 : 〈리얼스토리 눈〉 525회 프로그램 「가야산 까막눈 엄마집, 누가 반 토막 냈나」 관련 반론보도문
본문 : 본 방송은 2016. 7. 11. 〈리얼스토리 눈〉 525회 프로그램 「가야산 까막눈 엄마집, 누가 반 토막 냈나」라는 제목으로, “○○리 ○구 마을회는 1년 전 까막눈 엄마로 보도된 B씨가 잠시 병원에 간 사이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화장실과 가스,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B에게 거주하기에 매우 불편한 간이주택만을 제공함으로써, B를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하여 결국 마을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 ○구 마을회에서는, B씨가 마을 도로 확장과 주택철거에 관한 동의를 하여 B씨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게 된 것이고, 위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B씨가 거주할 수 있도록 간이주택을 마련하여 주고, 마을회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열쇠를 교부하여 주는 등 B씨가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 B씨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끝.

〈별지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3〉 대상기사 생략

피고는 보도내용 중 허위 부분이 지엽말단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허위 부분을 근거로 들어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 원고 : 방송통신위원회
- 피고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12월 27일자 인터넷 <뉴스타파>에 「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경품 과다지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벌이던 중 위반율이 가장 높은 L통신사에 대한 처벌을 덮었다고 보도했다. 피고는 L통신사 부회장 C와 원고의 위원장 B가 동창 관계여서 조사대상 시기를 바꾸는 방법 등으로 조사 결과를 덮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가 3월 조사를 중단하고 9월 조사를 다시 시작할 당시에는 C가 L통신사 부회장으로 발령받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피고가 항소했고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66).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이 내려진 바 있다(2017서울조정277).

[판결요지]

□ 독자적인 정정보도 이익에 대한 판단

피고는 '조사 대상 시기를 바꿔 9월 조사를 시작할 당시 L통신사 부회장 C가 원고의 위원장과 동창관계'라는 허위 부분이 기사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허위 부분을 직접적인 근거로 들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위 기사에서 암시한 내용을 볼 때 당시 L통신사 C부회장이 원고 위원장과 동창 관계인지 여부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피고가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독자적인 정정보도 이익이 충분하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13705	정정청구
원	고	방송통신위원회	
피	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8.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72시간 이내에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newstapa.org>) 메인화면의 최상단 기사목록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해당 기사목록의 다른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72시간 이내에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newstapa.org>) 메인화면의 최상단 기사목록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해당 기사목록의 다른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이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제1 예비적 청구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72시간 이내에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newstapa.org>) 메인화면의 최상단 기사목록에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해당 기사목록의 다른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이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제2 예비적 청구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72시간 이내에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newstapa.org>) 메인화면의 최상단 기사목록에 별지5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해당 기사목록의 다른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5 기재 반론보도문이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5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뉴스타파'(<http://newstapa.org>) 웹사이트에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이다.

피고는 2016. 12. 27. '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2 정정보도 대상기사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속인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주관으로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휴대전화 등의 결합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경품에 관하여 2015. 3.경까지 그 실태를 조사하던 중(대상기간 2014. 7.부터 2015. 3.까지, 이하 '3월 조사'라 한다), 2015년 상반기 인사 이동, 조사기준 미흡,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조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2015. 9.경 충실한 보강조사를 거쳐(대상기간 2015. 1.부터 2015. 9.까지, 이하 '9월 조사'라 한다),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16. 12. 6. 합계 약 10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국고로 갚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꼼수'라는 등의 극단적,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바, 원고는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한다.

대상 기사	사실관계
<p>'이용자정책국장, 2015. 3.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갚아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A 아무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015. 3.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채 '종결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그러나 경품 경쟁이 더 뜨거웠던 2014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삼아 별인 시장조사 결과를 뺀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B 위원장을 뺀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2015. 3.치 실태점검이나 시장조사 결과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p>	<p>원고의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에게 보고하면 국장이 비로소 보완지시, 종결조치, 경고, 조사중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3월 조사 당시에는 아직 위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3월 조사에 대하여 '종결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3월 조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이를 보강한 9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원고가 3월 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p>
<p>위법한 경품이 더 많았던 만큼 2015. 3. 조사에 따라 제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86~117억 원보다 많았을 테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 원대 이상이었으리라는 게 옛 정통부·방통위 관계자들 중론이다.</p>	<p>3월 조사와 9월 조사의 대상기간이 일부 중첩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3월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별도 부과할 경우 중첩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중제재가 있게 되고, 3월 조사 당시에는 9월 조사와 달리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조사만을 하였으므로 이것만을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할 수도 없었다.</p>
<p>위반율이 가장 높은 L통신사의 C 부회장과 B 위원장이 경기고·서울대 동창 관계인 걸 헤아려 시장조사 대상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고, 되도록 처벌을 늦춘 게 아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p>	<p>원고가 3월 조사를 중단할 당시는 물론, 원고가 9월 조사를 새로이 개시할 무렵까지도 C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서 L통신사에서 재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p>

2) 피고의 주장

3월 조사와 9월 조사는 대상업체, 기간, 방법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조사여서 9월 조사가 3월 조사에 대한 보강조사라고 볼 수 없는 점, 3월 조사 대상기간 무렵 당시 경품경쟁이 더 치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9월 조사에 따른 과징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착오가 있는 부분은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바,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부분 역시 이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도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정정보도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3월 조사를 “종결조치” 하였다’는 부분

가)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A 아무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015. 3.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전으로 올리지 않은 채 종결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종결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3월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9월 조사 결과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던 점⁴²⁾,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3월 조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을 비판하면서 그 점에 대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상 기사는 ‘원고가 3월 조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42) 9월 조사가 3월 조사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적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두고 ‘원고가 3월 조사에 대하여 원고 업무처리규정상의 “종결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3월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9월 조사 결과에 대하여만 과징금 약 106억 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는 9월 조사가 3월 조사의 보강조사로서 결과적으로 3월 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3월 조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위 기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위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9월 조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5, 6, 7, 8, 10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9월 조사를 3월 조사의 보강조사라 보기는 어렵고, 양자는 서로 별개의 조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3월 조사 시에는 통신4개사와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 20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2014. 7.부터 2015. 3.까지의 경품 과다지급 147,641건에 대하여 샘플조사를, 9월 조사 시에는 통신4개사와 SO 10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2015. 1.부터 2015. 9.까지의 경품 과다지급 2,926,329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각 실시하였는바, 조사의 대상업체, 대상기간, 방법이 서로 다르다.

또한 원고는 3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9월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 업체들이 새로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만 양자의 조사대상기간이 일부 중첩되고, 담당 주무관이 동일할 뿐이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9월 조사의 대상기간을 3월 조사의 대상기간과 달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이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과거의 위법행위일수록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대상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9월 조사는 3월 조사의 기산점인 2014. 7.로부터 불과 1년 2개월 후에 개시된 것으로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원고는 또한, 3월 조사 자체가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위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성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될 염려가 있었고, 당시 4종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 역시 9월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

3) ‘원고가 100억 원대 과징금을 댔었다’, ‘국고로 갚아야 할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온데간데없다’는 부분

위에서 본 9월 조사의 성격 등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월 평균 경품 지급액이 3월 조사에서는 316,450원으로 잠정 확인되었고, 9월 조사에서는 247,343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월 조사에 대해서도 약 90억 원(= 9월 조사 과징금 106억 원 × $\frac{316,450}{247,343}$ × (1 -

$\frac{9월조사와중복되는3개월}{3월조사대상기간9개월}$) 정도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월 조사에 대해서도 1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나 부과하지 않았다는 위 보도내용 중에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이유가 원고의 B 위원장과 L통신사의 C 부회장의 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부분

가) 이 사건 기사는 ① 원고가 3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9월 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점, ② 3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하였음에도 원고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는 실무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고 원고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이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적인 논조로 순서대로 설시한 다음, 기사의 마지막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은 L통신사의 C 부회장과 B 위원장이 경기고·서울대 동창 관계인 걸 헤아려 시장조사 대상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고, 되도록 처벌을 늦춘 게 아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적고 있는바, 위 마지막 부분은 ‘당시 L통신사의 부회장으로 있던 C와 원고 B 위원장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으로서, 그 친분관계 때문에 원고가 3월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새로이 9월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위 3월 조사결과를 덮어주었다’는 사실을 그 의혹 제기를 통해 강하게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종전에 엘지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총괄하는 사장직에 있다가 2015. 12.경에야 비로소 L통신사의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적시된 사실 중 조사 대상 시기를 바꾸어 9월 조사를 시작할 당시 L통신사의 부회장이 원고의 위원장과 동창관계라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위 허위 부분은 이 사건 기사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 허위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허위 부분을 직접적인 근거로 들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위 기사에서

암시한 내용을 볼 때, 당시의 L통신사의 부회장이 원고 위원장과 동창관계인 것이 맞는지 여부는 위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위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만의 독자적인 정정보도의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별지1 기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예비적 청구(반론보도청구) 부분

원고는 제1예비적으로, ‘경품 과다지급 조사는 원고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가 이관되었을 뿐 원고는 위법행위를 무마한 바 없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반론보도를, 제2예비적으로 ‘원고는 3월 조사를 종결조치한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를 변경하여 조사 및 검토를 계속하였고, 조사 결과 1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가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2015년 중반 경 문제의 대기업 임원은 해당 대기업 소속이 아니었다’는 반론보도를 각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가 3월 조사에 대해 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를 변경하여 조사를 계속 진행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과, 원고가 9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것도 함께 실시하였는바,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 할 것이어서 추가로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고, 2015년 중반 경 C가 L통신사의 부회장직에 아직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도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3월 조사가 미진하여 이를 보강하여 9월 조사를 계속하였다는 부분

(2015년) 3월에는, 경품 부분은 안전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 22. B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진 경품 과징금 100억여 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방통위가 2014. 7.부터 2015. 3.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 결합판매 경품 위법행위를 그해 3월 조사하고도 과징금 부과 없이 멈춘 까닭이다. 지난 10. 4. 기자의 첫 질문 뒤 두 달여 만에 나온 답변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2015. 3.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방통위가 왜 덮었는지 확인됐다.

A 아무개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에게 9월 시장조사를 3월 조사의 ‘보강’이라고 주장했으나 (중략) A 아무개 국장은 이달 6일 “(시장조사)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3월 조사)지지부진한 거였죠. 여유가 있으면 (3월 조사) 이어서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 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니 도저히 제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이용자총괄과에서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넘기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2. 9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부분

지난 11. 15. 방통위는 2016년 제64차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올렸다. L통신사를 비롯한 4대 통신사업자와 5대 케이블TV사업자가 2015. 1.부터 9.까지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결들인 핵심을 묻는 자리.

방통위 사무처가 관련 시장조사를 벌인 건 2015. 9.이었고 실무자 1인이 과징금 118억 원, 2안으로 87억 원이 나왔다. (중략) 이달 6일 열린 2016년 제68차 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6억 7,000만 원, 티브로드를 비롯한 3개 케이블TV사업자에게 2,890만 원을 부과했다. L통신사가 45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브로드밴드 24억 7,000만 원, K통신사 23억 3,000만 원, S통신사 12억 8,000만 원 순이었다.

2.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들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 : 「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댔었다」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본지는 2016. 12. 27. 「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댔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B 위원장과 L통신사의 C 부회장이 동창 관계인 것을 고려하여 2015. 3. 경품 시장조사를 멈추고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기사에서 방통위가 시장조사를 멈추었다고 하는 2015년 중반경 C 부회장은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 대상기사 생략

〈별지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4, 5〉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547119 판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법원의 정당한 석명권 행사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6년 4월 9일자 <한국일보>에 「판사가 변호사에게 ‘힌트’ 귀뜸.. 알고보니 동향에 대학 선후배」라는 제목으로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원고가 동향이자 대학 동문 후배인 담당 재판장으로부터 소송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재판 도중 넉지시 귀뜸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 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삭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피고 기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대리인이 돼 민사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공익성은 인정되나 피고가 적시한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 피고들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 B 800만 원, 이 중 피고 회사가 B 피고와 연대해 500만 원). 이후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11054), 피고들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17다269497).

[판결요지]

□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고도 1년 8개월가량이 지난 후에야 보도돼, 피고들로서는 사전에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장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에서 재판장은 민사소송 법에 규정된 정당한 석명권을 행사했을 뿐, 원고에게만 유리하도록 소송의 흐름을 바꿀 만한 중요한 사실을 슬그머니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바, ‘판사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귀띔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 기사삭제청구에 대한 판단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 이 사건 기사는 일반인이 진행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재판절차가 공정한지를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인 점, 이 사건 기사와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 및 표시되도록 한다면 기사의 삭제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원고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사삭제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547119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2. B
변	론	2016. 12. 7.
판	결	2017. 1. 11.
결	선	고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발행하는,
 - 가. 한국일보 1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24시간 동안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 나. 인터넷신문(<http://www.hankooki.com>)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정정

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 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피고 B는 8,000,000원, 피고 한국일보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6. 18.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http://www.hankooki.com>)에서 별지2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네이트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고,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 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기사 1건당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B는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2. 8. 17. C를 대리하여, △△시 ☆☆면 ○○리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망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7146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사실조회를 통해 망 D의 상속인들을 추적한 뒤 2013. 6. 20.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들을 'E 외 16인'으로 확정하여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7. 4.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 중 E, F, G, H, I와 4촌 이내 친척임을 소명하여 위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하였고, 담당 재판장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2014. 4. 1.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이 있었으나 고령인 C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재판장은 위 당사자본인신문이 끝나고 계속된 변론

과정에서 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주민등록상 전입시점인 '1968년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법정에서 언급하였다.

- 마. 원고는 속행된 변론기일인 2014. 5. 1. C가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1968. 10. 20.부터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며, 취득시효 완성일자를 1988. 10. 20.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 바. 그러자 피고 B는 2014. 6. 6.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장이 중요한 요건사실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1968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석명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 사. 2014. 8. 1.의 판결 선고기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후 C가 2000년경 그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위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때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가 대리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임).
- 아. 위 판결에 대해 쌍방의 패소한 당사자들이 각 항소하였는데, 이후 항소하였던 공동피고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당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생각은 없었으나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 항소하였다며, 만약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왔고, 이에 원고가 C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항소취하에 필요한 서식 등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주자, 위 피고들은 2014. 9. 24.부터 2014. 10. 13. 사이에 모두 항소를 취하하였다.
- 자. 피고 B는 2014. 12. 15.경 '원고가 항소취하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선임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여 변호사윤리장전 제45조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였다. 그러나 항소를 취하한 위 피고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은 불문종결로 처리되었다.
- 차.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이하, '피고 한국일보'라 한다)는 2016. 4. 9. 그 소속 기자인 피고 B가 작성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일간지 한국일보 및 인터넷 한국일보에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기사 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 중 “‘1968년부터 살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2014년 전남지역의 한 법원. J 판사가 재판 도중 소송을 제기한 K 변호사에게 귀띔했다. 상대는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고, 판사가 일러 준 내용은 재판의 흐름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핵심 사항이었다.” (이하,

‘①부분’이라 한다), “해당 법정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제출한 사실만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무너져 있었다. 그 뒤에 재판부와 변호사 사이의 연고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기자로서 느끼는 바가 적지 않았다.”(이하, ‘②부분’이라 한다), “기자가 직접 체험해 본 재판에서 J 판사는 재판의 중심을 잡고 양측 주장을 들어 법에 따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힌트를 줬다. 언제부터 땅을 점유하고 있었느냐가 판단의 관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이하, ‘③부분’이라 한다), “하지만 J 판사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26년 경력의 변호사와 일반인 중 누가 더 약자냐’고 물었다. 판사는 말이 없었다.”(이하, ‘④부분’이라 한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정정보도와 아울러 손해배상 및 기사의 삭제를 구한다.

나. 적시된 사실

1)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2) ①부분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기사 내용은 2014년 전남 지역의 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사항에 관하여 ‘1968년부터 살았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힌트를 귀뜸해 주었다는 것인데, ‘귀뜸’이란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 줌’을 의미하는 점, “판사가 변호사에 ‘힌트’ 귀뜸.. 알고 보니 동향에 대학 선후배”라는 기사 제목 및 ‘1968년부터 살았다고 해’라고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슬며시 귓속말을 하는 듯한 삽화도 함께 게재된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재판절차 진행의 불공정함을 지적하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위 ① 부분에 바로 뒤이어 “법정을 나서 법조인 정보를 검색해 봤다. J 판사: 사법연수원 32기, 전남 순천 출신, 사립 S대 졸업, 호남 지역에서만 7년

여 간 재직. K 변호사: 역시 전남 순천 출신, 같은 S대 졸업, 1987년 이후 전남에서 27년째 활동 중. ‘아….’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J 판사는 K 변호사와 동향이면서 대학교 20년 후배였던 것이다.”라는 내용이 연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독자들이라면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 이 부분 기사를 읽을 때 ‘이 사건 소송의 재판장이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와의 학연, 지연에 연연하여 지극히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결과 그 쪽에만 유리하도록 재판의 핵심사항을 넘기지 알려주었다’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위 기사의 내용은, 비록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부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재판장이 법정에서 당해 재판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한쪽 대리인에게만 넘기지 알려주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② 내지 ④부분

반면, ② 부분은 기사가 직접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보니 민사소송이 재판부와 변호사 사이의 연고와 친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기재한 데 불과하고, ③ 부분은 ①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는 기사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④ 부분 역시 ①부분에서 적시된 사실과 같은 경우 석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의 의견을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 부분들은 모두 정정보도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표명이라 할 것이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도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소송에서 C는 소장 등을 통해, ‘1948년경 결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초가집을 매수하여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청구취지에서는 ‘2012. 8. 1.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던 점(갑 제1호증이 1, 5 등), ③ 이후의 당사자 본인신문 당일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지 그 점유개시 시점에 관한 명확한 주장이 없었던 점, ④ 한편,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9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바로 위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C는 그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선택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점유기간 20년이 경과된 사실만 확인되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 ⑤ 또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등 참조), ⑥ 따라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장은 '점유기간 중의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고, 설사 위 기산점을 늦춰 잡더라도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인정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고려하여, C가 이미 증거로 제출한 바도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전입일자인 1968. 10. 20.로 기산점을 특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며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촉구하였던 점, ⑦ 위 기산점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소송 실무에 있어서도 재판장이 흔히 석명권을 행사하는 부분인 점, ⑧ 위 재판장의 발언이 상대방도 듣고 있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여진 점, ⑨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피고 B 측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가 기각되는 등 오히려 C 측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났고, 그 판결 이유를 보더라도 위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정당한 석명권을 행사하였을 뿐, 원고에게만 유리하도록 소송의 흐름을 바꿀 만한 중요한 사실을 슬그머니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 중 ①부분은 그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볼 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

따라서, 피고 한국일보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로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함)과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또한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만약 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도 명함이상당하다.

마.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 1)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는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원고가 동향이자 대학 동문 후배인 담당 재판장으로부터 소송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재판 도중 넌지시 귀뜸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는 해당 지역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

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 3)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는 피고 B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전문용어와 복잡한 재판 절차에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재판장과 변호사의 잘못된 언행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고도 무려 1년 8개월가량이 지난 2016. 4. 9. 보도되어, 피고들로서는 사전에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므로, 위 취득시효의 기산 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한 재판장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재판장이 부당하게 재판의 핵심사항을 ‘귀땀’한 것으로 몰아갔고, 달리 피고들이 위 보도 과정에서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위 허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가 작성·게재된 경위,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형식 및 표현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이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기사 삭제 청구 부분

- 1) 원고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 한국일보에게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해

출 것을 구한다.

- 2) 살피건대,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기사는 일반인이 진행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재판절차의 공정한지를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는 점,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기사와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 및 표시되도록 한다면 피고 한국일보에게 이 사건 기사의 삭제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원고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한국일보에게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것을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허위 진정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의 허위 진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일부 피고들에게 전화하여 “인감증명 등 몇 가지 서류만 보내주면, 피고들이 서로 분담해야 하는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게 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가 선임된 위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변호사 윤리장전 제45조⁴³⁾ 및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원고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한 사실, 그러나 위 당사자들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당사자들 측에서 먼저 항소심에서 다투고 싶지 않음에도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하였다며 연락을 해 와 원고가 C의 동의를 받아 항소취하에 필요한 서식 등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준 사실, 이후 항소 취하는 위 당사자들이 우편을 통해 접수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원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위 허위 진정의 경위 및 진정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800만 원(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500만 원 + 허위 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300만 원), 피고 한국일보는 피고 B와 연대하여

43) 변호사 윤리장전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위 돈 중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2〉 대상기사 생략

〈별지1-2〉

제목 : 정정보도문

본문 : 한국일보는 2016. 4. 9. “판사가 변호사에 ‘힌트’ 귀뜸.. 알고보니 동향에 대학 선후배 [접할수록 커지는 사법 불신] 기자가 직접 소송을 대리해보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4년 전남 지역의 한 법원에서 A 판사가 재판 도중 소송을 제기한 B 변호사에게 언제부터 땅을 점유하고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부터 점유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귀뜸해 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위 소송에서도 실제로는 점유의 기산점과 무관하게 B 변호사 측에 불리하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의 행위는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원의 정당한 석명권의 행사일 뿐, 소송의 핵심사항에 대해 일방 당사자에게만 힌트를 준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3537 판결(확정)

범죄 혐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도했다면 추후보도할 이유가 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일요서울>에 지역구 당내경선 후보자로 출마한 원고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는 취지의 기사 4건을 각 게재했다.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피고는 후속보도를 게재했다.

이에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추후보도,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으나, 원고 측 이의신청으로 본 소가 자동으로 제기됐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선거 출마경력을 허위로 보도한 데 따른 손해배상 100만 원만 인용하고, 공익성 등을 이유로 기사삭제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피고의 항소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기사삭제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로 출마한 원고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후속보도를 통해 원고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히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353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변	론	종	결	2017. 5. 19.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인터넷 일요서울(www.ilyoseoul.co.kr)의 홈페이지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내지 [별지4]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내지 [별지4]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1] 내지 [별지4]에 기재된 각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 △△을 지역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서울 △△을 지역구 당내경선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 다. 피고는 2016. 3. 7.부터 같은 달 14.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lyoseoul.co.kr)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원고에 대하여 금품 제공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순번	게재일시	제목
1	2016. 3. 7.	[새누리당 X파일 문건 ④탄] 서울 △△을, 경선 앞두고 ‘진정서’ 봇물
2	2016. 3. 9.	선관위 ‘수사 의뢰’ △△을 새누리당 A 후보 검찰 수사착수
3	2016. 3. 9.	새누리 △△을 A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4	2016. 3. 14.	20대 총선 고발·수사의뢰 봇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齎 리스트 추적

라. 한편 피고는 2016. 3. 9. ‘선관위 수사 의뢰 △△을 새누리당 A 후보 검찰 수사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할 당시 원고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경력과 관련하여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 당 B의원에 참패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 전 기사’라 한다), 원고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한 사실이 밝혀지자 다음날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 20대에 재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 기사를 수정하여 게재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2016. 4. 29. 및 같은 해 5. 19. 원고에 대한 각 고발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7. 7. 원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28. 피고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 산악모임에 찾아가 인사말을 하고, 사회복지관 등에 선물을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 내사 결과 지난 7월 원고에게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리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1. 28.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후 보도,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아. 이 사건 관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살펴보면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언급한 원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검찰의 처분이 내려져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추후 보도할 의무가 있고, 위 각 기사를 보도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각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의 보도 후 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진정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7조에서 정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는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검찰의 위 종결처분 이후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경위, 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처분을 받은 경위 등을 보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후속 기사는 언론중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추후보도의 내용으로 요구되는 원고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등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되어 추후 보도로서의 적절한 형식 또한 갖추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그 기사가 보도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추후보도가 이루어져서 추후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기사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기사는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로 출마한 원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임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피고의 추후보도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만큼 현 시점에서 원고의 명예가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당내경선의 상대 후보자 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원고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5 내지 8, 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기사삭제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표현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정 전 기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사건 수정 전 기사 중 원고의 선거 출마경력과 관련하여 제19대 총선에서 야당후보에게 참패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비록 원고의 이와 같은 선거 출마경력이 원고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사실로 기술되어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여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가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경쟁 후보자에게 패배하였다는 경력은 당내 경선에 투표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과거 출마경력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참패’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평가적 표현까지 사용함으로써, 위 기사를 구독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경선에 승리하여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다른 정당 후보자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한 점, ③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의 출마경력에 대한 내용을 단순한 경위사실로 취급하여 사실이 적시된 공직선거법위반 기사에 포함된 일부 세부사실 또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선거 출마경력을 허위로 보도한 행위는 이 사건 각 기사와 별도로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되도록 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

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한편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원고의 성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출마경력을 작성하였으므로, 비록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는 인터넷 검색자료를 참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해당 검색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 스스로 당시 담당기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된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수정 전 기사의 작성경위, 표현의 내용 및 방식, 그 기사의 게재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529708 판결

원고가 중복인사임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근거 없이 보도한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B

[사실관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루투데이>에는 2015년 4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원고와 관련해 '중복적 행사인 위민크로스 DMZ 행사를 원고가 주도했다'는 내용, '원고가 중복인사인 C를 후원했다', '해외 중복세력과 오랜 기간 같이 활동했다'는 내용 등 22개의 기사가 기재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중복인사라는 인상을 줘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위민크로스 행사 개최를 주도했다거나 중복인사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는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1,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선고했다. 이후 피고가 항소해 현재 2심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942).

[판결요지]

□ 기사삭제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허위 기사의 표현 방법,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허위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됐고 그 침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바, 피고는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허위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529708	손해배상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26.	
		2017.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제작, 배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bluetoday.net>)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1 표 기재 각 기사의 각 '삭제 범위'란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3.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제작, 배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bluetoday.net>)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사 삭제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미합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통일 운동인 ‘Action for One Korea’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인터넷 ‘블루투데이’ 사이트(<http://www.bluetoday.net>)를 운영하면서 기사 등을 게재하는 사람이다.
- 피고가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는 2015. 4. 3.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원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제목으로 총 22개의 기사(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기사는 아래 ‘기사별 허위 내용 정리 표’ 기재와 같이, 종북적 행사인 위민크로스 디엠지 (Women Cross DMZ, 이하 ‘위민크로스’라고 한다) 행사를 원고가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내용(유형①), 원고가 종북인사인 C를 후원하였다는 내용(유형②), 원고가 종북인사인 D와 연대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유형③),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장녀’라는 D의 발언에 웃었다는 내용(유형④), 원고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강연회에 초청 없이 참여하였다는 내용(유형⑤),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시위를 하였다는 내용(유형⑥), 원고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북한을 방문했던 다수의 해외 종북세력과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는 내용(유형⑦), 원고가 국가정보원 해체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내용(유형⑧), 원고가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내용(유형⑨), 원고가 무단방북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무단방북한 것이 드러났다는 내용(유형⑩), 원고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유형⑪), 원고가 이중국적자라는 내용(유형⑫) 등 총 12가지로 유형화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종북인사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한다.

<기사별 허위 내용 정리 표>

순번	허 위 사 실 의 적 시
1	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① 종북 D에 후원금, 칠순잔치 참석까지 - 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유형①> - 더불어 이번 행사를 주도하는 A AOK 대표가 <유형①>

순번	허위 사실의 적시
2	<p>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② 북 공작원 D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 시위 벌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유형①> - 北 공작원 D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 시위 벌여 <유형⑥> - 이번 행사를 주도하는 A AOK대표는 지난 2013. 12. 20. 미국 한인타운 중심부인 월셔 웨스턴 사거리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유형①⑥> - A 대표는 D 대표의 칠산잔치에 참석하는 등 깊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형③>
3	<p>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③ 박근혜는 정치XX, F·C는 애국자 발언 증북 모임에 동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유형①> - 이 행사(WCD)를 배후조종 하고 있는 A AOK 대표 <유형①> - 종북콘서트 논란의 주인공인 C 후원세력으로 알려진 A AOK 대표는 D 옆자리에 배석한 상황이었으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유형②④> - A씨는 지난달 5일 미 대사 테러 당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강연회에 초청 없이 참석했다. <유형⑤>
4	<p>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④ 증북 행사장서 C 행사 홍보 ; AOK 단체 행사에 A 콘서트 포함시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유형①> - 이 행사(WCD)를 주도하는 A AOK 대표 <유형①> - A 대표는 이른바 증북 토크 콘서트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C 씨의 후원자로 활동해왔다. <유형②>
5	<p>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⑤ 이적단체 간부와 함께 탈이념 통일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유형①> - A 대표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추종해온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증북 논란을 일으킨 위민크로스 DMZ의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유형①> - A씨 또한 북한문화공작원 D 민족통신 대표와 증북 토크콘서트로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C 씨를 후원하며 연대 활동을 펼쳐왔으며 <유형②③>
6	<p>위민크로스DMZ 주도한 A는 누구? ⑥ 18대 대선 당시 증북 D와 헌법 개정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체제 선전용 행사로 전략한 위민크로스 DMZ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 AOK대표 <유형①> - 지난 2013. 12. 20. LA한인타운에서 D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였으며 <유형⑥> - A 대표는 연말 간담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개잡년 놈들이 나라도 아닌 정치를 하는 것”, “박근혜는 국제 창녀” 등의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퍼붓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유형④>
7	<p>미 대사 테러 E·A 국보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씨는 대중적인 통일운동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C 씨를 비롯해 대표적인 재미 증북인사 D 민족통신 대표 등을 후원하고 연대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②③> - 또한 지난달 5일 미 대사 테러 당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회에 초청 없이 참석했다. <유형⑤> -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었고, 북한을 방문했던 다수의 해외 증북세력들과 같이 오랜 기간 활동을 하는 등 <유형⑦>
8	<p>재미 증북 논란 인사 참여한 ‘DMZ’행사...정부 “협조하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는 증북토크콘서트 논란으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C의 후원자로 알려졌다. <유형②> - 재미 증북매체 민족통신 D 등과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어 <유형③>

순번	허위 사실의 적시
9	<p>블루유니온 “정부는 DMZ 횡단 행사 A의 판문점 입국 거부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민크로스디엠티 행사 주도하는 A <유형①> - AOK 대표 A가 주도하고 있는 위민크로스디엠티 행사 <유형①> - A는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지목되는 민족통신 D 대표와 연대 활동을 펼쳐왔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된 C의 후원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형②③> - 2014. 10.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C와 A 등 북한과 궤를 같이하는 종북·반정부 성향 미국 교포 <유형⑦>
10	<p>정부, 종북 개입 논란 DMZ 행사 승인 논란 ; 북한 공작원에 후원금 내고, 종북단체 간부와 ‘평화협정’주장...종북 논란 인사 대거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CD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 AOK 대표는 이른바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된 재미교포 C씨의 후원자로 알려져있다. <유형①②> -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D 민족통신 대표를 수차례 후원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유형③⑥>
11	<p>종북 D 협력자 A, 8월 15일 ‘천만의 합창 나비날다’행사까지 가담 ; 위민크로스 DMZ, 나비날다 행사까지 가세... 제2의 C 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종북인사인 D 민족통신 대표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A AOK대표 <유형③> - A 대표는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재미교포 C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왔다. <유형②> -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알려진 재미 종북인사 D 민족통신 대표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등 수년간에 걸쳐 연대·협력자로서 활동해왔다. <유형③>
12	<p>“북한인권엔 눈을 감은 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말할 자격도, 대한민국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 시민단체 24일 ‘위민크로스DMZ에 반대하는 시민행동의 날’ 운동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 종북인사 D와 연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국정원 해체시위를 주도한 A <유형③⑥⑧>
13	<p>“거짓평화 위민크로스DMZ, 한국 땅 밟을 자격 없다!” ; 애국시민단체, 24일 임진각역 앞 위민크로스DMZ 규탄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대로 한다면 A는 한국 시민권자도 아니며 <유형⑨>
14	<p>위민크로스DMZ, 북 인권 외면 지적에...“경제제재 때문에 인권보장 어려워” 끝까지 북 정권 옹호 ; 친북 아닌 친평화? ‘위민크로스DMZ’의 궤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민크로스 DMZ를 주도하는 인사 가운데는 북한 문화공작원 D와 궤를 같이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이는 등 활동을 벌인 A AOK 대표를 비롯해 북한을 추종하는 ‘□□□’ 등 종북성향 단체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형①③⑥>
15	<p>박원순, 종북 논란 ‘위민크로스DMZ’ 행사장 찾아 “어머니의 위대한 발걸음” 격찬 ; 종북 행위 전례 인사들의 북한 인권 외면 행사가 ‘평화의 초석’이라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골수 종북단체인 ‘□□□’을 비롯해 북한 문화공작원 D 민족통신 대표와 궤를 함께해온 A AOK대표 등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유형①③>
16	<p>기고만장 ‘위민크로스DMZ’ 내년에는 남에서 북으로...정부 내내에도 행사 승인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민크로스DMZ를 주도하는 인사 가운데는 북한 문화공작원 D와 궤를 같이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이는 등 활동을 벌인 A AOK 대표를 비롯해 북한을 추종하는 ‘□□□’ 등 종북성향 단체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형①③⑥>

순번	허위 사실의 적시
17	<p>정부는 ‘대한민국 국적보유’ 논란 제기된 AOK 대표 A의 ‘무단방북’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국적자의 북한 무단 방북도 확인 못 하는 공안당국의 무능력</p> <p>- WCD 행사의 실무를 맡아 주도한 인사는 AOK 단체 대표인 A씨다. <유형①> - A씨는 종북 토크 콘서트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강제 추방당한 C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 종북매체인 민족통신 D 대표에게 성금을 내는 등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형②③> - D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였으며 <유형⑥> -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방북(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형⑩></p>
18	<p>‘위민크로스DMZ’ 이어 ‘천만의 합창’까지 통일 행사 주도하는 A는 누구? ; 북한 문화공작원 D와 연대 활동, 창립 기념식엔 이적단체 간부까지 가세</p> <p>- A는 종북토크콘서트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강제출국된 재미교포 C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유형②> -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종북매체 민족통신 대표 D 씨에게 수 차례 후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세미나·집회를 벌이는 등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유형③> - 2013년 12월 LA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정원 해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유형⑥⑧⑩> - A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⑫> - 이 방북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방북(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형⑩></p>
19	<p>‘위민크로스DMZ’ A 무단방북 의혹에...영사관에 전화로 통보 주장</p> <p>- A는 대표적인 종북인사이자 북한문화공작원으로 활동중인 민족통신 대표 D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종북토크콘서트 논란 등으로 강제출국된 재미교포 C 씨의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다. <유형②③></p>
20	<p>‘막가는 통일부’ 종북성향 단체 대표를 LA교육위원에? ; 북한 문화공작원과 연대 활동 펼치는 A AOK 대표, 통일부 LA 지역 교육위원 활동</p> <p>- A는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지목되는 민족통신 대표 D와 연대활동을 펼쳐왔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된 C 씨의 후원자로 활동해왔다. <유형②③> - 북한체제 홍보 캠페인으로 전략한 ‘위민크로스DMZ’를 주도하기도 했다. <유형①></p>
21	<p>종북성향 단체 AOK 간부 “지뢰사건 북한에 뒤집어 씌워...남북합동군사훈련 해야” ; 탈이념 내세우면서...북한 문화공작원 후원 및 연대 활동 벌여</p> <p>- 단체 대표인 A는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활동하는 민족통신 D 대표와 종북 토크콘서트로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C를 후원하며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유형②③> - 지난 5월에는 북한 체제 선전 행사로 전략한 ‘위민크로스DMZ’ 행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유형①></p>
22	<p>“지뢰도발, 남한이 북한에 뒤집어씌워” ‘액션 포 원코리아’, 한달 뒤 “올바른 역사교과서 반대!”</p> <p>- AOK는 대중적 통일 운동을 지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C와 대표적인 재미 종북 인사인 D 민족통신 대표 등을 후원하고 연대 활동을 펼치는 등 종북주의자들과의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형②③></p>

3. 판 단

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1) 관련 법리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중복적 행사인 위민크로스 행사를 원고가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내용(유형①)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7호증, 을 16, 54,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015년 개최된 위민크로스 행사는 평양에서 출발하여 경의선 육로를 통하여 우리나라까지 걷는 행사였는데,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승인하였고, 위민크로스 행사 참여자들이 경의선 육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직후에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위민크로스 관련 행사장에 서울시장 박원순도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위민크로스 공동명예위원장 G는 위민크로스 행사를 통하여 비무장지대를 걷는 것은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을 뿐 위민크로스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위민크로스 행사의 주된 목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고, 북한의 핵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위민크로스 행사 참여자들이 평양에서 중복인사인 D를 만났다는 점을 근거로 위민크로스 행사가

중복적인 성향을 갖는 행사였다고 주장하나, 북한의 핵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민크로스 행사 선언문, G의 발언 등에는 ‘인권’, ‘평화’,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위민크로스 행사의 출발 지점이 평양임을 감안하면 중복인사로 알려진 D를 평양에서 만난 사실 자체만으로 위민크로스 행사가 중복적인 성향을 갖는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에이오케이(AOK, 'Action for One Korea'의 약자, 이하 'AOK'라 한다)의 신년모임을 홍보하는 메일에 “위민크로스 행사에 실무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메일이나 다른 자료에 위민크로스 행사 개최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을 암시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AOK는 일상생활 속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여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러한 목적이 남북한의 통일을 기원하는 위민크로스 행사의 목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 원고가 위민크로스 행사에서 단순히 실무진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면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여 위 메일에 기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위 메일에 기재된 ‘실무진으로 참여하였다’는 문구를 ‘사실상 주도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원고가 위민크로스 행사를 주도하였거나 배후에서 조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민크로스 행사를 주도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가 중복인사인 C를 후원하였다는 내용(유형②)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18,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AOK에서 2013. 7.경 및 2013. 11.경 중복인사로 알려진 C의 강연을 2회 개최하였고, 원고가 위 강연을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C를 후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특히,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C를 후원하였다는 내용의 표현을 살펴보면, “원고가 C의 후원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C의 후원자로 활동해왔다.”, “원고가 C를 후원하며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원고가 C를 후원하고 연대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가 C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C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왔다.”, “원고가 C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원고가 C를 후원하며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원고가 C를 일시적으로 후원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후원하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C의 강연을 개최한 것이 사실상 후원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C를 후원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다) 원고가 중복인사인 D와 연대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유형③)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2004.경과 2009.경 중복인사로 알려진 D가 대표로 있는 민족통신에 후원금을 지급하였고, D의 칠순잔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D와 연대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특히,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D와 연대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표현을 살펴보면, “원고가 북한문화공작원 D 민족통신 대표와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원고가 D 대표의 칠순잔치에 참석하는 등 깊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고가 대표적인 재미 중복인사 D 민족통신 대표와 연대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가 재미 중복매체 민족통신 D 등과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고가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알려진 재미 중복인사 D 민족통신 대표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등 수년간에 걸쳐 연대·협력자로서 활동해왔다.”, “원고가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중복매체 민족통신 대표 D에게 수차례 후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세미나·집회를 벌이는 등 연대활동을 펼쳐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복인사인 D와 연대하여 중복활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민족통신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C의 강연을 홍보한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가 D와 연대하여 중복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D와 연대하여 중복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라)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장녀라는 D의 발언에 웃었다는 내용(유형④)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58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2014. 12. 20.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노동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2014년 연말 통일 간담회에서 D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제장녀라고 지칭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원고를 비롯한 몇몇 참가자들이 웃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강연회에 초청 없이 참여하였다는 내용(유형⑤)

갑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가 2015. 3. 5. 개최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초청 강연회에,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 부장의 초청을 받고서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언론보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강연회에 초청 없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시위를 하였고,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유형⑥, ⑪)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2. 19.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촛불 집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원고는 당시 위 집회 장소에서 집회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2013. 12. 27. 위 집회에서 자신이 목격하거나 느낀 것을 서술한 글을 통일뉴스의 '특집연재'란에 게재한 사실, 당시 위 집회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는 AOK의 실행위원인 H 목사가 시국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북한을 방문했던 다수의 해외 중복세력과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는 내용(유형⑦)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19, 6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원고가 2005년 일본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제연대협의회 활동 과정에서 방북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5. 4. 3. 원고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회합·통신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2015. 7. 31.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를 두고 피고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이지 원고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 원고가 2004.경과 2009.경 중복인사로 알려진 D가 대표로 있는 민족통신에 후원금을 지급하였고, D의 칠순잔치에 참석한 사실, AOK에서 2013. 7.경 및 2013. 11.경 중복인사로 알려진 C의 강연을 2회 개최하였고, 원고가 위 강연을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북한을 방문했던 다수의 해외 중복세력과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가 북한을 방문했던 다수의 해외 중복세력과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하였거나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또는 AOK가 다수의 해외 중복세력과 같이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아) 원고가 국가정보원 해체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내용(유형⑧)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013. 12. 19.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여하였고, 원고는 당시 위 집회 장소에서 집회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2013. 12. 27. 위 집회에서 자신이 목격하거나 느낀 것을 서술한 글을 통일뉴스의 '특집연재'란에 게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게재한 글 또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기사에는 원고가 위 집회에 단순히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위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집회에 참여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게재한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정보원 해체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자) 원고가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거나 이중국적자라는 내용(유형⑨, ⑫)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미합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위 마)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거나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원고가 무단 방북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무단 방북한 것이 드러났다는 내용(유형⑩)

원고가 2005. 9. '일본의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제연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양에 방문하기 전에 재외공관의 장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담당 영사에게 구두로 신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9,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중복적 행사인 위민크로스 행사를 원고가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내용(유형①), 원고가 중복인사인 C를 후원하였다는 내용(유형②), 원고가 중복인사인 D와 연대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유형③), 원고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북한을 방문했던 다수의 해외 중복세력과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는 내용(유형⑦), 원고가 국가정보원 해체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내용(유형⑧, 이하 위 5가지의 유형을 통틀어 '이 사건 허위 내용'이라 한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사별 허위 내용 정리 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2 기재 각 기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허위 기사'라 한다)⁴⁴⁾의 전체적인 취지와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보면, 이

44) 별지1 기재 각 기사와 동일하다.

사건 허위 기사는 원고가 중복인사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허위 기사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허위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보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허위 기사는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이른바 ‘중복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허위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허위 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주장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블루투데이 소속 기자들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불충분한 근거나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등이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절차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확인절차를 신중히 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 허위 기사를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이 사건 허위 기사에서 원고가 단순히 위민크로스 행사나 국가정보원 해체 시위에 참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원고가 종북인사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는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원고가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허위 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피고 등은 2015. 6. 26. 이를 반영하여 반론보도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 원고에 관하여 허위 보도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같은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하였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허위 기사의 취재 경위, 보도의 동기, 보도 형식 및 횟수, 유포 정도, 표현 방법, 이 사건 허위 기사 중 허위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허위 기사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기사삭제 및 이행강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

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60950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허위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허위 기사의 표현 방법,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허위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었고 그 침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바, 피고는 그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삭제의 범위와 간접강제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허위 기사 중 허위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이 사건 허위 기사의 표현 방법,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1 표 기재 각 기사의 각 '삭제 범위'란 기재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주문과 같이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1, 2〉 대상기사 목록 생략

원고와 피고 언론사 간에 발생한 사적 분쟁을 피고가 보도한 것은 공익성이 부정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7월 10일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전문 인터넷 사이트 와 인터넷블로그 <C>에 'A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한방성형시술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자 A와 A의 남편이 앙심을 품고 B의 사무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이 기사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기는 하나, 주요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인적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사삭제를 명하고 손해배상 200만 원을 판결했다. 이후 원·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289).

[판결요지]

□ 한의사인 원고와 관련된 기사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의 한의원에서 성형시술을 받은 익명의 제보자가 원고에게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의원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 원고와 부인이 피고의 기사에 항의하려고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인적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 기사삭제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사이트와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580918 기사삭제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변	론	2017. 5. 12.
판	결	2017. 6. 16.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사이트 B 및 인터넷 블로그 C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네이트(www.nate.com), 드림위즈(www.dreamwiz.com), 엠에스엔(www.msn.com/k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고,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한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주로 한방성형을 시술하고 있다.
- 피고는 뉴스전문 인터넷 사이트 'B'(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와 인터넷 블로그인 'C'(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는 2013. 7. 10. 「E」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었고,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현재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사이트 및 이 사건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어 이를 검색할 수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40분간 난동을 피우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상대방을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는 곳이 아니냐’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트 및 이 사건 블로그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각 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한방성형시술 문제점을 보도한 기사에 앙심을 품고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런 매체는 상대방을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는 곳이 아니냐’는 모욕적 언사를 계속하고, 피고의 직원이 영업방해라고 하면서 원고를

말리자 원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기행을 보였다. 이어 원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의 법무팀장을 폭행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반말과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위 한의원에서는 성형시술의 효과를 보지 못한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화녹취를 제안하자, 오히려 녹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사이트와 이 사건 블로그에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또는 공익성 여부

을 1,2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가 2013. 7. 9.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인 G에게 “신고해 이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냐고 아까 물어봤지”, “놓아봐 씨발”, “거지같은 새끼”, “거지같은 놈들이 지가 언론사라고 풀값 떨고 앉았어. 가. 그거 열라게 찍어봐 이 새끼야”라고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 원고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15056호로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남편인 F가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11790호로 “F가 2013. 7. 9.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하는 성형시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이에 G가 나가달라고 하자, G의 허대를 잡아 4,5회 가랑 밀고, 당기고, 팔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성형시술을 받은 익명의 제보자가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의원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요한 부분이 원고와 F가 피고의 기사에 항의하려고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의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기사의 삭제 및 삭제요청, 간접강제금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게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니며, 위 기사가 이 사건 사이트와 블로그에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12.경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네이트(www.nate.com), 드림위즈(www.dreamwiz.com), 엠에스엔(www.msn.com/k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것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각 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와 내용,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의 정도, 이 사건 기사는 게재한 때로부터 이미 약 4년이 경과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사이트와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사이트 및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기간까지 위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국방부의 의료 수준과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 보도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 원고 : 국방부
- 피고 : 한국방송공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7년 1월 9일자 KBS 2TV <제보자들> 프로그램에 「군대 보낸 두 아들, 난치병 걸린 사연은?」이라는 제목으로 형제인 군인 A와 B가 군병원에서 잘못된 초기 진단과 미흡한 조치로 결국 난치병에 걸렸고, 군대 밖에서 진단받은 난치병 치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내용 등을 방영했다. 이에 원고는 보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된 내용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항소했고 현재 2심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405).

한편, 원고는 소 제기예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 및 반론보도)이 내려졌으나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 제기된 바 있다(2017서울조정117, 118(병합)).

[판결요지]

□ ‘군병원의 초기 조치가 미흡해 환자의 병을 키웠다’는 인터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은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B와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B와 가족이 ‘군병원이 병을 키웠다’는 취지로 한 인터뷰를 내보냈으나, 해당 부분은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군병원의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 ‘민간병원 진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터뷰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돼 군병원장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를 대상으로 위탁치료비 지급이 최종 승인된 경우 민간병원 위탁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환자 또는 보호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지불한 후 해당 군병원에 관련 서류와 함께 치료비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A와 B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했고 향후 원고에게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그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이 부분 방송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14 손해배상(언)
원	고	국방부
피	고	한국방송공사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제보자들’ 프로그램의 홈페이지(<http://kbs.co.kr/2tv/sisa/storyhunter/index.html>)에 팝업화면으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보자들’ 2017. 1. 9.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영구히 중단하라.
3. 피고가 제1항과 제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위 각 의무에 대하여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1) A는 2014년경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5. 5. 10.경 점호를 위하여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평상 바닥에 부딪혀 국군고양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원고 산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민간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B는 A의 동생으로, 2015. 3. 5.경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행군 훈련을 하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힌 이후 국군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공영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 1) 피고는 2017. 1. 9. KBS 2TV '제보자들' 프로그램에서 '군대 보낸 두 아들, 난치병 걸린 사연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이 사건 방송은 내레이션, A, B와 그들의 부모,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① A가 2015. 5. 부대 안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을 때 군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했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도리어 피병이 아니냐며 편잔을 듣기도 하였으나, 이후 민간병원을 찾아가 결과 군병원의 진단과는 달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내용, ② A가 군대 밖에서 받은 치료는 모두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A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내용, ③ B 또한 훈련소에서 행군하다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 계속 훈련을 받았으며,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결국 A와 같은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내용, ④ A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 부작용이 왔고, 쇼크까지 겹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 했으나, 당시 A가 의식을 잃은 지 두 시간이 넘어서야 군의관이 나타났다는 내용, ⑤ 국군수도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 과장이 '보존적인 치료들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치료의 끝으로 가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나오는 것이지, 부상을 당한 직후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인지 아닌지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인터뷰 내용, ⑥ '군병원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병을 다 키워서 치료를 해주는 것 같다'는 A, B 형제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 명령 결과와 국군고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A와 B 보호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① 군병원에서 초기 조치가 미흡하여 A와 B의 병을 키웠고, ② 민간병원 진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전역 후 치료비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③ A가 쇼크 상태까지 갔는데도 군의관은 2시간이 넘어 진료하러 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① A와 B는 증상 발생 초기부터 군병원 등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질병 진행과정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진단이 가능하므로, 군의 의료조치가 미흡하

거나 진단이 늦어져 병을 키운 것이 아니며, ② 전역 후 6개월까지 육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민간병원 치료비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이후에는 보훈심사를 거쳐 보훈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간병원 치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③ A의 어머니가 A가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 7. 17. 당시 A는 진통제를 투여 받아 잠시 잠들었던 것일 뿐 쇼크 상태가 아니었고, 군의관도 환자의 상태를 보고 받은 지 3분 만에 신속히 도착하여 치료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인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방송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영구히 중단하여야 한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등 참조).
- 2)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 3)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군병원의 초기 조치가 미흡하여 환자의 병을 키웠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A는 2015. 5. 10. 부대 내에서 점호를 위하여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평상 바닥에 부딪힌 직후 국군고양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X-ray 검사를 한 결과 타박상(의증) 진단을 받아 약물처방을 받았고, 2015. 6. 1.까지 5차례 더 국군고양병원 정형외과와 응급실,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MRI와 X-ray 촬영, 원통형 부목(반기브스)과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민간병원에서 치료방기를 위하여 2015. 6. 2.부터 같은 달 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 구획증후군(의증) 진단 하에 MRI 검사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후 2015. 7.경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최초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② B는 2015. 3. 5.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고, 당일 훈련소 내 의무실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국군대전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MRI 검사와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나) 이 사건 방송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A와 B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군병원이 병을 키웠다’는 취지의 A와 B 아버지의 인터뷰를 방송하였으나,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 인터뷰 부분은 군입대 전까지 건강했던 두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 희귀질환에 걸려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부모의 절절한 심정에서 바라본 군병원의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다) 피고는 ‘A에 대하여 군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였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B는 특별한 치료 없이 계속 훈련을 받았다’고 방송하였는데, A가 군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고, A와 B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의 경우에는, ① A와 B가 군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으면서도 통증이 지속·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군병원 측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의심하지 않은 채 X-ray, MRI 검사와 원통형 부목 내지 약물처방 등 단순한 치료만을 반복하였던 점, ② ○○○대학교 ○○○○병원에서는 A에게 위 증후군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2015. 5. 10.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2개월 후인 2015. 7.경 A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하였고, 현재 A와 B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학교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C는 2015. 9. 25. 초진 당시 위 형제가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A가 군병원에서 피병이 아니냐는 편지를 듣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군병원에서 성실하게 진료를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성상 초기에 이를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병원 측의 진료 소홀로 인하여 A와 B에 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졌던 것으로 인정하거나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 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민간병원인 △△대학교 ○병원에서도 A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군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서 B에 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을 내린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라) 이 부분 방송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A와 B가 증상 발생 초기부터 군병원 등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 내지 평가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질병 진행과정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진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에 게재할 것을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초기에도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이미 방송하였다(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2) 민간병원 진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군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의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를 대상으로, 국군 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탁 치료비 지급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경우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환자 내지 보호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불한 다음, 해당 군병원에 관련 서류와 함께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군 내부의 심의를 거쳐(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인다) 승인된 금액에 대하여(군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며(원고의 소장에 첨부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기록 제101면 참조), 위와 같이 민간병원 위탁치료비가 지원되는 기간은 환자의 군복무기간 중 및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에 한정되는 것인 사실, ② 그 이후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실(더구나

이 사건 방송에는 보훈심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에서 보훈심사에 의한 치료비 지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까지 암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A와 B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하였고, 아직까지 원고에게 위 치료비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그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원고가 2016. 9. 28.경 A와 B의 보호자에게 보낸 '민간병원 위탁진료서류 제출 고지'(갑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원 대상으로 고지한 진료비 산출기간은 A의 경우 '2015. 12. 31.부터 2017. 1. 8.까지'(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2015. 6. 초경부터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았다), B의 경우 '2015. 12. 4.부터 2017. 9. 20.까지'이고,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내용은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A와 B가 엄격한 보훈심사를 통과하여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지도 불확실하여 이를 낙관하기 어려운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B는 보훈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등을 고려하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방송내용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이 부분 방송에는 A 등이 향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보인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전역 후 치료비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도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A, B 환자의 민간병원 치료비는 보호자가 자비를 부담하기로 동의한 일정 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도 배치되어 부정확할뿐더러 그 자체로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정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3) A가 쇼크 상태까지 갔는데도 군의관은 2시간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료를 하러 왔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6. 7. 17. 17:25경 A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다른 환자가 A가 심한 안면부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간호장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간호장교가 A에게 진통제를 투약하였으나, 이후에도 A는 20분가량 더 통증을 호소하다가 17:45경 안정되는 양상을 보인 사실, 그 후 17:52경 A가 눈 사이로 환자위가 살짝 드러난 모습을 보이자 간호장교가 당직의(군의관)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3분 뒤인 17:58경 당직의가 병실에 도착한 사실, ② 당시 A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였던 다른 환자들은, A가 2016. 7. 19. 16:30경부터 통증을 크게 호소하였고, 경련을 일으키다가 의식을 잃었으며, 산소포화도도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국군수도병원의 입원간호기록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③ ‘쇼크’의 사전적 의미는 ‘갑작스런 자극으로 일어나는 정신·신체의 특이한 반응’으로, 당시 A가 진통제를 투약하여 깊게 잠이 든 것일 뿐 A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폐소생술(CRP) 상황 내지 의학적 의미의 쇼크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A가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의 쇼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방송에서 위와 같은 A의 상태를 ‘쇼크’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위 표현이 엄밀하게 의학적 의미의 ‘쇼크’를 지칭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 중 ‘A가 쇼크 상태 까지 갔다’거나 ‘군요원이 2시간이 넘어 진료하러 왔다’는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를 넘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원고가 구하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중 2번째 및 6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된 사실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그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시보기 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방송에서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가 제공하는 의료수준과 의료체계 등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널리 허용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방송의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다시보기 삭제 청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F A X : 02) 397-3089

지역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6층
전화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5층
전화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5층
전화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5층
전화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8층
전화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8층
전화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404호
전화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05호
전화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601호
전화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4층
전화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8년 6월 27일 인쇄

2018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양인석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전화 02) 397-3041~4

팩스 02) 397-304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